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0000-000384-10

정부 3.0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1부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제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5
1-1 청년창업사관학교	6
1-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9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11
1-4 본 글로벌 창업자 발굴육성 프로그램	1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16
1-6 창조경제 대상-슈퍼스타V(왕중왕전)	1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21
1-8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24
제2장 창업저변 확대	26
2-1 창업인턴제	27
2-2 청소년 비즈쿨	29
2-3 창업아카데미	31
2-4 창업대학원	33
2-5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34
2-6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6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8
제3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40
3-1 스마트창작터 운영	41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3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6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49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52
4-1 재도약 지원자금	53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56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58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60
4-5 재도전성공패키지	63



제2부 금융 지원

제5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69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70
5-2 창업기업지원자금	77
5-3 신성장기반자금	80
5-4 긴급경영안정자금	84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87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91
5-7 재도약지원자금	93
제6장 신용보증 지원	96
6-1 신용보증기금	97
6-2 기술보증기금	100
6-3 지역신용보증재단	104
6-4 매출채권보험	109

제3부 기술개발 지원

제7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117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18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23
7-3 창업성장기술개발	127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31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133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136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139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41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43
7-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46
7-11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151
7-1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154

제8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57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158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62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166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170
8-5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73
8-6 남북협력기업지원	176
제9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178
9-1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179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81
9-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83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190

제4부 인력 지원

제10장 인력 양성	195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96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199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202
제11장 인력유입 촉진	205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206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11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14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17

제5부 판로 지원

제12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223
12-1 직접생산확인제도	224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226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228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230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32
12-6 공공구매론	235
제13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7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8
13-2 성능인증제도	241
제14장 마케팅, 홍보 지원	243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244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247
14-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250
14-4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252
14-5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254
14-6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256
14-7 온라인 시장진출	258
14-8 유통망 개척지원	261
14-9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63
14-10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266

제6부 수출 지원

제15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73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74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79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283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88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92
15-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94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298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00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305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308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14
15-12 수출금융융자	316
15-13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319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제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325
16-1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326
16-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333
16-3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338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7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345
17-1 소상공인사관학교	346
17-2 신사업 사업화 교육	350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352
17-4 상권정보시스템	354
제18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356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357
18-2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359
18-3 산학협력컨설팅 지원	362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364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366
18-6 나들가게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369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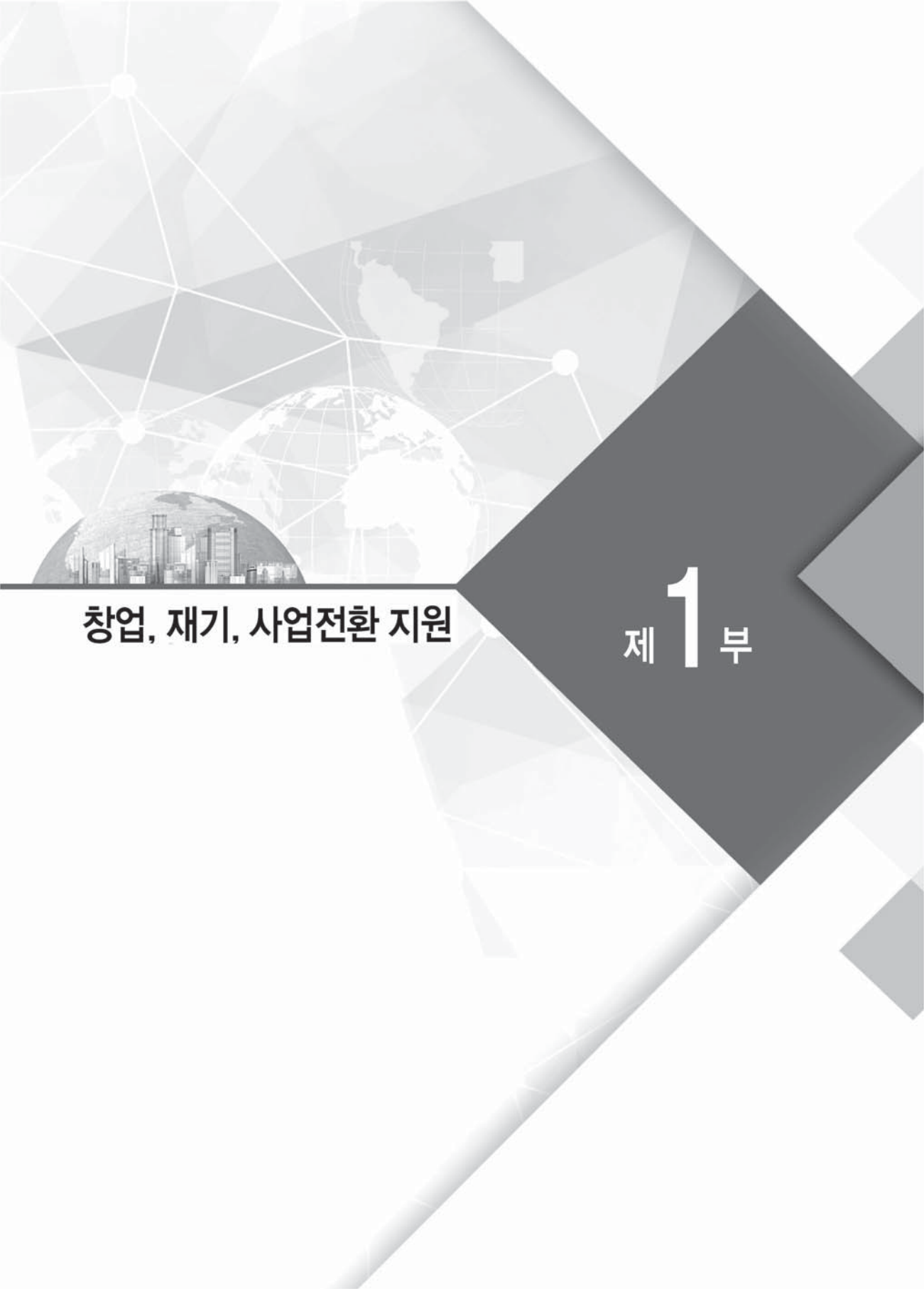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375
18-9 소공인 특화 지원	378
제19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81
19-1 희망리턴패키지	382
19-2 재창업패키지	384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86
제20장 전통시장 활성화	388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89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92
20-3 특성화시장 육성	395
20-4 상권활성화	398
20-5 온누리상품권	401
20-6 전통시장 ICT 육성	404
20-7 청년상인 육성	406
20-8 전통시장 - 대학 협력	409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412
20-10 시장마케팅 지원	415
20-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418
제2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21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422
21-2 사업전환자금	424
21-3 소공인특화자금	426
21-4 성장촉진자금	428
21-5 일반경영안정자금	430
21-6 긴급경영안정자금	432
21-7 소상공인 전환대출	434
21-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436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제22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444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445
22-2 여성CEO MBA 교육	447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49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450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453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456
22-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458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461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464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467
제23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469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470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473
23-3 장애인기업 성장지원	476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478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제24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483
24-1 이노비즈 제도	484
24-2 메인비즈 제도	487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90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492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494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497
부 록	499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500
2. 중소기업 조세지원	503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제 1 부

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사업전환



-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Q**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A**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학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Q** 창업선도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창업선도대학은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 창업실행, 성장촉진 등 창업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A** 2013년부터 거점형 창업선도대학과 일반 창업선도대학이 나누어 운영되는데,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기본교육프로그램은 같으나 창업 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은 창업팀들이 창업선도대학에 입소하여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공간, 기자재 등)를 제공하고, 책임 멘토단을 통한 다각적인 코칭 및 심화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Q 본글로벌 창업자발굴 육성프로그램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 본글로벌 창업자발굴 육성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 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시 참여 선도벤처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매칭희망 선도벤처기업을 3순위까지 지정해 주시면 해당 선도벤처기업과의 상호 매칭희망 우선순위별로 매칭을 진행해 드립니다.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청년창업사관학교	6
1-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9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11
1-4 본 글로벌 창업자 발굴육성 프로그램	1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16
1-6 창조경제 대상-슈퍼스타V(왕중왕전)	1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21
1-8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24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등 원스톱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全过程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300팀 내외(260억원)

* '15년 지원현황 : 1,212개기업 신청(278개업체 선정), 평균지원금액(70백만원)

지원 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업의 대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전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등

지원 내용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 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 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예정) : '16. 2월중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발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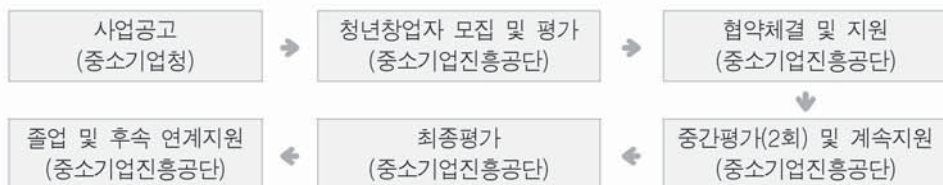
온라인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서류심사	▪ 2배수 선정, 면접심사 추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등 평가
면접심사	▪ 신청자 PT발표, 1.1배수 선정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심층심사	▪ 교육 및 코칭, BM심층평가 ▪ 사업화계획 및 사업비 확정 등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합격자 확정 (k-startup 홈페이지, 중진공 홈페이지 게시)
입교	▪ 4~5월 중 입교

*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 및 사업비 확정

제출 서류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 - 481- 3991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372, 1161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062-250-3030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11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50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 041-589-08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대학 및 투자·연구기관 등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350개사 내외(전체 예산 223억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4개 분야) : 주관기관 지정, 타 부처·사업 연계, 연구원 창업, 대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연계

지원 대상

주관기관 지정, 타 부처·사업 연계 등 : 3년 미만 창업기업

- 연구원 창업 :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 ▷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받은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 ▷ 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지원 내용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 (자 금) 최대 3천만원 이내, 창업사업화 비용(핵심역량 보강과제 이행비용)
- (서비스)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장전문가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
- 지원기간 : 3년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 고
멘토링	○	○	○	시장전문가 활용
자금지원	○	-	-	멘토링 결과 이행
지원연계	○	○	○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 연구원 창업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제공(무상, 공실 발생 시)
▷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이전, 성능·기능 인증검사 비용 등 추가 지원(기업별 최대 1천만원)

신청·접수

2016년 2월경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 창업기업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32개)을 선택하여 신청(주관기관 목록은 k-startup 홈페이지 공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문의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2~49, 4367~69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535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우 전수, 상호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6년 예산 : 70억원, 75개 내외 (예비) 창업팀

* '15년 지원현황 : 84개팀(신규 68개팀, 계속 16개팀)

지원 대상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수행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 선도벤처기업 입주, 시제품 제작, 기술·경영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 연계 지원

신청·접수

- 선도벤처기업 : '16.2월(예정), (예비)창업팀 : '16.3월(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5
-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 02-6331-7082, 02-2156-216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1-4

본 글로벌 창업자 발굴육성 프로그램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해외 현지진출지원 100억원, 130여개팀,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20억원, 30여개팀

* '15년 지원현황 : 해외 현지창업지원 62개팀,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24개팀 지원

지원 대상

- (초기기업 해외진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유망기업 해외진출) 창업 후 2년~7년 이내 기업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외국인기업
-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지원 대상)

유의사항 등

-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초기기업 해외진출)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출·창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제공
- (유망기업 해외진출) 해외 진출 전략 수립부터 해외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
-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 지원(5천만원 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정부창업지원사업 참여한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신설

신청·접수

2~5월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개념, 사업성 및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서면평가) →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및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발표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창업사업화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초기(유망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1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6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

창업선도대학육성

| 대학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육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전문인력, 연구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 규모

34개 대학, 980개 과제 내외(예산 753억원)

* '15년 지원현황 : 28개 대학, 총 913개 과제(예산 652억원)

지원 대상

○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창업아이템사업화) 시제품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7천만원) 지원(800개 과제 내외)
 - ▷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기업 중 우수 창업자를 대상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180개 과제 내외)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한마당 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선도대학 6개 내외 추가 선정(잠정 '16.1월)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 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별 자율운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별 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 042-480-4353~9
- 중소기업청(www.smba.go.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국 28개 창업선도대학

권역	대학	연락처	권역	대학	연락처
서울	건국대학교	02-450-3347	호남	원광대학교	063-850-7474
	동국대학교	02-2088-3737		전주대학교	063-220-2844
	연세대학교	02-2123-4848		조선대학교	062-230-7989
	인덕대학교	02-950-7098		전북대학교	063-270-4086
	국민대학교	02-910-5683		순천대학교	061-750-5434
경기·인천	경기대학교	031-249-8665	대구·경북	경일대학교	053-850-4451
	단국대학교	031-8005-2863		계명대학교	053-620-2034
	인천대학교	032-835-9670		영남이공대학교	053-650-9474
	한국산업기술대	031-8041-0988			
충청권	순천향대학교	041-530-4919	동남	동아대학교	051-200-6452
	충북대학교	043-261-3721		부경대학교	051-629-5230
	한남대학교	042-629-8565		경성대학교	051-663-5901
	호서대학교	041-540-9933	제주	제주대학교	064-754-2066
	한밭대학교	042-939-4715	강원	강원대학교	033-250-8974
	한국교통대학교	043-849-1675			

궁금해요! 증기맨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시 거주지역 이외의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창조경제 대상-슈퍼스타V(왕중왕전)

| 미래 유망 CEO 발굴을 위한 성공창업의 등용문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 CEO 발굴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지원 규모

90개팀 내외 (전체 예산 15억원)

- * '15년 지원현황 : 15억원 (88개 운영기관, 5,057개팀 참가신청, 전국본선(98개팀), 슈퍼스타V 왕중왕전(10개 팀) 시상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지원 대상

운영기관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기업)

- * 운영기관 추천 창업자(大賞 수상팀) 1팀에게 전국본선 진출권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창업 3년 이상의 창업자(개인, 법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기업 제외)
- ✓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로 총 수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단, 동 창업리그를 제외한 기타 창업경진대회에서 2014년 수상한 창업팀은 수상금액이 2,000만원 미만까지 창업진흥원을 통해 별도 신청가능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등

지원 내용

- 상금(최대 1억원) 및 부상품 지원
- 전국본선 진출팀 상금 지급,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등
- 슈퍼스타V(왕중왕전) :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연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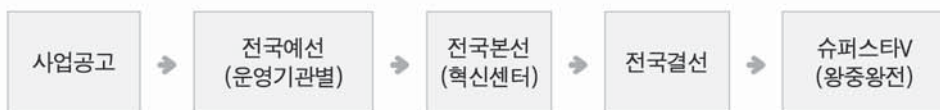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참가범위 확대 (기존 : 창업1년 미만 → 변경 : 창업 3년 미만)
- 직전년도 수상팀도 참여가능
- 전년도 9월 이후 개최되는 기타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도 동 대회 참여기회 제공

신청·접수

- 전국예선 : 운영기관별 신청·접수 (전년도 3,000만원 미만 상금 수상팀은 창진원에서 별도 신청·접수)
- 전국본선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042-480-4390, 4395)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이 주도하는 엔젤투자자/기술대기업이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R&D-해외마케팅 등 최대 10억원을 투자·지원하는 고급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00개 내외 규모

* '15년 12월 지원현황 : 운영사 22개, 창업팀 133개 선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창업팀당 최대 10억원(1+9) 내외 (최장 3년 이내)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자금(1억원), 해외마케팅(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2억원)를 추가하여 연계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신청·접수

상시 접수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 팁스타운
www.jointips.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 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7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1~5
- 사이버 팁스타운(www.jointip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벤처



- Q** 창업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A**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등 우수인력 중심 2인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이면 가능합니다.
- Q** 하나의 운영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 A** 여러 운영사에 신청 가능하나,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운영사와 투자를 확약하셔야 합니다.
- Q** 엔젤투자금 이외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 지분확보를 하는지요?
- A** 기술개발자금은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팀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팀이 성공으로 판정될 시 기술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며, 실패할 경우 기술료 상환부담이 없습니다.

1-8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 내외(예산 100억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 (자 금) 최대 3천만원 이내, 창업사업화 비용(핵심역량 보강과제 이행비용)
- (서비스)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장전문가 멘토링 등
- 지원기간 : 3년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 고
멘토링	○	○	○	시장전문가 활용
자금지원	○	-	-	멘토링 결과 이행
지원연계	○	○	○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신청·접수

2016년 2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기업과 전문가 매칭, 해결 수행과제 선정, 자금과 멘토링 서비스로 문제해결

① 멘토 매칭	② 해결과제 설정	③ 문제해결		
		자 금	서 비 스	
핵심수행과제 + 시장전문가	(1차년도) 수행과제	사업비 산정 및 지원	맞춤형 시장전문가 멘토링	교육
	(2차년도) 수행과제	지원연계		코칭
	(3차년도) 수행과제	지원연계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

○ 추진절차



문 의 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2~49, 4367~69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535



제2장 창업저변 확대

2-1 창업인턴제	27
2-2 청소년 비즈쿨	29
2-3 창업아카데미	31
2-4 창업대학원	33
2-5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34
2-6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6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8

2-1

창업인턴제

| 현장에서 배우는 성공창업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명 내외(총 100억원)

* '14~'15년 지원 현황 : 창업인턴 총 84명 지원

지원 대상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로서, 기본 근무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기업 요건) ① 창업(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벤처인증 보유 기업,
②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③ 매출액 1억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경우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중소기업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지원 내용

- (인턴십)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80만원 이내의 인턴활동비 지원)
 -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4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1억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16년 1분기 중 공고
- (선정방법) 요건검토 → 발표평가*

* (평가항목) 창업가적 자질, 인턴십 운영계획, 사업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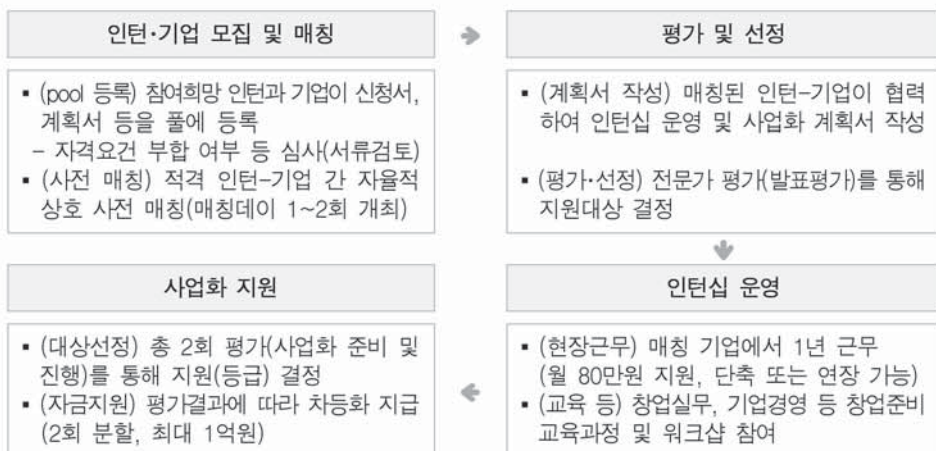
*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인턴십 종료 후 별도 평가(인턴십 실적,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계획의 적정성 등)를 통해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창업인턴 계획서,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처리 절차

인턴·기업 모집 및 매칭 → 평가 및 선정 → 인턴십 운영 → 사업화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 - 481- 8920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2, 4467
-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 02-6331-7081, 708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2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6년 예산 : 83억원, 전국 450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15년 지원현황 : 412개교(초등 55개, 중등 180개, 고등 171개, 특수학교 6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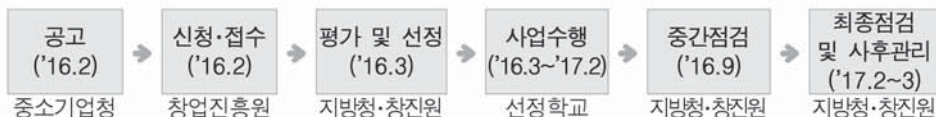
2016. 2월 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등

처리 절차



* 비즈쿨 캠프는 방학 등을 활용하여 별도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3~65, 447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3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창업교육 지원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 창업교육, 성공 CEO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6년 지원예산 : 35억원, 30개 내외 교육기관을 통해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1,000여명 창업교육

* '15년 지원현황 : 창업강좌 60여개, 예비창업자 1,300여명 교육

지원 대상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지원 내용

준비된 창업가 육성을 위해 실전창업교육 및 성공 CEO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간 중 선배기업, 창업전문가, 수강생간의 네트워킹 지원

신청·접수

'16년 2~3월 중 창업교육 운영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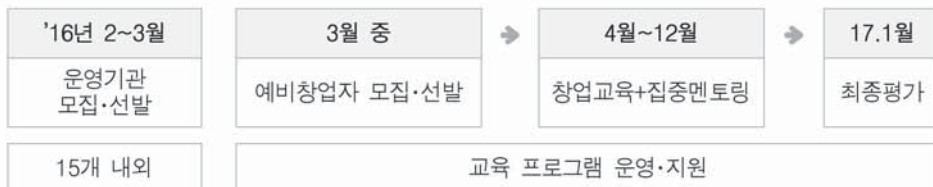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K-Startup(www.K-startup.go.kr)-창업지원-창업아카데미에 게시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 042-480-446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지원 - 창업아카데미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

창업대학원

|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창업전문가를 양성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6년 예산 : 9억원

* '15년 지원현황 : 9억원 (5개 대학원)

○ '15년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지원 대상

5개 대학원(대학원별 30명 내외)

지원 내용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

신청·접수

각 대학원별 학사일정에 따름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53-620-2078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02-910-5728
-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051-510-1369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031-290-5573
- 연세대학교(원주) 정경·창업대학원 033-760-248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5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 시니어의 성공적 기술창업을 위한 인생 제 2막 설계

시니어(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15개 내외,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3개소 내외('16년, 53.9억원)

* '15년 지원규모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9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0개소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의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전국 15개 내외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을 제공 • 경영지원(상담 자문, 교육), 마케팅지원 등	전국 23개소 내외

신청·접수

'16년 연중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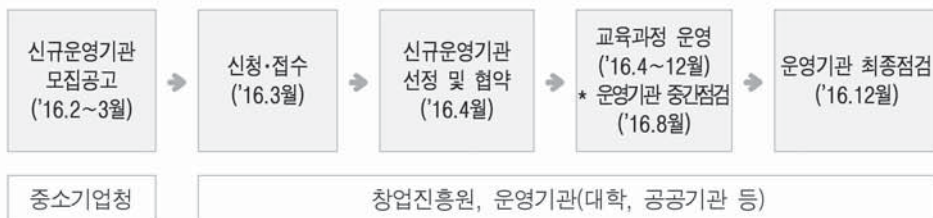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스쿨 및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함(K-Startu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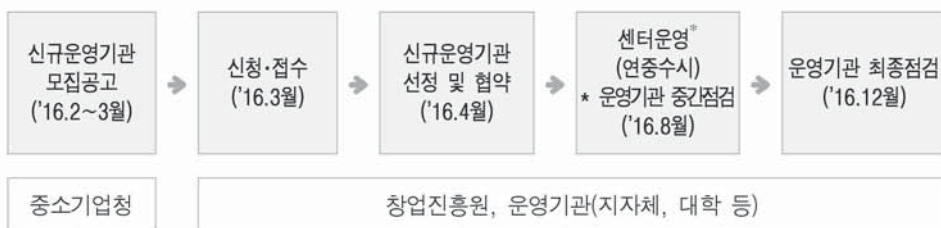
* 스쿨 및 센터 신규 운영기관 모집 : '16년 2~3월 예정(K-Startup 참조)

추진 절차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15년 이전 지정센터 운영기간 : '16년 연중수시

* '16년 신규 지정센터 운영기간 : '16년 4~5월 부터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4, 4387~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2-6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창업보육센터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 보육환경 개선과 창업보육센터 관리와 입주기업 사업화 등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체예산 227억원(리모델링 35억원, 운영비 121억원, 보육역량 강화 81억원)

* '15년 지원현황 : 리모델링 13개, 운영비 201개, 보육역량 강화 97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운영평가 하위등급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지원 내용

- 리모델링 :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지원(총 사업비 80% 이내, 최대 3억원 한도)
- 운영비 : 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비용 지원(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 60백만원 ~ 13백만원)
- 보육역량 강화 : 창업보육센터별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프라 구축 지원(총 81억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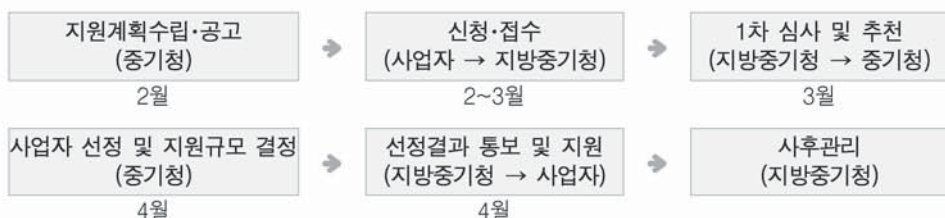
'16.2월 ~ 3월

- 리모델링 : 온라인 신청·접수(www.bi.go.kr)
- 운영비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보육역량 강화: 온라인 신청·접수(www.bi.go.kr)

제출 서류

- 리모델링·보육역량 강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도 공고시 안내)
- 운영비 :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료(별도 안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3968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69-9605, 96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싶은데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²이상의 시설 보유 ②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③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지정요건입니다.

2-7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 법인설립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자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자치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제한없이 사용가능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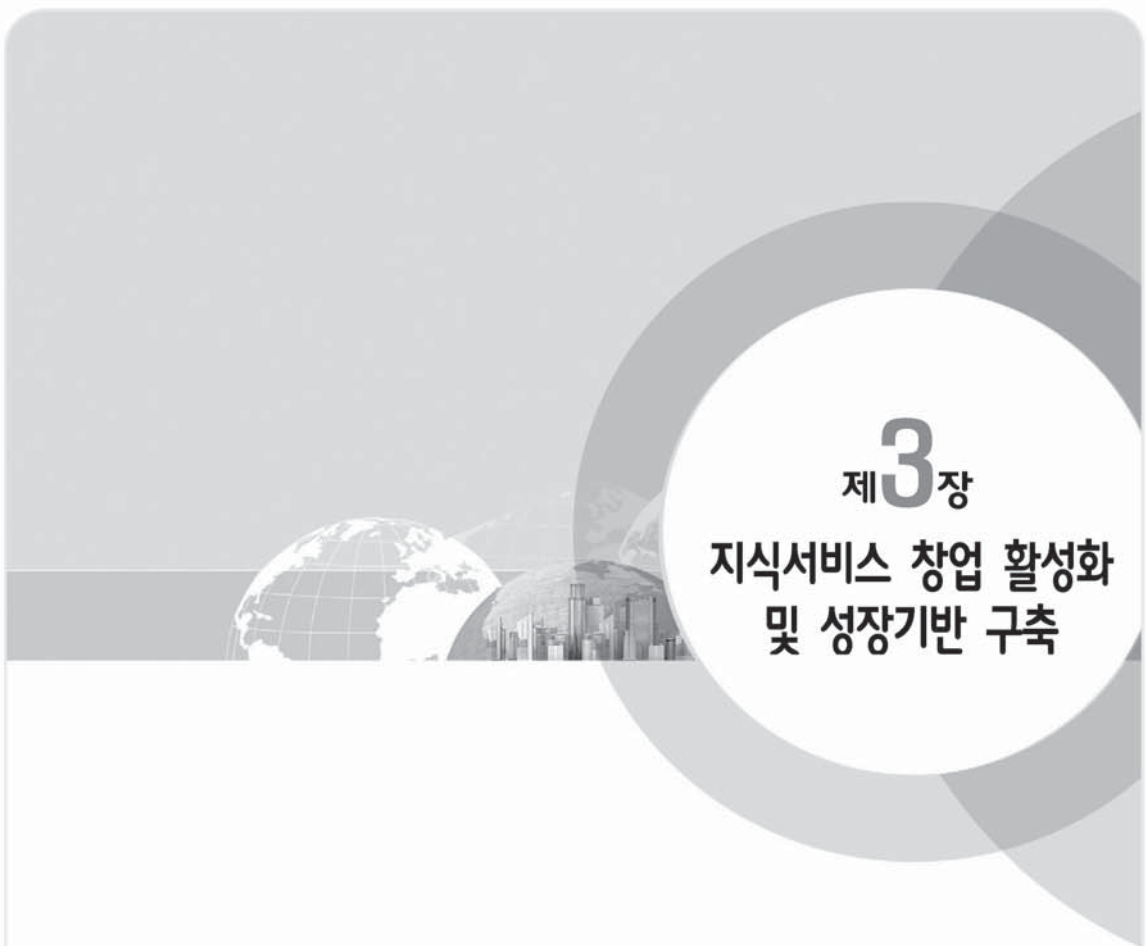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지자체 (안행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문 의 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0,2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제3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3-1 스마트창작터 운영	41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3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6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49

3-1

스마트창작터 운영

|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교육 및 창업지원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스마트 창작터에서 개발교육 및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국 스마트 창작터 운영('16.1 신규 기관 지정 예정)

* '15년 지원(30개 창작터) : 개발교육 4,000명, 창업지원 330팀(평균 18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CT 기반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희망자(팀)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개발,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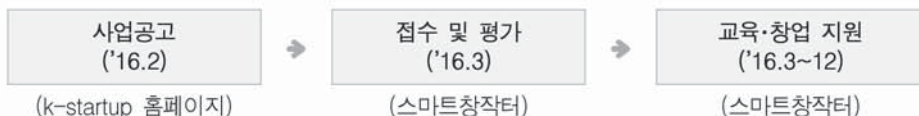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 창업진흥원 : 042-480-4391~2
- 스마트창작터 : '16년 초 중소기업청 및 k-startup 홈페이지에 게시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창업 및 사업화 종합 지원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입교생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131.5억원)

- * '15년 지원현황(4개 창업학교) : 174개 창업팀(평균지원금액 48백만원)
-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기관 : (주)윙니텔(서울 구로구), 경북대학교(대구 동구), 대전문화산업진흥원(대전 유성구), 울산대(울산 남구)

지원 대상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미만 기업
- * 지재권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장애인 창업자 등 가점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본인 부담 30% 이상)

신청·접수

희망 지역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통해 별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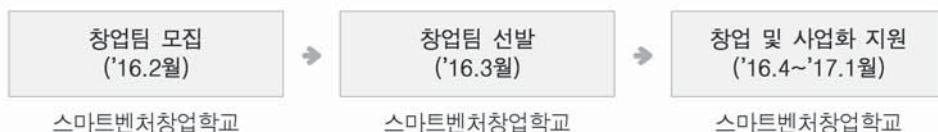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창업·사업화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 창업진흥원 : 042-480-4396~7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주)옴니텔(서울, 070-7605-6169)
경북대학교(대구, 053-282-5000)
대전문화산업진흥원(대전, 042-862-9245)
울산대학교(울산, 052-247-806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멘



- Q**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 대상인 앱, 콘텐츠, SW융합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나요?
- A**
1. “앱” 분야는 모바일 앱 웹 앱 등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하는 응용프로그램 분야 (제조 융복합 앱 포함)
 2. “콘텐츠” 분야는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의 지식서비스 분야
 3. “SW융합” 분야는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 융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SW 분야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보육공간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오십시오.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국 66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88억원)

* '15년 지원현황(10월말 기준) : 1,009개사 지원, 경영자문 1,596건, 교육 6,000건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
 -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

우선선정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및 안행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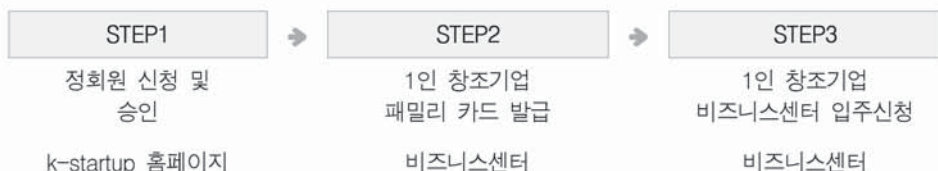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기관)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
 -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발생 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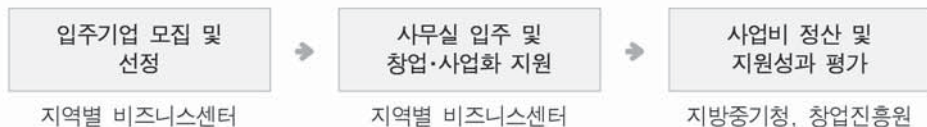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대표자 의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구체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자료실에 게재된 세부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연락처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3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창업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리스트 참조
-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 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7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제품화·마케팅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제고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 규모

450개사 내외 (60억)

* '15년 지원현황 : 408개사(평균지원금액 10백만원)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확인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내 1인 창조기업이란?
- * 1인 창조기업 정의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단,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됨
-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선정 시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등

지원 내용

- 지원과제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사업화 아이템의 마케팅 과제
- 지원조건 : 1인 창조기업이 필요한 세부지원내용을 선택하되, 총 비용의 최대 80%(1,000~2,000만원 이내) 지원
- 세부지원내용
 - ▷ 홈페이지/앱 제작, 홍보영상 제작, 카달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광고,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접속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류 작성 및 업로드 → “My 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 (신청기간) 1~2월 중 (K-Startup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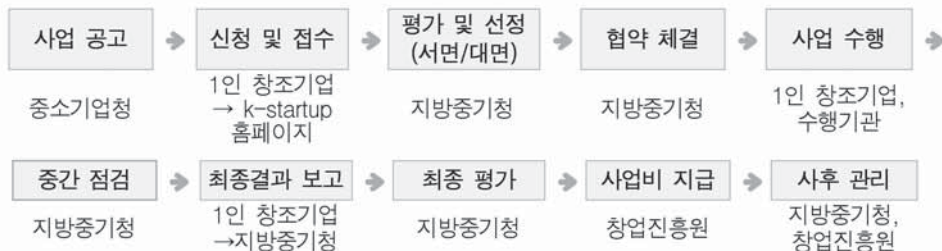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의 전문성, 제품/서비스의 창의성/독창성/기술성,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제출 서류

- 신청양식은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연락처는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4
-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 지원자금	53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56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58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60
4-5 재도전성공패키지	63

4-1

재도약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550억원 규모('16)

▷ 사업전환 1,250억원, 구조개선 300억원, 재창업 1,0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전환	•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구조개선 진단을 받은 경영정상화 추진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 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전환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8년, 거치 3년 포함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구조개선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9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접수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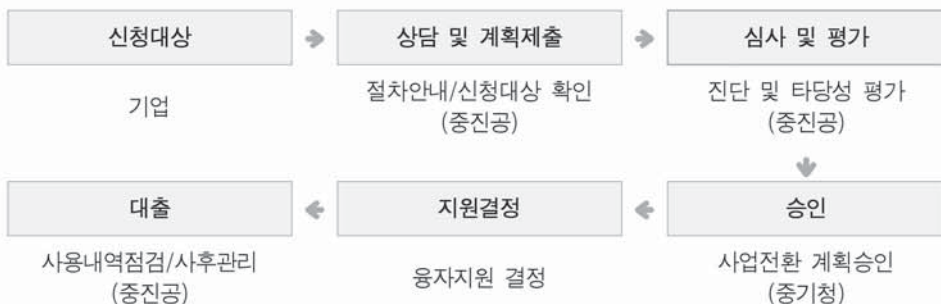
* 신청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전환 :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등을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 구조개선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등
- 재 창 업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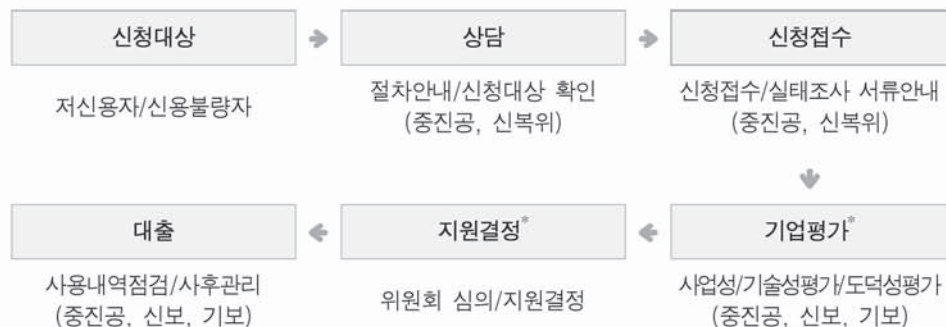
① 사업전환



② 구조개선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③ 재창업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000

4-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사업정리 및 기업회생 정보 제공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70여개 기업(전체 예산 7억원)

* '15년 지원현황 : 229개 기업 지원, 기업 당 평균 2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로제시컨설팅 처방'으로 진단된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기업 문제점을 도출·치유해 주는 시스템(☎1357)
-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 경영위기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성위기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등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청산·파산)지원 또는 회생가능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 경력을 소지한 회생업무 전문회계사 및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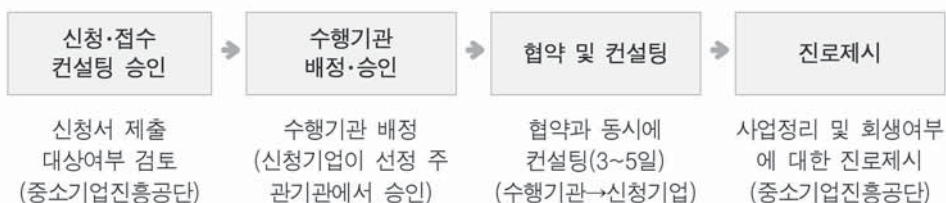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재기” 입력

제출 서류

- 신청서 양식
 -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및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5여개 기업(전체 예산 16억원)

* '15년 지원현황 : 52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4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지법

지원 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기간 : 협약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 까지(최대 1년)

◇ 컨설팅 범위 ◇

- | | | |
|--------------|----------------|------------|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채권목록 작성 |
| ▪ 시부인표 작성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이회생'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4-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 재창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7여개 과제 (전체 예산 40억원)

* '15년 지원현황 : 30억원 (23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1.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자
3.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 단, 1, 2, 3 각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이 가능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③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지원 내용

- 개발 총 소요비용의 90%(최대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하되,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제안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필 수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 수
④	관련서류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해당시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확인사항	필요서류	발급기관	제출방법	비고	
				법인	개인사업자
1. 폐업여부	①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홈텍스)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①, ②중 택일	
	② 폐업신고서	세무서 양식			
	③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홈텍스)		필수	
2. 세금체납 여부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 동사무소 (민원 24 사이트)		해당시 ①, ②중 택일	
	② 세금 분납계획서	세무서양식			
3. 재창업 7년이하	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개인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텍스)			필수
4. 신청자격 (해당시)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법원		①, ②, ③중 택일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법원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우수재기기업인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재도전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지원 대상

- 기존 사업 실패(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지원 규모

150개사 내외(0.3억원~1억원 지원(평균 0.4억원))

- * '16년부터 중기청·미래부가 협업하여 공동 공고 및 선정,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5년 미래부 K-global startup 재도전,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별도 운영)

지원 내용

재도전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을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

-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3천만원 ~ 10천만원 규모로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서울('16.상 예정), 부산재창업전용 보육센터(부산시 협업, '16.상)를 통한 전용 사무 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 전문가 상시 멘토링 등 제공

- * 한정된 사무공간 특성상 수요자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제공 예정

지원 절차

① 경영위기기업

- 법률, 기업애로 등 심층상담 및 자금지원을 통해 실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생 및 사업정리로 실패비용 최소화

< 경영위기가기업 지원 절차 >



② 재도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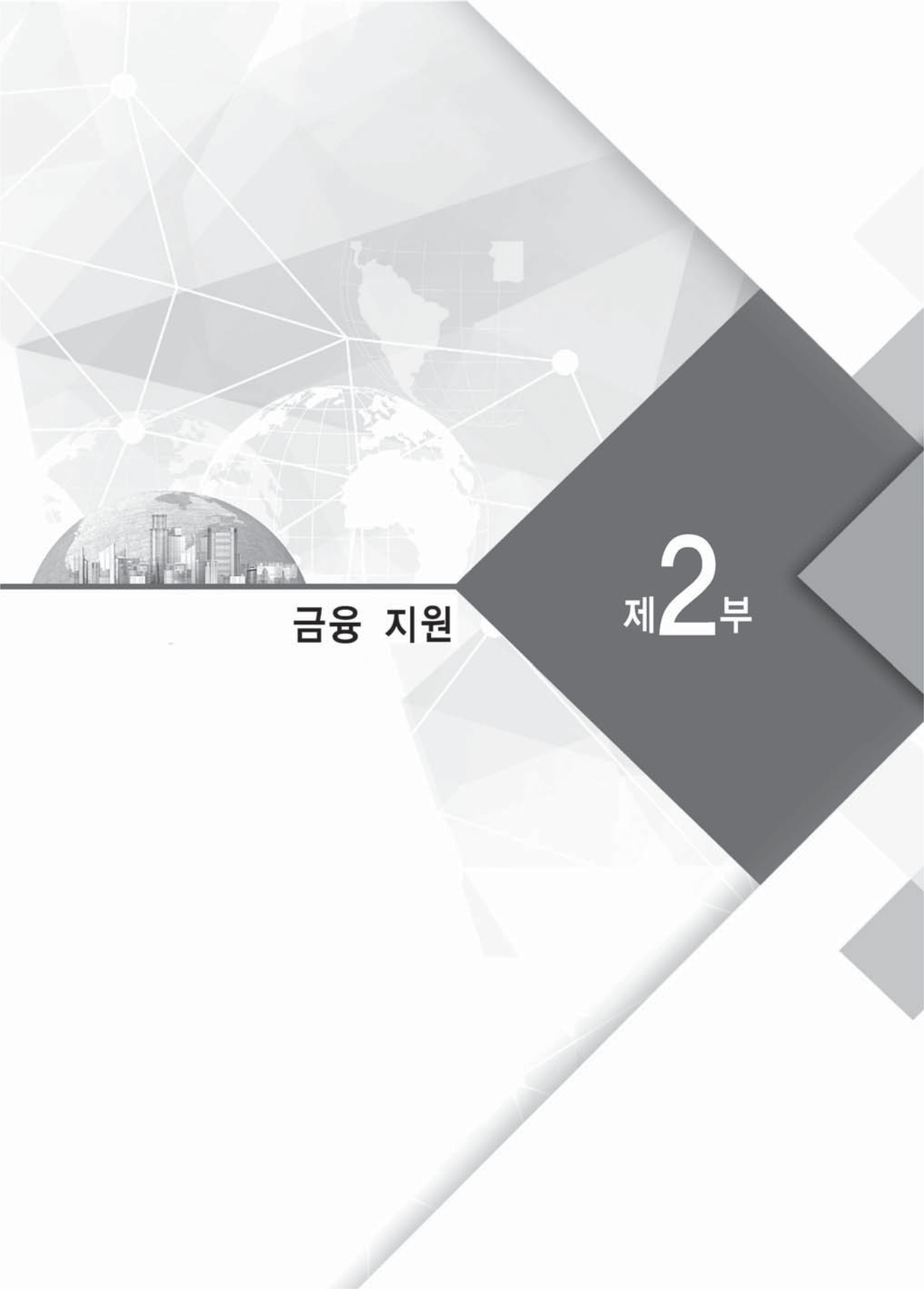
- 부도, 폐업이후 심리치유 및 재창업 역량강화, 신용회복상담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재도전기업 지원 절차 >



문의처

-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02-6678-4050
- 부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051-630-7426
- 대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042-866-0141
- 기타지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32)로 문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금융 지원

제2부

정부의 금융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벤처와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 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 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 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증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70
5-2 창업기업지원자금	77
5-3 신성장기반자금	80
5-4 긴급경영안정자금	84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87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91
5-7 재도약지원자금	93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기업당 용자한도

45억원까지(비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기업도 새로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용
 - *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자금신청
 -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온라인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
 -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결정
- ④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용자 제한 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합한 업종(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
-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 기업
-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 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 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접수 시기

- 2016. 1 ~ 자금 소진시까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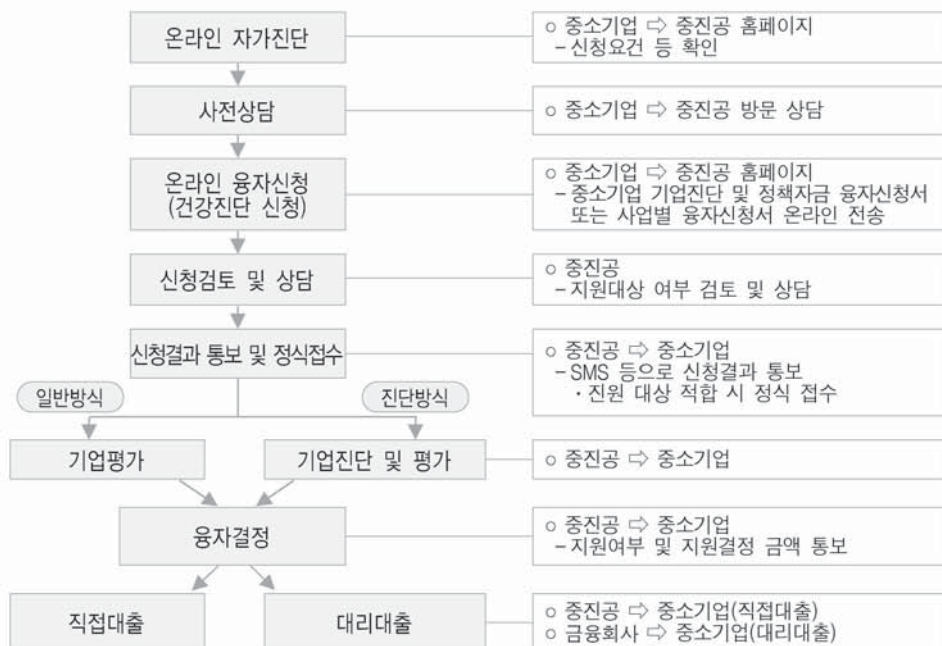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용어설명

융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 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5-2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 규모

1조 4,50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9,681개사 중 6,04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11,913개사 중 8,1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지원 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일반창업기업지원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단,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매출액 150%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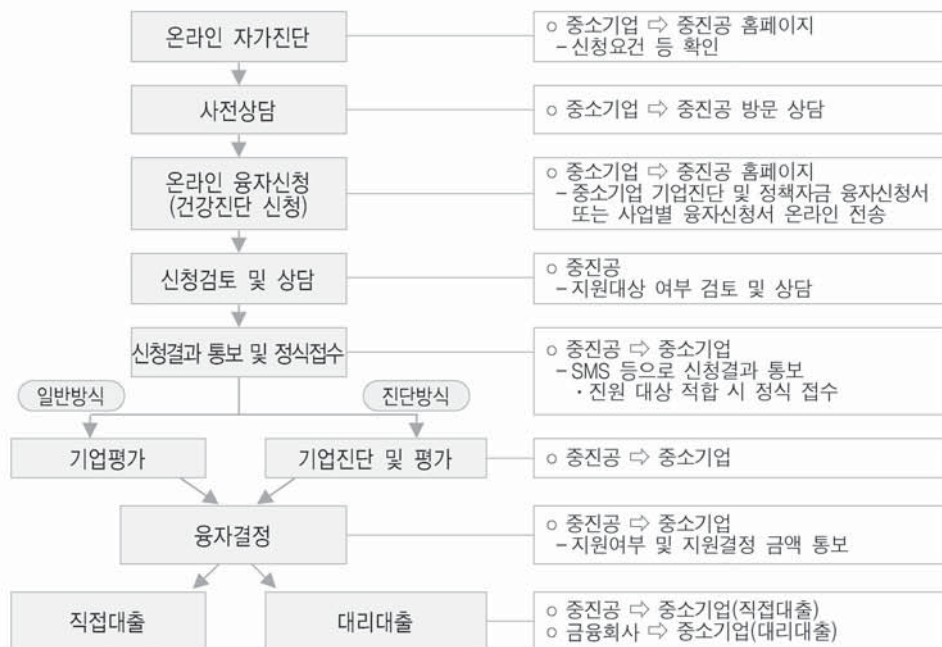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필수)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5-3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용자 규모

11,50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2,078개사 중 1,6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2억원
-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4,678개사 중 3,96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8억원

지원 대상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용자 제외
-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신성장유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 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기초소재형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 가공조립형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 단, 최근 3년의 시작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최종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를 1.5배 적용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 사업장확보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매출액 150% 이내

-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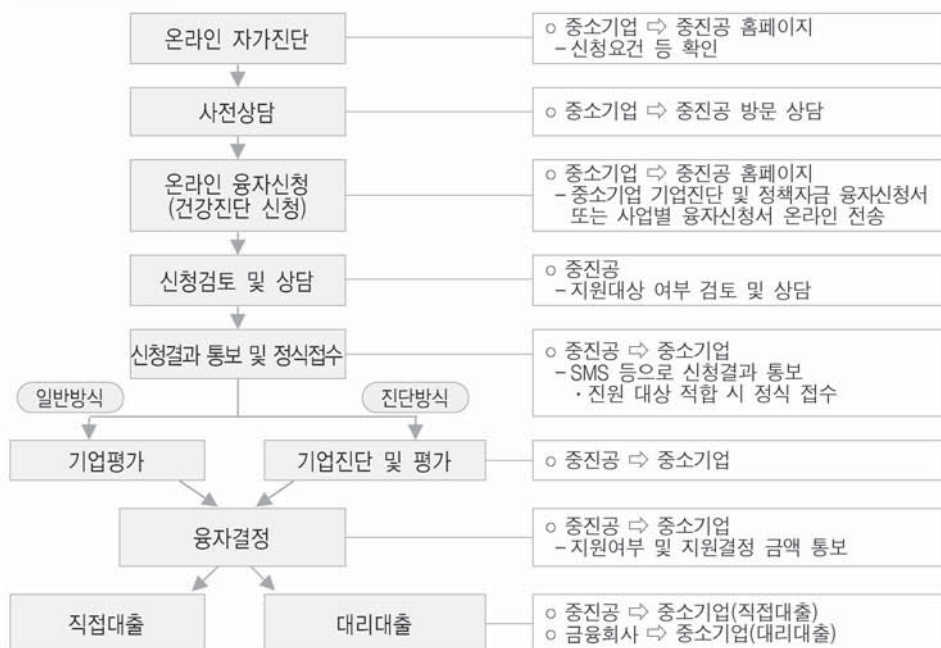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5-4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수출품 생산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1,55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537개사 중 50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1억원
-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2,894개사 중 2,6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 조건 악화, 기술 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등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 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신청제한)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경영애로)를 2회 이상 지원 기업은 용자 제외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한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 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 수출실적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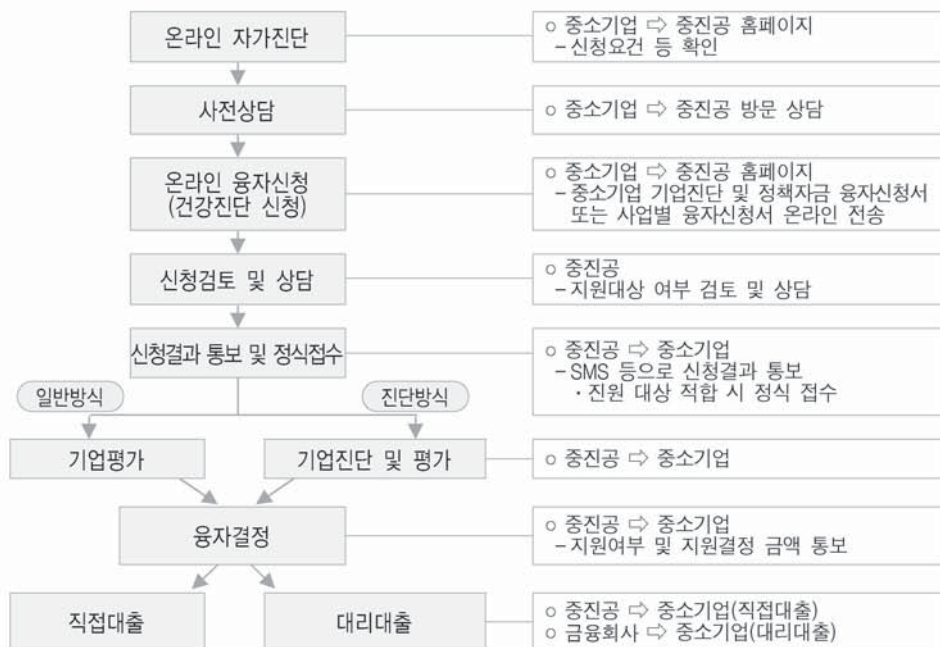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1,5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 ▷ 2014년 신청기업 774개사 중 5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467개사 중 38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 2014년 신청기업 72개사 중 4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7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54개사 중 3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4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2014년 신청 프로젝트 21개 중 9개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6억원
- ▷ 2015년 신청 프로젝트 15개 중 6개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3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 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 문화콘텐츠산업 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 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35%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 한도로 함)

구 분	내 용	비 고
고 정 이 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 익 연 동 이 자	영업이익 × 3.3% (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 이자 면제)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

-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정도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원금상환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만기보장금리 4%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PB)를 중진공이 인수
 -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프로젝트 별로 협의

○ 대출기간

-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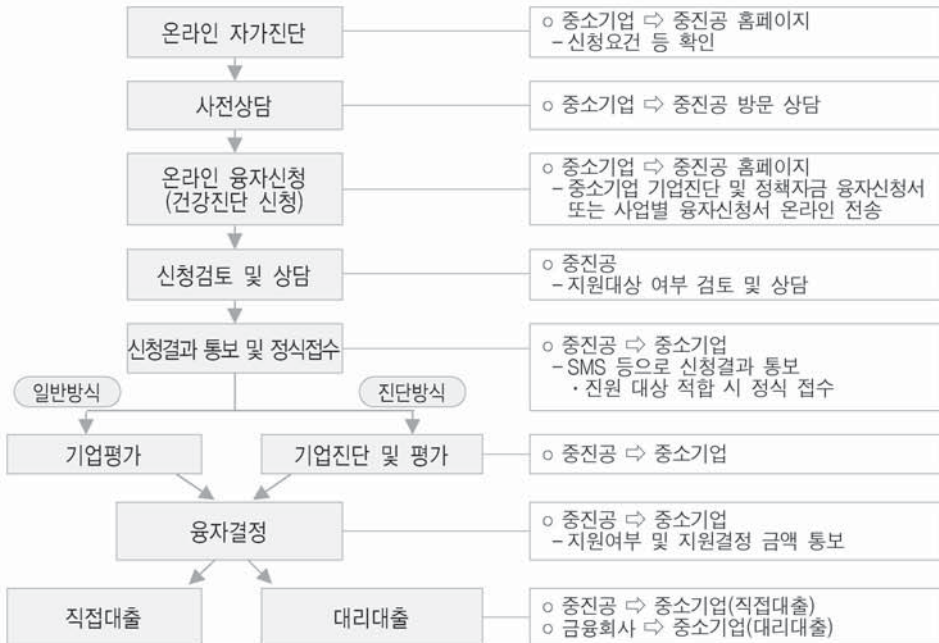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궁금해요! 중기맨



Q 투융자복합금융은 임의상환이 가능한가요?

A 임의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상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성장 시점에 임의상환으로 “성장가치의 공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익공유형 대출의 이익연동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A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기 때문에 원금상환 종료 다음년도에 마지막 이익연동이자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15년 대출업체의 경우 '21년에 '20년 재무제표에 의해 납부금액이 결정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표면금리(1%, 단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4%, 복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1%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5-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3,50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1,935개사 중 1,50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008개사 중 1,67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 단,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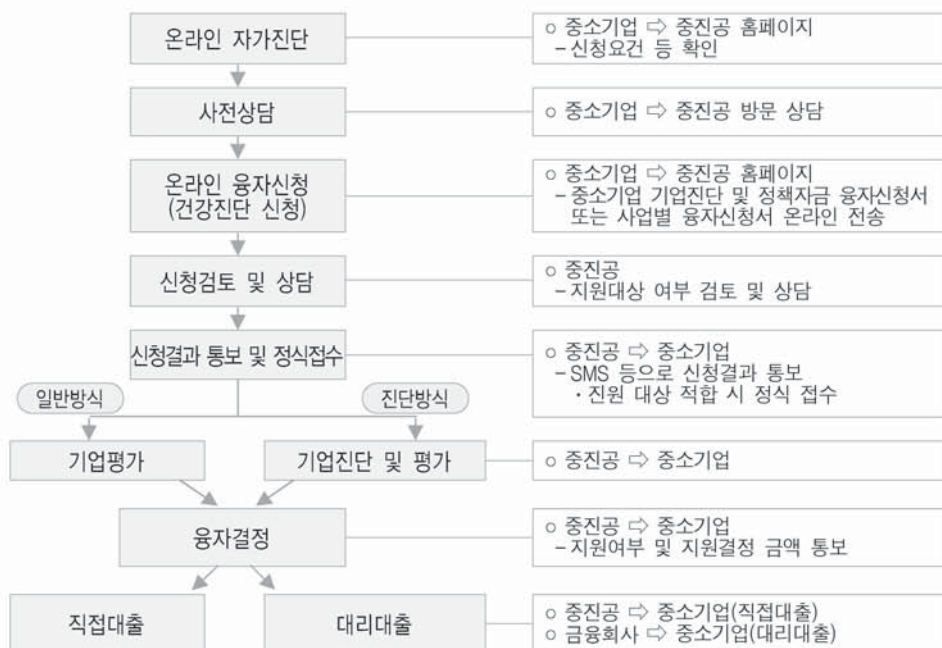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5-7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용자 규모

2,55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396개사 중 35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4.8억원
-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1,111개사 중 92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7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자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자금) 저신용자(또는 신용불량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재창업 준비중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할 것
 -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 자금 : 재창업자 중 재창업 R&D 승인기업,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Fund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추진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3년 이내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매출액 150%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70억원
 -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 3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기업에서 선택)

- *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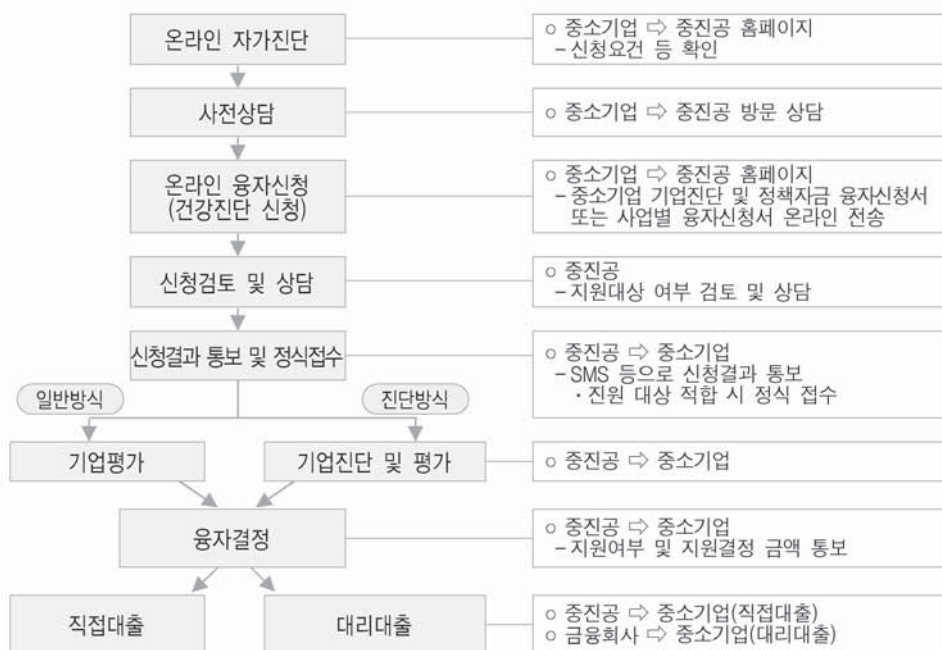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제6장 신용보증 지원

6-1 신용보증기금	97
6-2 기술보증기금	100
6-3 지역신용보증재단	104
6-4 매출채권보험	109

6-1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0.5조원으로 운용

* '15년 지원규모(11월말) : 41.6조원

지원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차기 1년간 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리내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매



Q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보증
	고부가가치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 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 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Q 보증료?

A 보증신청기업은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조사수수료를 납부

-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
- ☞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의 범위에서 운용

6-2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19.7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7조원 제외)

* '15년 지원규모(11월말) : 19.7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9조원 제외)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접수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 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 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용어설명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구 분	내 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제시해주고, 창업후 사전 제시금액 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또는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 업무협약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R&D보증	· R&D를 각 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하여 지원절차의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6-3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16.8조원으로 운용(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 '15년 지원규모 : 약 16.4조원 (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우선선정

- 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 보증한도
 -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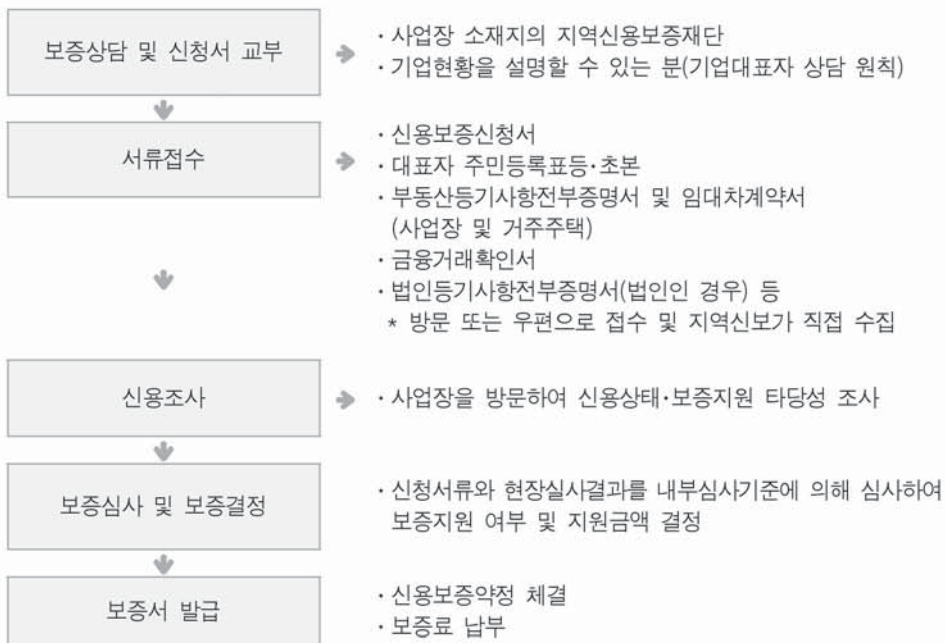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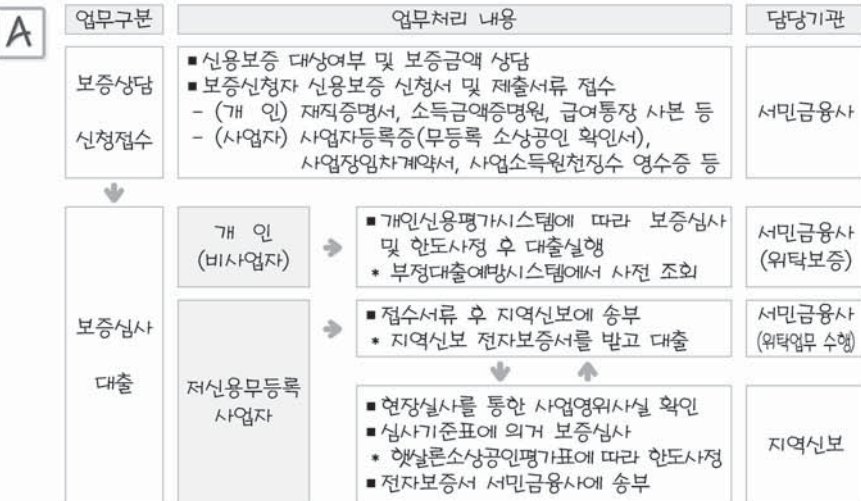
궁금해요! 중기매



Q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는?

A	구 분	내 용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 필)
	나들가게 특례보증	· SSM 진출 확대에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나들가게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나들가게의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햇살론 신용보증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에 대한 보증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 용어설명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보증료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서 연 0.5~ 2.0%의 보증료를 수납

-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납부 가능
- ☞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납한 보증료 전액 환급
- ☞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

지급보증의 보증

-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지급보증)하는 경우에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에 응하여야 할 금전 채무를 보증

어음보증

- ☞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 포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유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에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

이행보증

- ☞ 소기업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구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보증

시설대여 보증

- ☞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6-4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매일 염려 없는 거래안정망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제도

지원 규모 보험인수 17조원으로 운용

가입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중소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3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 채권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본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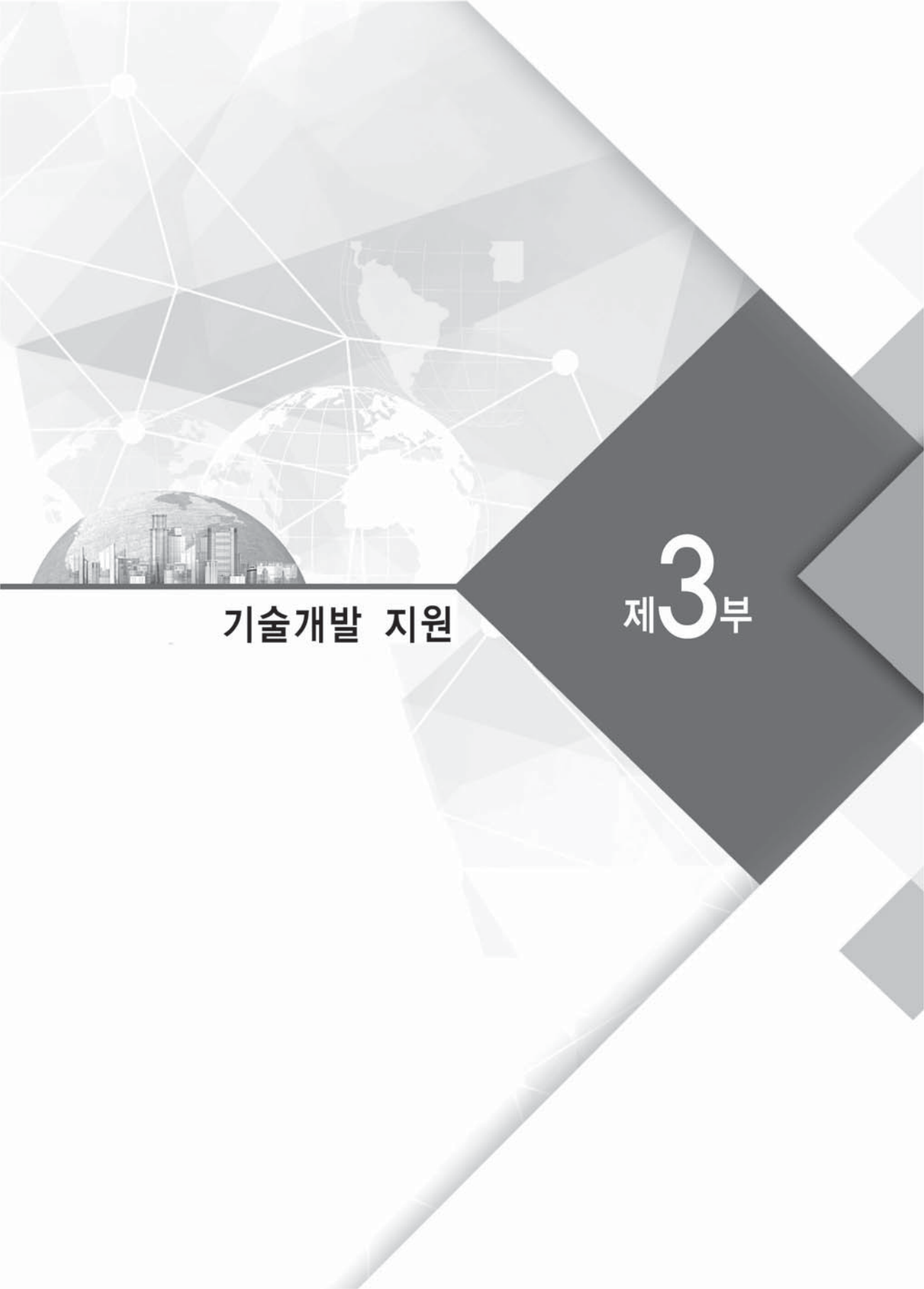
- A**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기술개발 지원

제3부

신기술·신제품 개발,
튼튼하게 후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벤처와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지원



- Q**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 A**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E등급 이상이고, 해외수요처와 개발, 구매계약 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늘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사업 참조)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D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제 7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18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23
7-3 창업성장기술개발	127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31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133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136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139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41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43
7-10 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46
7-11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151
7-1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154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260억원(신규 654개 과제 985억원, 계속 503개 과제 1,275억원)

* '15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2,289개 중 신규 591개 과제, 계속 495개 과제 선정(과제당 2.4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수출액 500만불이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 ▷ 수출유망과제 : 최근 2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혁신기업기술개발

- ▷ 혁신형기업과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투자연계과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 고성장기업과제 : 3년 평균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 “고성장 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은 각 사업공고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억원)	<글로벌강소기업과제(241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자유응모)
	<수출유망과제(395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중소기업이 FT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억원)	<혁신형기업과제(1,18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품목지정)
	<투자연계과제(181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미래유망 및 투자유치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R&D와 민간 투자를 연계 지원(품목지정)
	<고성장기업과제(158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고용, 매출액 등 고성장성 중소기업의 R&D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및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품목지정)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5억원 •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내역사업별 개편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0억원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혁신기업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8억원	혁신기업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2억원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1.5억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글로벌강소기업	'16. 5월	5~6월	7~8월	8~9월
	수출유망	'15.12월	'15.12~'16.1월	2~3월	3~4월
혁신기업기 술개발	혁신형기업	'16. 2월	2~3월	4~5월	5~6월
	투자연계	'15.12월	'15.12~'16.1월	2~3월	3~4월
	고성장기업	'16. 4월	4~5월	6~7월	7~8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15.12월	'15.12~'16.1월	2~3월	3~4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A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 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자유응모 : 신청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목표 및 내용 등을 정해 응모하는 과제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성공판정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7-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World Class 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 '17년까지 300개 선정예정

* '15년 지원현황 : 50개사 선정.지원('15년까지 누계 186개사 선정)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업규모와 기업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 기업규모

- ▶ '1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¹⁾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²⁾·중견기업³⁾

1) 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기업특성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 ▶ 또는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5%이상(매출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증가율 제한없음)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공급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16년 사업공고 시 확정)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3~5년간) - 기업당 연간 최대 15억원 국비 지원, 기업부담 50% -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IP-R&D 연계지원 * 평가결과와 일부 기업은 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지식재산 전략원
시장확대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비용 지원(최대 5년간) - 연간 마케팅 활동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 지원 (기업별 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0.7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목표시장이 중국인 경우, 연간 최대 국비 1억원 지원)	KOTRA
인력확보	▶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 - 국내 이론교육과 해외 현지 실무교육을 병행, 기업 진출 희망국현지 전문가 양성 * 구체적 지원조건은 추후 공지 예정 ▶ 온라인 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잡코리아
자금지원	▶ 정부 R&D자금관리은행의 투자펀드 결성, 기업공개, 해외법인 설립, 대출, 채권, 보증, 파생상품 등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금융 지원 - (투자) 4,500억원 규모의 후보기업 지원 사모펀드(PEF) 조성 - (대출) 글로벌 전문후보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 금리 최대 0.5%p 우대 - (보증)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 2배 우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보증료 70% 지원 등 무역보험공사 연계 무역금융 지원 - (기타) 환위험 대응 Night Desk(~24:00) 운영, 환파생상품 노마진 가격 적용, 글로벌지원 DESK(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보증보험료 할인,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 확대 지원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및 애로 사항 컨설팅 지원 - 신규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마케팅 활동 연계 - 산업부 R&D자금 관리은행인 기업·우리·신한은행 및 ID社를 통해 경영, 회계, IP 분야 등 컨설팅 지원 ▶ 국제지재권 분쟁 컨설팅(수출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전략, 분쟁확대 예방)	KOTRA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지식재산 보호협회

신청·접수

시행계획 공고 및 양식교부 : '16.2월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절차)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평가항목)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 기업 선정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51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 「사업공고」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용어설명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지속적 혁신과 비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의미

- ① (양적규모)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② (질적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 세계시장 1~3위)

7-3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1,300개 과제(전체 예산 1,888억원)

* '15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5,897개 중 1,230개 선정 지원(과제당 평균 1.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1인 창조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 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1~5억원(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
창업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80% 이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최대 2년, 5억원	엔젤투자사의 투자·보육·멘토링을 조 건으로 기술창업팀(2인 이상)의 기술개 발 지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년, 1억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여성참여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과제 신청자격 강화

-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15) 여성기업 → ('16) 신규 R&D인력을 고용(예정)한 여성기업
- ▷ 1인 창조기업과제 : ('15) 업력 제한없음 → ('16) 창업 후 7년 이하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월 中 공고 예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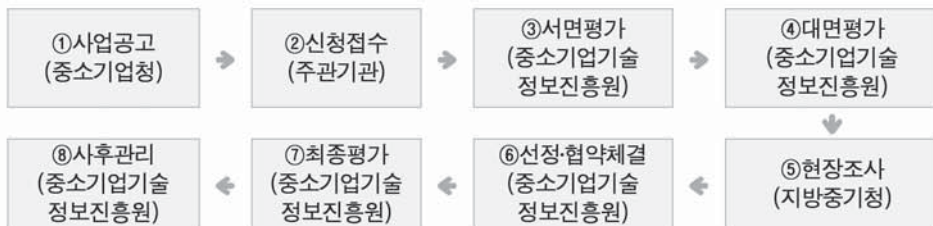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



* 창업기업과제 내 세부과제별 평가절차가 다를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과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33
-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1인 창조기업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Q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우수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 주는 사업. 수요처(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

지원 규모

600억원(계속 69개 과제, 135억원 포함)

* '15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562개사, 384개 과제 지원(평균 195백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 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개발비 일부를 수요처에서 부담(총 개발비의 20%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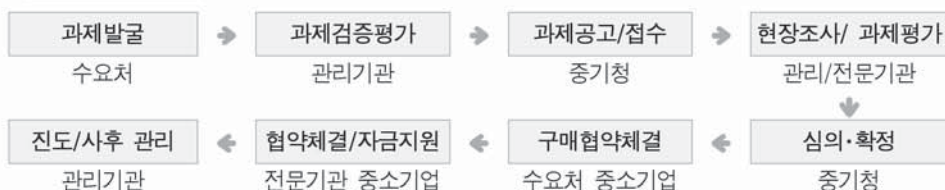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등
- 사업성 : 시장규모, 시장 성장성,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수요처 구매동의서 등

신청 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www.smtech.go.kr 게시)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5, 0713, 071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Q**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 및 수요조사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7-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 해외수요처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규모

400억원(계속 16개 과제, 31억원 포함)

* '15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74개사, 156개 과제 지원(평균 200백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바이어와 상호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채무불이행, 의무사항 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조사결과 E등급 미만인 경우
- ✓ 해외수요처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지원 내용

- (글로벌협력 과제) 글로벌기업, 해외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 KOTRA 등 운영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 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해외수요처와 계약내용, 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 수준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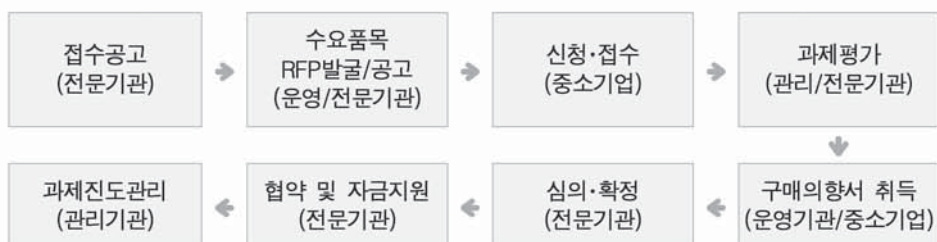
사업계획서, 구매계약 관련서류, 신용등급 보고서 등

신청 서류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 (www.smtech.go.kr 계시)

처리 절차

- (글로벌협력 과제)



- (기업제안 과제)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5
- KOTRA : 02-3460-775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국외신용조사 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7-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개발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300억원(계속 65개 과제, 67.2억원 포함)

* '15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45개사, 188개 과제 지원(평균 145.8백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를 받은 과제의 연구개발을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투자기업의 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 수준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투자기업 구매동의서 등

신청 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www.smttech.go.kr 게시)

처리 절차**투자 기업**

- 대기업 :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LS엠트론, LG전자, SK텔레콤

- 중견기업 : 경창산업,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루멘스, 렉스코, 미래나노텍,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오택캐리어, 인성정보, 인켈, 엠씨넥스,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엔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필옵틱스, 한국텔파이, 한백종합건설, S&T모티브
- 공기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2, 071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13, 8714, 8717, 87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추천서와 투자기관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 추천서는 수요조사 과제 신청 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기업제안 과제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7-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간의 기술개발지원 뿐 만 아니라 1년간 사업화를 위한 자금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57억원(신규 5개과제 15.5억원, 계속 20개 과제 41.5억원)

* '15년 지원현황 : 신규 신청과제 197개 중 6개 과제 선정(평균 3.2억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R&D 지원이 불가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창의·도전적 역량을 갖춘 기업(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3% 이상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비의 최대 65%, 2년, 최대 8억원까지 지원
 - ▷ 1단계(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1년, 4억원까지 지원
 - ▷ 2단계(기술개발+사업화)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1년, 4억원까지 지원
 - * 2단계는 1단계 종료후 중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자유기획과제 (품목지정)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품목(제품군)에 대한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술들에 대해 자유응모로 지원	2년간 8억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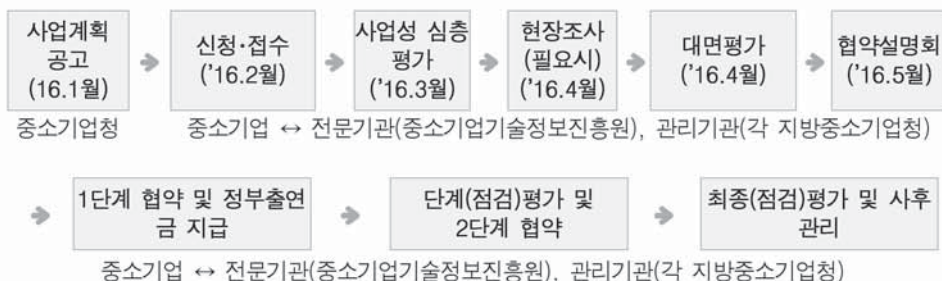
'16. 1월 공고 예정

- 온라인 사업신청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평가지표 : 창의도전성 및 기술성 등(40%), 사업성(60%)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

7-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3,50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1,935개사 중 1,50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008개사 중 1,67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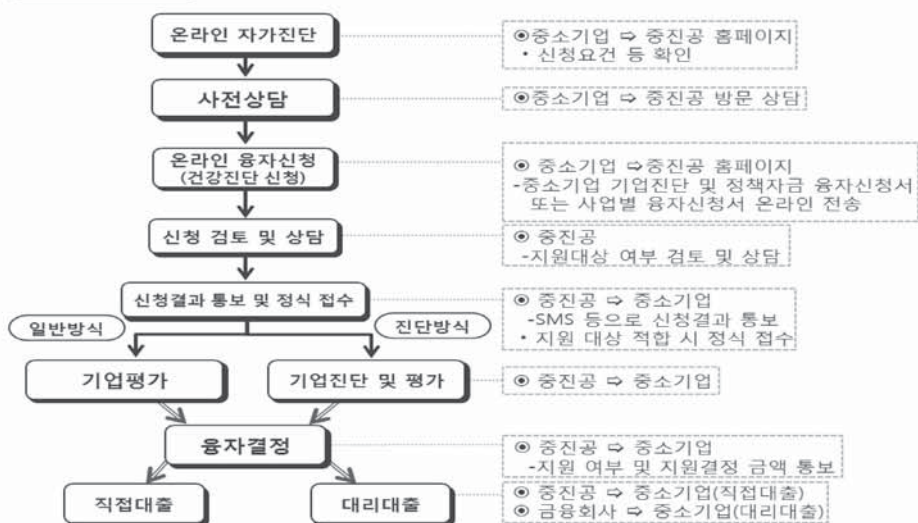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용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제출 서류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활용계획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7-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융·복합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905억원 (신규과제 194과제 계속과제 135과제)

* '15년 지원현황(신규) : 신청 456과제 중 158개 과제 선정지원, 과제당 평균 2.4억원

지원 대상

○ 융합전략과제

-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 현장기획과제

-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단, 농공상융합 유형의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신청방식
융합전략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지정공모
현장기획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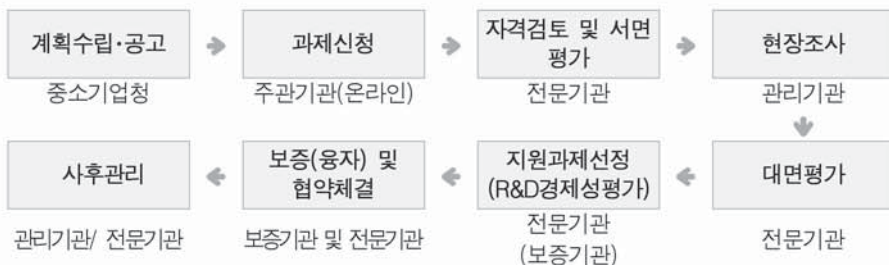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융합전략과제	1월	2월	3~4월	5월
현장기획과제 (과제기획/R&D지원)	1월* 1월(통합)**	1월 1월/7월	2~3월 2~3월/8~9월	4월 10월

-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현장기획과제 중 1월* 공고과제는 '15년 기획지원과제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되며, 1월(통합)** 공고과제는 '16년 과제기획지원과 R&D지원을 통합하는 공고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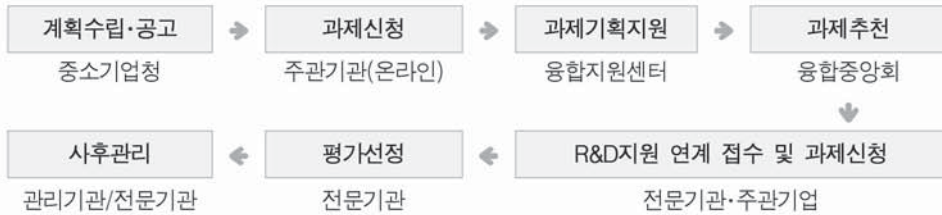
처리 절차

융합전략과제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현장기획과제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445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3/02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융·복합”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융합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현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융·복합은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5년 이내)에 상용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 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 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함.

* “융합”은 이중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복합”은 물리적 결합을 의미

7-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2,200개사(전체 예산 1,382억원)

- 첫걸음R&D : 1,040개, 460억원
- 도약R&D : 840개, 821억원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348개, 50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15년 지원현황 : 약 2,300개 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도약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이공계전문가 R&D 서포터즈 : 관련법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휴·폐업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공고문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 첫걸음R&D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R&D 지원
- 도약R&D : 혁신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R&D 지원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토록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구 분	항목	내용	정부지원 비율 (총사업비 기준)	정부지원 한도 (지원기간)	신청
첫걸음R&D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지원	75%	1억원 (1년)	2,6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지원	75%	2억원 (2년)	2,6월
도약R&D	도약과제	중소기업과 전국 대학·연구기관 공동 R&D 지원	75%	1억원 (1년)	2,6월
	연구마을	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에 이전 및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상시 기술협력 R&D 지원	75%	1억원 (1년)	4월
	산연전용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자체 비R&D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R&D 지원	75%	1.5억원 (1년)	4월
이공계 전문가 R&D 서포터즈	진단과제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 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100%	1백만원 (1개월)	1,3월
	해결과제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75%	2천만원 (4개월)	3,5,7월
	전담과제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 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75%	3천만원 (1년)	4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간 매칭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을 미리 선정하고, 연구인력·R&D 실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지(사전 매칭 후 신청 가능)
- 한국산학연합회가 전문기관에서 관리기관으로 변경되고 매칭전문기관으로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주관기관 매칭 애로 지원
- 이공계전문가 상주규정을 '매월 32시간', 참여기업 최종평가를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로 개선

신청·접수

첫걸음R&D, 도약과제 : 연 2회 (2, 6월),

연구마을, 산연전용 : 연 1회 (4월)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 : 과제별 연 1~3회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구마을, 산연전용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사업의 진단과제는 기술인정보시스템(techin.sanhak.net),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조사(참여자격, 기업경영현황 등), 주관기관 자체평가 및 대면평가(사업 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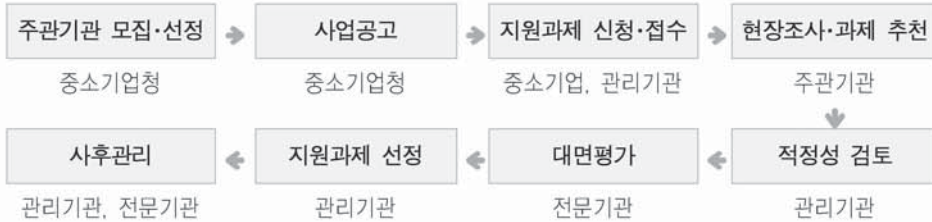
제출 서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기술인정보시스템(techin.sanhak.net)에 게재

처리 절차

- 첫걸음 R&D, 도약 R&D



* 관리기관(지방청, 한국산학연합회),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산학연사업) 042-481-4453/4458, (이공계사업) 4443/4460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A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중 직접비의 40%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와 연구마을사업은 50%이상 활용가능합니다.

Q 연구마을, 산연전용 사업에 참여하고 싶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연구마을, 산연전용 사업은 주관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선정된 주관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우리기업의 기술애로에 맞는 이공계전문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기술인정보시스템(techn.sanmak.net)에서 이공계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애로와 관련된 키워드(예, 표면처리)를 입력하면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드립니다.

7-11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R&D 역량 부족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지원 규모

644개사(전체 예산 378억원)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537개, 258억원)
-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57개, 57억원)
- ▷ 현장수요형 기술개발(50개, 50억)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
- ✓ 기타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537개, 25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뿌리기업 공정개선(57개, 57억원)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 현장수요형(50개, 50억) : 지역별·업종별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화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신설(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 과제선정 평가절차, 선정기준 등 개선
 - *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 우대가점 사항 변경

	2015년	2016년
가 점	○ 기업규모(2~5점) - 50인 미만 2점, 20인 미만 3점, 10인 미만 5점	○ 기업규모 가점(1~3점) - 50인 미만 1점, 20인 미만 2점, 10인 미만 3점 ○ 스마트 공장관련 과제 가점(2점)

*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월	1차 : 2월 2차 : 7월	1차 : 3~4월 2차 : 8~9월	1차 : 5~6월 2차 : 10~11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2월	1차 : 3월 2차 : 8월	1차 : 4~5월 2차 : 9~10월	1차 : 6~7월 2차 : 11~12월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5월	5월	6~7월	7~8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개발 참여의지, 기술개발능력,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 * 자세한 신청 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 참고

처리 절차



* 주관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및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기업여건 및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의 제품개선을 위한 R&D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조건)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이내, 총사업비의 75%
- (지원내용) 지역별 특화사업의 제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7-1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망) 간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23.5억원)

- 1단계(사전기획) 지원 : 6개, 1.8억원
- 2단계(R&D연계) 지원 : 7개, 20억원
 - * 2단계(R&D연계) 지원은 1단계(사전기획) 추진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 지원 컨소시엄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5년 지원현황 : 1단계(사전기획) 12개 컨소시엄, 2단계(R&D연계) 6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2개 이상)

- 주관기관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인 소 업종 중소·중견기업

- *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견기업(후보기업)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관계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협업승인기업, 성과공유제등록기업

지원 내용

- 중소-중견 공급망간 전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신성장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	5개월	30백만원(65%)
2단계 (R&D연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연구기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융합형 R&D 및 사업화 지원	2년	6억원(65%)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분	기존	변경
① 1단계 및 2단계 정부지원비율	75%	65%
② 1단계(사전기획) 정부지원금	65백만원	30백만원
③ 컨소시엄 구성시 협력사 참여	3개 이상 (주관1, 참여2)	3개 이상(주관1, 참여2) *주관이 중소기업일 경우 1개 이상
④ 컨소시엄 구성 지원(신규)	-	적합 기업(기관) 추천

신청·접수

'16. 1월 ~ '16. 4월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내용

- (사전기획) 컨소시엄의 사업추진의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 동반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참여기업의 참여의사확인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제8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158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62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166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170
8-5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73
8-6 남북협력기업지원	176

8-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역량강화 지원

R&D의 목표 설정,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5억원

- R&D기획지원(50억원) : 180개 과제

* '15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80개 중 204개 선정 지원(과제당 평균 22백만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5억원) : 약 800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기획지원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 혁신과제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를 보유한 중소기업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 중소기업 재직자 및 단체(단, 일부 업종은 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 원 이하의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R&D기획역량강화 교육(3일 이내)을 무료 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수행기간 및 지원 금액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
R&D기획지원	1년, 24~27백만원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70%~80% 이내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1년, 1백만원 (교육생 1인당)	중소기업 재직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획지원 우수과제를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에서 일부과제는 당해연도부터 연계지원
- 기획지원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15: 최대 24백만원 → '16: 최대 27백만원)
- 기획역량강화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한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월 中 공고 예정)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방법 : 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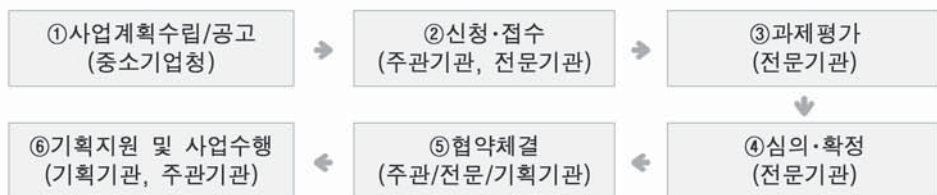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양식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 R&D기획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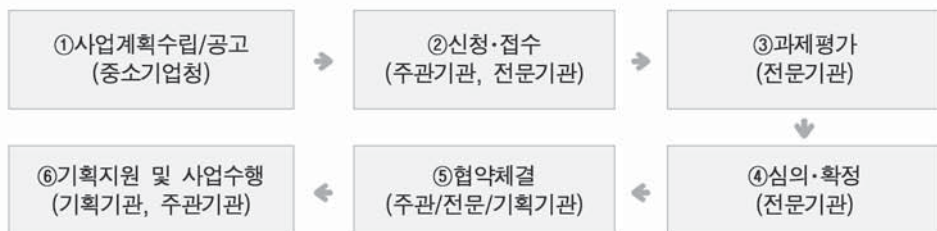


* (주관기관)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전문기관이 지정한 주관기관의 기획지원 전담수행 기관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



< R&D기획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2, 0218
-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연계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기획결과 우수한 과제 중 창업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로, 혁신과제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이나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Q**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A** R&D 기획, R&D관리,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R&D전단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며, 지역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지원됩니다.

→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1,370개사(전체 예산 187억원)

* '15년 지원현황(11월 현재) : 총 1,330개사 선정 지원, 업체당 평균 1.2백만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및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활용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구 분	대 상	지원 한도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기업	(정부지원금) 70% 이내 1년간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기업부담금) 30% 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기업	(정부지원금) 60% 이내 1년간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기업부담금) 40%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 분	2015년	2016년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신규 내역 사업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 * 정부지원금 한도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게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 미래부 ZEUS와 연계, 출연(연)을 장비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연)의 첨단·고급사양의 우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시 공동활용에 지원

신청·접수

-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 '16년 1월부터
- 참여기업 신청 : '1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예비신청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 :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선정
- 지정기관 : 지정기관의 참여자격·참여제한 여부 및 ZEUS 등록장비 제공여부 검토 후 선정

- 참여기업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실적, 장비이용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주관기관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비이용료 산출근거, 연구장비 멘토링 지원신청서 등
- 지정기관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제공 동의서, ZEUS 등록장비 현황 등
- 참여기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활용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게재된 사업관리 지침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0/0741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벤처



Q 바우처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A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바우처 코너에서 신청 → 바우처 승인(전문기관) → 가상계좌 발급 → 기업부담금 입금 → 바우처 발행 → 연구장비 이용가능

Q 필요한 연구장비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주관기관, 지역, 장비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이용하고자하는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연구장비검색

→ 용어설명

‘바우처’란?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쿠폰 형태의 증서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 규모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④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요건(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 '15.11.5)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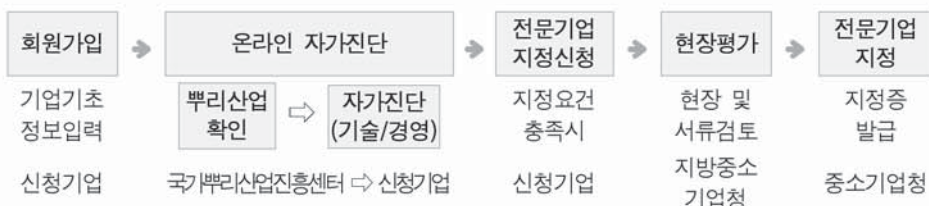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신청·접수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신청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규모

24억원

* '15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 390명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및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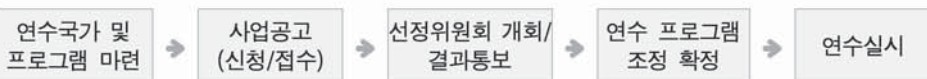
지원 내용

- 뿌리기술 선진국의 생산 노하우 벤치마킹, 생산관리기법 학습 및 기업 현장 실습을 위한 연수비 지원(정부지원 60%~100%)
 - ▷ (일본) 일본의 제품개발에서 구매-생산-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생산관리 기업 등의 모노주쿠리 교육 및 연수지원
 - ▷ (독일, 스위스 등) 뿌리 강국의 차별화된 뿌리산업 정책 및 기업 현장 방문, 관련단체, 박람회 참관 등의 연수지원

- 6대 뿌리산업의 26개 핵심공정별 코칭전문가(명장 등)의 기술노하우 전수 지원
(정부지원 100%, 10일 이내)

신청·접수

'16년 1월 공고 예정

신청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지원 규모**

40억원

* '15년 지원 : 20개사 지원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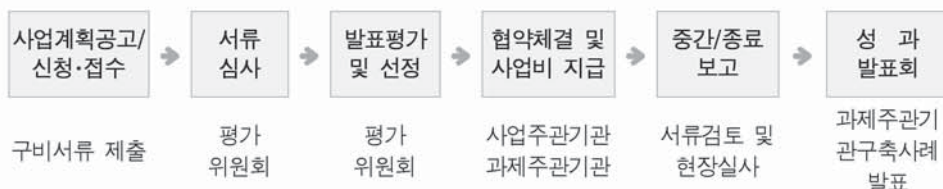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2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9개월 내외

신청·접수

- '16.1~2월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된 과제제안 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15년 12월 RFP 공고 예정)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신청

신청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 예산 17억원)

* '15년 지원현황 : '15년 품질혁신지도기업 519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 •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	업체당 20일 이내

품질혁신교육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	-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	-

신청·접수

'16. 1. 10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 우편 또는 팩스 (100-74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02-6050-3851~6, Fax 02-6050-3859
- 품질지도 예비진단 및 품질인증 현지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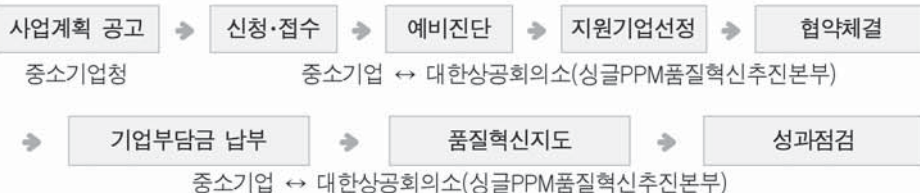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 품질인증제 운영은 싱글PPM 품질달성 여부 등 25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제출 서류

-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의 홈페이지 <http://sppm.korcham.net>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처리 절차

- 품질혁신지도사업



○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5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Q 품질혁신지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지도신청 후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기업으로 선정·협약 체결 후 입금
품질인증제 운영의 심사비 납부는 현지심사 2일전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용어설명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이란 : 제품 백만개 중 불량품이 10개 미만의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8-5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디자인 지원

미래시장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단의 新 시장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시장의 First-Mover로 혁신하여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7개사 (전체 예산 : 13억원)

* '15년 지원현황 : 7개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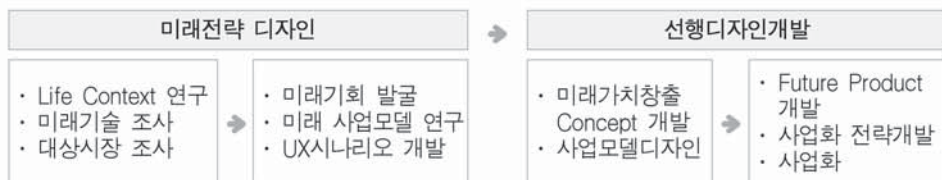
-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 ✓ 참여제한 및 제재기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우대가점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 WC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 내용

- 지원 산업분야에서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개발 지원



○ 세부내용 내역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기간	비고
미래전략 디자인	사업영역(기술, 지역, 시장 등)에 해당하는 2~3년 앞단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사업 설계	1억 이내 /4개월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65% 이내
	新 시장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비즈니스모델, 트렌드 선도 전략을 개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UX(User experience) 설계		
선행 디자인 개발	미래전략디자인 연구에서 도출된 Concept을 구체화 하는 미래 제품 디자인개발	1억 이내 /4개월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 전략모델을 개발		

* UX : UX(User experience)의 약어로 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 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함.

신청·접수 '16. 2월 공고 (예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통한 사업안내(신청서) 및 오프라인 접수(서류)
- 사전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내용

-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및 해당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디자인 융합 가능성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에 고지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4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비즈니스지원센터 : 070-4698-60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8-6

남북협력기업지원

| 북한 진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 지원

북한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현지 기업의 컨설팅, 주재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 컨설팅 : 40백만원
- 교육 및 워크숍 : 27백만원
- 연구회 및 홍보물 제작 : 15백만원

지원 대상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

- '15.11월 말 현재, 124개사
- '10.5.24 조치로 인하여 신규 대북 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북한에 기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 관계 호전시 지원 대상 확대 예상

지원 내용

- 개성 공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생산성향상 컨설팅 수행 (5개사)
기업당 8~12일, 컨설팅비용 90% 지원(450만원 한도)
- 경영 관리 분야의 전문 강사를 현지 파견하여 주재원 교육 실시 (총 16회, 무료)
- 개성공단의 현안공유, 발전과제 토론 등 개성 법인장 워크숍 개최 (연 1회)
- 개성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남북경협 연구회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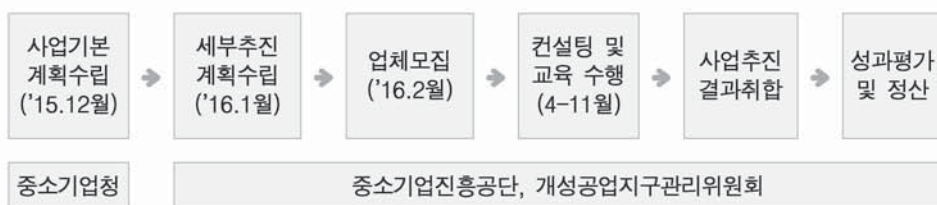
'16. 2. 1 ~ 10. 1

- 신청방법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남측 소재) 혹은 협력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개성현지 소재)에 신청서 제출(방문 혹은 팩스)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남북협력팀 : 055-751-974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제9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9-1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179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81
9-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83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190

9-1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I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

지원 규모

3개 협단체 내외('16년 예산 40억원)

* '15년 지원현황 : 14개 협단체 신청, 7개 협단체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 ~ '15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본솔루션)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 접속(www.smplatform.go.kr) → 회원가입 → 기본솔루션 활용

- (특화솔루션) 업종별 협단체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개 업종 내외

- ▷ 지원금액 : 정부지원 최대 2억원(개발비용 초과시 신청 협·단체 부담)
-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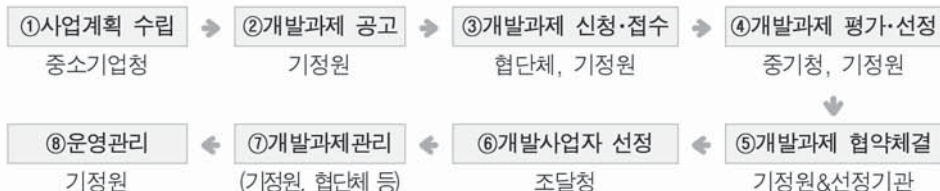
- ▷ '16.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경영혁신플랫폼 특화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4~2
- 경영혁신플랫폼 컨택센터 : 1644-173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중소기업 생산현장 정보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POP, MES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규모

170개사('16년 예산 99억원)

* '15년 지원현황 : 175개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신규/개선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²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선정 후 시스템구축범위 확정)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16. 1 ~ 2월중 (별도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0760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it.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9-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부터 기술유출 분쟁 해결까지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유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

지원 규모 3일 무료 상담 + 추가 7일까지 상담비용의 65% 지원

* '15년 지원현황(목표)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600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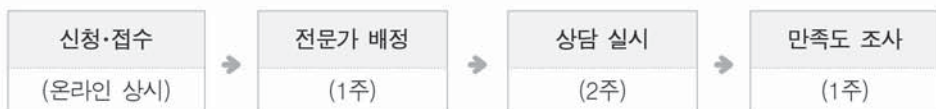
-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3일 사전진단·자문 무료)
 - ▷ 보안진단 :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요령 및 방안 코칭 (* 보안장비·시설, 서버진단 및 구축)
 - ▷ 보안기술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및 대응 지원
 - ▷ 법률상담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 신고·수사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발생 신고 및 수사 지원 (* 공정위 및 경찰청과 연계)
- 심화코칭 :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견시 심화코칭 제공
 - * 최대 10일까지 지원(비용의 65%, 최대 195만원)

신청·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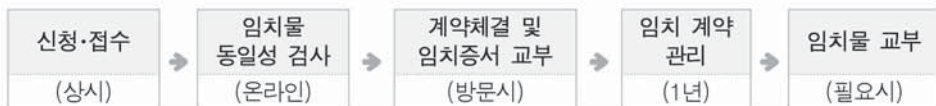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할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

신청·접수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온라인 상시 신청 및 방문 계약**제출 서류**

계약신청서, 임치물

임치 수수료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시 납부), 갱신 150,000원/년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 www.kescrow.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어떤 경우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좋은가요?

A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 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치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 추정 및 거래기업에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유흡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15년 지원현황 : 43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흡 피해기업 우대(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네트워크, 서버 및 PC·문서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단,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제외)

신청·접수

○ 기간 : '16. 1 ~ 2월중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0760

4. 기술지킴 서비스

지원 규모

무료

* '15년 지원현황 : 5,000개사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 통합보안장비가 구축된 경우 서비스가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요식업·학원·병원·유흥업소·금융 등 기술보유 여부와 무관한 업소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 24×365일 온라인상의 해킹시도 및 이상징후 분석·대응
 - ▷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365일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365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이상징후 분석·대응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필요없음),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신청·접수



보안장비 설치 및 소프트웨어 제공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monitor@kaits.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소요비용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0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15.11월말 기준) : 21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중재 위원의 조정·중재 수당
-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 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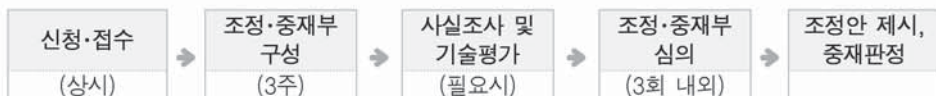
방문 또는 우편 신청(상시)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부터 3~5개월 소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4459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용어설명

조정 :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중재 :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경영혁신 노력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활용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제도 가입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이하 마일리지넷)을 통해 가입

적립 절차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경영혁신 교육 수료 또는 경영혁신 활동 수행을 통해 적립

○ 교육마일리지 적립

교육프로그램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마일리지넷 참조)



교육이수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활동마일리지 적립



유효 기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시점부터 3년간 활용 가능

지원 혜택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부지원 시책에 가점 등으로 활용

분야	우대사업	지원	분야	우대사업	지원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WC300 지원사업	가점	수출	수출역량강화, 무역촉진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가점
판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케팅 이노베이션 지원 제품홍보지원 구매상담회 지원 온라인판로 지원 공동 A/S센터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인력	휴먼에러제로화 (고속런기능전수체계) 산업기능요원제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금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료율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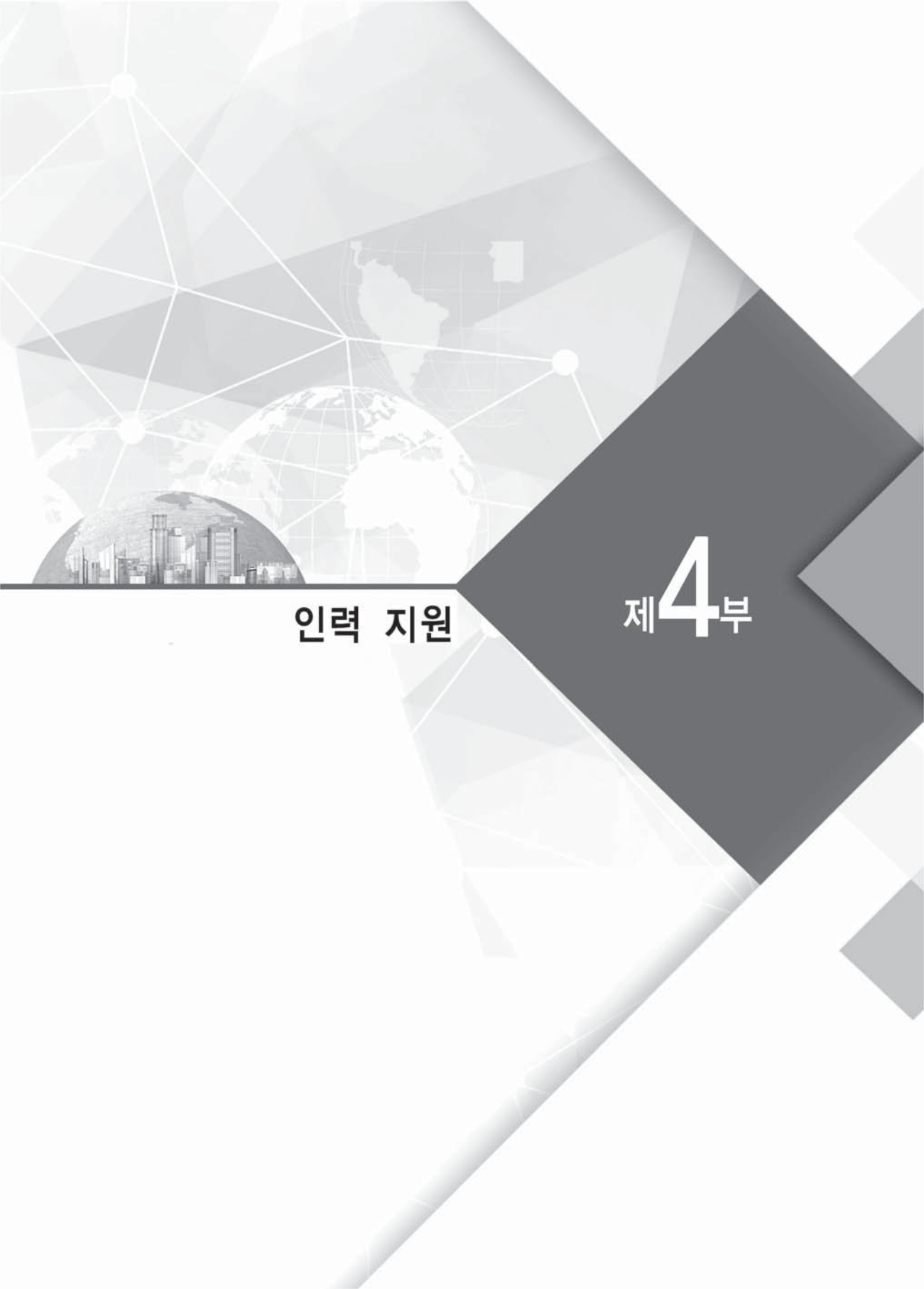
- 중소기업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전용정보사이트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mai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전환하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탈락할 경우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차감된 마일리지는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인력 지원

제4부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찾아드립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제 10 장 인력 양성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96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199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202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특성화고생 현장 맞춤형 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 연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수요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80개 특성화고 (전체 예산 306억원)

* '15년 지원현황 : 162개 특성화고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특성화고 : 제한 없음(단, 타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배제 또는 지원 제한)
- 학 생 : 특성화고생(1~3학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운영, 강사수당 등 인건비, 현장실습비, 1팀1기업 프로젝트, 취업맞춤반, 운영비 등
학 생	올바른 직업관 확립,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기 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20점 부여(산업기능요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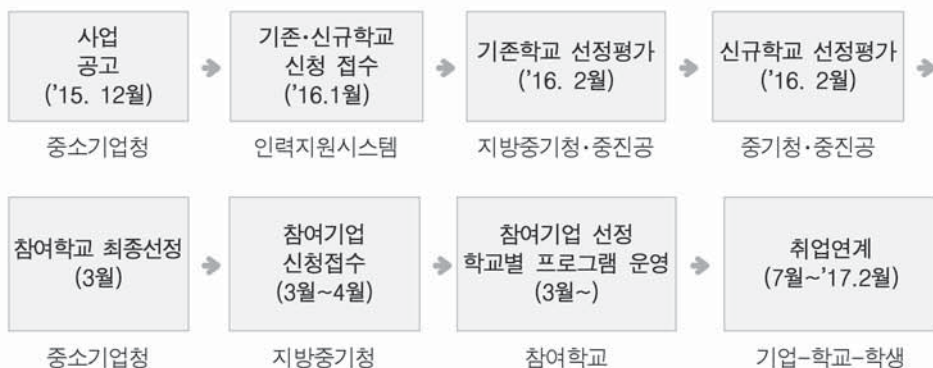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sanhakin.smba.go.kr)

제출 서류

- 특성화고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4539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65/9864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시스템(sanhakin.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특성화고에 학교별 특성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지원, 취업맞춤반 운영, 산업체 현장체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중소기업관, 건전한 직업의식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약 기업에 채용하는 취업맞춤반 운영은 무엇인지요?

A 취업맞춤반 운영은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3자/2자 협약(기업-학교-학생)을 통해 일련의 맞춤교육 프로세스 (기업의 요구 → 학교 직무분석 → 교육과정 개발 → 학생 맞춤교육) 완료 후 협약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기술·기능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5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혁신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7개 사업단(전체 예산 36억원)

* '15년 지원현황 : 17개 사업단 2,229명 교육

지원 대상

-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sanhakin.smba.go.kr)

- 신규신청 사업단은 특성화고-전문대 간 2:1이내의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7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학과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기술사관 개설 현황('15.12월 현재)>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염광여자메디텍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울산공고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대양전자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정보대학교	전자정보	금정전자공고, 부산디지털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경북공고, 대구서부공고
광주전남	청암대학교	신재생전자제어	순천공고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광양실업고, 여수공고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부천공고,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안성두원공고, 삼일공고, 시화공고, 김포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리라아트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한국영상대학교	3D입체영상제작	공주정보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천안상업고
충북	충청대학교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 충북공고
경남	창원문성대학	기계	창원공고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7개 사업단(전문대 17개 + 특성화고 33개)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산학맞춤 기술인재 양성·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 2), 28억원

* '15년 지원현황 : 15개 대학(전문대 13, 일반대 2), 30억원

지원 대상

- 대 학 :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학 생 :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예정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기업-대학-학생(졸업예정)’간 협약을 통해 맞춤교육, 현장실습, 1팀-1프로젝트 등 산학프로그램 비용 지원(대학당 2억원 내외)

구 분	내 용
산학맞춤교육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일반대 120시간) 내외 실시
현장실습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협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4주 이상) 후 취업연계 지원

1팀-1프로젝트	•기업-학생-교수'가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 타	•취업매칭,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sanhakin.smba.go.kr)

- 대학이 중소기업 협·단체(또는 중소기업)와 예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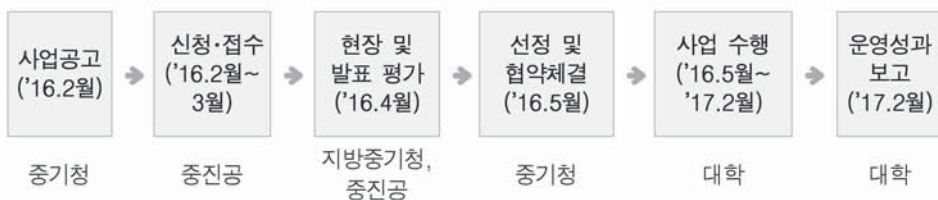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대상 대학 선별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6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는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 장

인력유입 촉진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206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11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14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17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의 학위취득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선취업-후진학 지원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 1,810명 지원(예산 104억원)

* '15년 지원 현황 : 전국 48개 학과를 운영하여 1,630명 지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을 약정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유의사항 등

- 학위과정 또는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학생(기업)

- ▷ 재직근로자 : 등록금의 6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5%는 근로자와 소속기업이 부담하되 소속기업이 반드시 그 중 50% 이상을 부담
- ▷ 채용예정자 :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

- 대학 : 강의료, 전담인력 인건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학과운영 경비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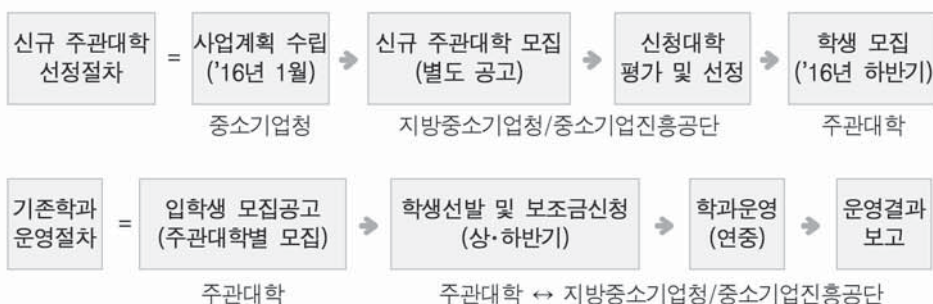
- 학생(기업)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재직 근로자 및 취업예정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개설·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직접 입학 신청
- 대 학 : 학과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별도 공고 시)

제출 서류

- 학생(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추천서 등
- 대 학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93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6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입학 대상자는 근로자와 취업예정자가 있는데 입학 자격과 지원내용이 다르나요?
- A** 근로자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금의 65%를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취업예정자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졸업 후 1년을, 취업예정자는 졸업 후 2년 이상을 해당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Q** 입학 후에 중간에 자퇴하거나 졸업 후에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그만 둘 수 있나요?
- A** 정당한 사유(해당기업의 경영악화, 도산 등 비자발적으로 이탈해야하는 경우)없이 이 중도에 이탈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위과정 도중에는 전액을, 의무근무 기간 중에는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반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현황 >

유 형	학 위	지 역	주 관 대 학	학 과 명
채용 조건형	석 사	서 울	상명대학교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경 기	성균관대학교	융합형기계설계학과
			한경대학교	IoT융합학과
		부산울산	부산대학교	수송기기하이테크소재부품과
			울산대학교	수송시스템공학과
		대구경북	계명대학교	전기전자융합시스템공학과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순천대학교	고분자·화학·화학공학과
		대전충남	한남대학교	무인시스템공학과
		경 남	경상대학교	지능형메카트로닉스학과
재교육형	박 사	강 원	강릉원주대학교	웰니스바이오산업학과
		서 울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
	석 사	경 남	경상대학교	기계융합공학과
		서 울	송실대학교	IT융합학과
		경 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단국대학교	글로벌 E-SCM학과
		부산울산	부산대학교	기계부품시스템학과
		대구경북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대전충남	충남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공주대학교	기전공학과
		경 남	경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충 북	충북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과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
		강 원	상지대학교	응용전자공학과
	학 사	부산울산	동아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경대학교	기계IT융합시스템공학과
		대구경북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
		광주전남	남부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목포대학교	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유 형	학 위	지 역	주 관 대 학	학 과 명
		대전충남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과
			순천향대학교	융합기계과
			대전대학교	IT소프트웨어공학과
			한밭대학교	생산경영공학과
		경 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
		강 원	관동대학교	미래융합학과
			한라대학교	의료IT융합학과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
		충 북	한국교통대학교	IT융합응용학과
			중원대학교	융합기계·전기전자부품공학과
		전 북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
		경 남	한국국제대학교	그린수송시스템학과
	전 문 학 사	부산울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과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학과
		광주전남	조선이공대학교	하이테크CAD/CAM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전기자동화학과
		경 기	두원공과대학교	융합비즈니스솔루션학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기계나노융합학과
		인 천	인천재능대학교	신소재표면처리학과
		강 원	상지영서대학교	의료IT융합학과
			한림성심대학교	지식산업융합학과
		충 북	충청대학교	ICT융합학과
		전 북	전주비전대학교	그린수송기계시스템학과
		경 남	미산대학교	전기신재생에너지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IT융합기계과

* 전남대학교(기계자동차공학과), 경상대학교(지능메카트로닉스학과), 울산대학교(수송시스템 공학과)는 '16년 가을학기부터 개설 및 운영 예정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공제사업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 공동적립 비율 = 핵심인력(1) : 사업주(2 이상)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이상 (1구좌=1만원)
- 공제 금리 : 1.61% (매년 변동)

가입 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납입금 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 핵심인력 :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 정부지원사업 우대 및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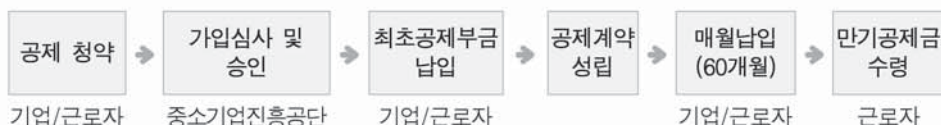
구분		연계지원 혜택
평가우대	한국형 히든챔피언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평가 시 공제가입기업에 최대 5점 우대가 점부여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선정 평가 시 공제가입기업에 5점 부여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공제가입기업에 최대 5점 우대점 부여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수출마케팅 인력에 대한 공제 납부금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보조금 사용 가능
	고성장기업(가젤형) 수출역량강 화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신규 채용하는 해외마케팅 인력에 대한 공제납입금으로 사용 가능 (인건비 포함하여 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민간 (기업·근로자) 등록금 부담을 10%p 경감
	중소기업 연수원 연수비 할인	공제가입 인력 연수비 30% 할인

신청·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539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2-6678-4264~7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벤처



Q 중소기업의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업의 1) 대표이사, 2) 최대주주, 3) 실질경영주에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납입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중소기업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①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
- ②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는 중소기업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다만, 핵심인력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전액 핵심인력에게 지급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채용 지원

인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6억원)

* ('14) 100개사, ('15) 15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기업홍보, 구인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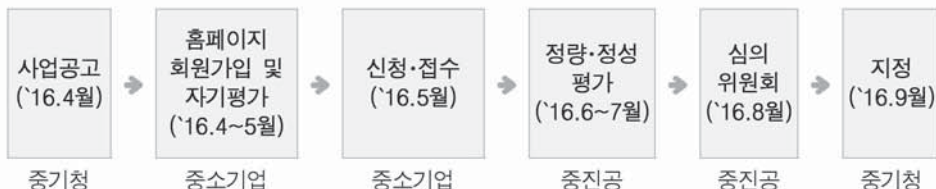
- 우수사례집 발간, 일간지·취업사이트 온라인 광고, 대학생 기자단 현장탐방기 등
- 중기청장 명의지정서/현판수여,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적용 제외
- 중기청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1점,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참여시 가점 5점 부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시 가점 1 또는 1.5점 부여,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신청시 우선 선발

신청·접수온라인으로 신청·접수(www.sme-hrd.or.kr)**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체계, 인재육성 노력 및 성과와 관련한 지표 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043-481-4369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055-751-9823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어떤 형태의 교육훈련이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교실 형태의 집체식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멘토링, 코칭, OJT, 자체 학습조직 등 무형식의 학습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 Q**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일반적인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핵심기술에 맞는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업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 A** 예, 있습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36개월)입니다.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800호 내외(주택공급주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5년 지원 현황 : 500호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유의사항 등

- 근무기간 산정 시 전 직장경력을 포함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닉,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취소

지원 내용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9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은 몇 번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한가요?

A 주택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이 되었더라도 사정상 주택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로 지원

제5부

전방위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벤처와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증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성능보증제도 사업설명 참조)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통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 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제 12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12-1 직접생산확인제도	224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226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228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230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32
12-6 공공구매론	235

12-1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업체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

('13) 19,888건, ('14) 23,959건, ('15.11) 21,545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유의사항 등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지원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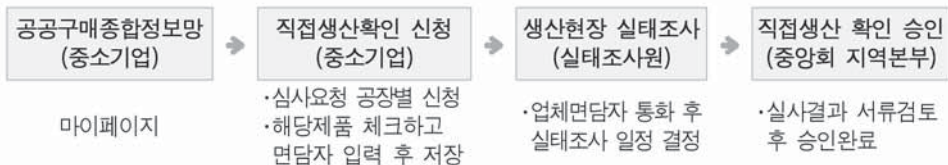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3.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4.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891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5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 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 10억원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비율로 평가
 -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 등급 30점)으로 평가
 - *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의 경우 신용등급평가를 면제하고 만점으로 평가
 - * 신용등급평가(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3~-2), 결격사유(-30) 심사항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30점으로 평가

제출 서류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2.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3.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4.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1천만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적격조합('15.11) 143개 조합, 243개 제품

확인 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의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 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접수(수시)
 -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 * 주요확인 내용 : 직접생산확인 조합원사 비율, 조합의 시장점유율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품목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
(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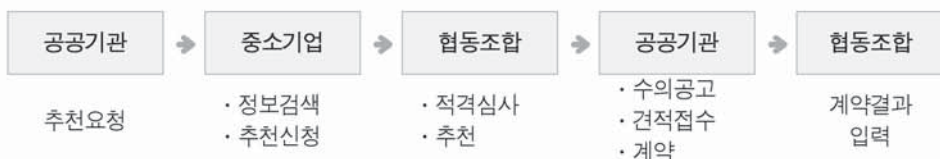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6.1.1~'18.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6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

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 서식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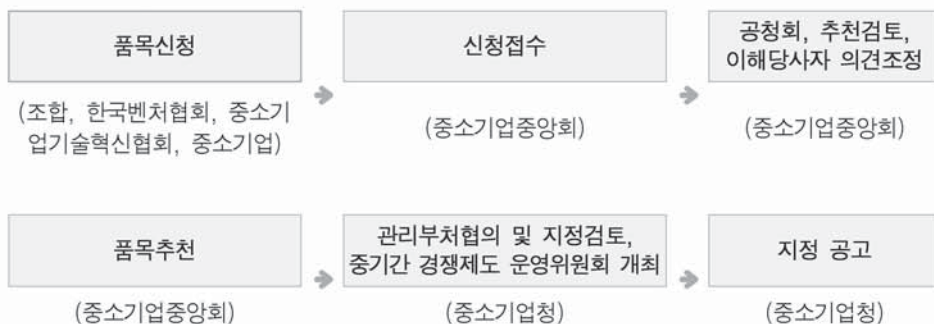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제출 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 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6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공공구매론 대출실적 : ('12)1,014억원, ('13)1,064억원,
('14)1,341억원, ('15.11)1,39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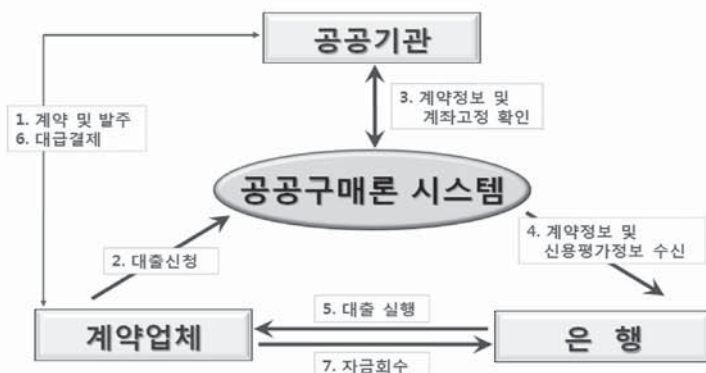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신용대출
-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온라인(www.smploan.com 접속)으로 신청

처리 절차



문 의 처

- 공공구매론 운영(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545~2546, 2492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6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13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8

13-2 성능인증제도

241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등 13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12) 2.11조원, ('13) 2.54조원, ('14) 2.6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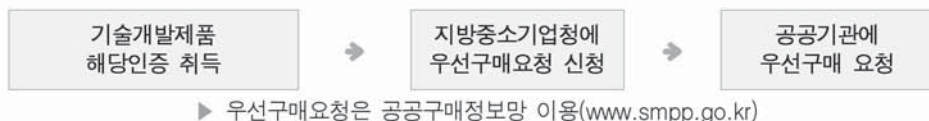
지원 대상

- NET·NEP(기술표준원), GS(미래부),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조달청), 성능인증·구매조건부 R&D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녹색인증 제품(녹색인증 사무국),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 성공제품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제품 등 8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 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처리 절차



문의처

○ 관할지역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9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울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41
대구·경북	053-659-2233	충북	043-230-5370
광주·전남	062-360-9141	전북	063-210-6481
경기	031-201-6934	경남	055-268-2543
인천	032-450-1134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기술표준원	043-870-5502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525
NET(교통신기술) NET(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기술정책과)	044-201-3818 /044-201-3555	NET (환경신기술)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044-201-6672
NET(보건신기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6	NET(방재신기술)	국민 안전처 (재난안전 산업과)	02-2100-0465
NET(전력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3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GS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4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A**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 A**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우수조달물품
-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 Q** 녹색인증대상제품
-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써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13-2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

지원 규모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13) 1,127건, ('14) 966건,
('15.11) 1,354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인증대상 품목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21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신청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 직접 작성
-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 성능인증신청서에 첨부

처리 절차



*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 처리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소 속	연 락 처	소 속	연 락 처
서울	02-2110-6322	대전·충남	042-865-6156
부산·울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2
대구·경북	053-659-2506	충북	043-230-5334
광주·전남	062-360-9160	전북	063-210-6441
경기	031-201-6974	경남	055-268-2564
인천	032-450-1175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14장

마케팅, 홍보 지원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244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247
14-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250
14-4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252
14-5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254
14-6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256
14-7 온라인 시장진출	258
14-8 유통망 개척지원	261
14-9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63
14-10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266

14-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 혁신제품의 판로·유통시장 진출 촉진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반응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의 마케팅 역량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개 제품(전체 예산 29.6억원)

* '15년 지원현황 : 500개 제품(시장성조사 500개, 마케팅전략수립 250개, 제품개선 57개)

지원 대상

- 창업, R&D 등 정부지원 소비재 완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상품 등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완제품
 - * 성능인증, 우수조달, NET·NEP 인증제품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서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15개 제품군
 - * 생활용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건강보조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뷰티용품, 가공식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

지원 내용

- (시장성 조사)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응조사(500개 제품)
 - ▷ 시장성 조사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신청 시 가점 부여

- * 창업·R&D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100%부담
-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문 기관 및 상품기획자(MD) 등의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250개 제품)
 - ▷ 마케팅전략수립 업체는 다른 마케팅지원사업 참가자격 부여
 - * 보조금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 (제품개선)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50개 제품)
 - * 보조금 지원한도 : 14백만원 이내(매칭비율 : 정부 70%, 업체 부담금 3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대상 제품군 확대
 - * ('14년) 14개 제품군 → ('15년) 15개 제품군(가공식품군 추가)

신청·접수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평가 및 선정방법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확약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임가공계약서), 제품 설명서, 각종 제품 관련 증명서

처리 절차

지원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18, 9317, 9314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83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국내 생산된(혹은 국내OEM)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비재 완제품이어야 하며 중간재, 1차식품, 수입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Q 식품도 지원 가능한가요?

A 1차 농·수산물만은 지원 불가하고 2차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품제조 허가나 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냉장(냉동)식품이거나 일정기간 이상 상온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으로 정부공인 인증(HACCP 등)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공식품군 : 과자류, 면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건과류

* 가공식품 추가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고대장, 품목제조신고대장, 정부 공인 품질 인증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 결과 서류

Q 각 단계별 사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1단계 시장성 조사는 대면평가에서 선정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나, 2단계 마케팅전략수립과 3단계 제품개선은 별도의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14-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홍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개척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828제품(전체 예산 22.5억원)

* '15년 지원현황 : 언론매체 682제품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정보통신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산업재

지원 내용

- (방송매체) 공중파, 케이블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독되는 '생활속 아이디어 혁신제품' 집중홍보(70회, 170개 제품)
 - ▷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홍보효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
- (인쇄매체)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등에 이야기 방식, 주제별 구성 등 기획 홍보 (208회, 408개 제품)
- (뉴미디어)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노출 빈도 확대(250개 제품)
 - ▷ TV방송 채널 홍보시 업체부담금 납부, 그 외 매체는 무료 홍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16년 기준으로 '참여횟수 제한제' 도입
 - ▷ 기업당 참여횟수를 총 2회(2년)까지로 제한, 3회 이상 참여 금지

- 홍보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참여기업에 3개 매체를 패키지 지원
 - ▷ 단, 방송사의 심의기준에 따라 방송홍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해당 매체 홍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
- 방송홍보 정부 보조율 90 → 80%로 인하(참여기업 부담율 : 20%)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월 1회 제품심사·선정 진행)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신청 서류

홍보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사진 2매, 제품 설명서, 품질인증서 등 기재내용 증빙서류(보유기업에 한함)

처리 절차

- 언론매체 홍보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6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98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매



Q 사업에 선정 또는 연계가 되면 모든 매체에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되면, 9개의 홍보 매체 중에서 3개 매체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매체별 각 1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매체가 자사의 홍보 특성, 관련 법령 등을 기반으로 참여제품 중에서 홍보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체별 운영일정에 따라, 1주일 ~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Q 홍보지원사업이란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A 일반 제품 광고와 같이 전문적인 광고를 대행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코너를 활용하여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을 무료(방송은 일부 유료)로 소개해 드립니다.

Q 참여업체가 희망하는 특정매체에 제품홍보가 가능한가요?

A 홍보매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약정을 맺은 매체(고정매체)를 통해서만 홍보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매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홍보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매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제공하는 업체를 기반으로 각 매체의 홍보 특성에 맞게 제품을 최종 선택하여 홍보를 진행하게 되며 고정매체 중에서 참여업체가 홍보를 희망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14-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아이디어 혁신제품 판매장 입점 판촉·홍보

유통채널 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쇼핑 정책매장)을 운영하여 창업·혁신기업이 사업화한 창조혁신제품의 시장 검증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900업체 아임쇼핑 매장 입점(예산 30.6억원)

* '15년 지원현황 : 1,800업체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업·혁신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 * 유통기한 : 판매시점기준 3개월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제품, 1차식품 등 제외
 -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 ✓ 매장별 취급 제한 품목은 해당 매장 입점 제한
 - * (면세점) OEM표기제품, (하나로) 식품, (휴게소) 차량용품 및 디지털 제품 일부

입점상품 선정시 우대

- 행복한백화점 아임쇼핑(4층) 입점 상품
- 공영홈쇼핑 방송(예정) 상품 및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 완료기업
-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신기술·신제품

지원 내용

-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매장 운영하며전시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판촉·홍보
-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판매행사 등을 통해 유통망 진출 및 판매성과 제고

신청·접수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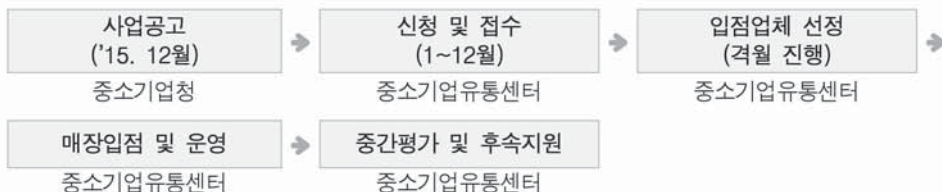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적합성, 상품성, 마케팅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점제품 선정

처리 절차

- 신청업체 입점 선정위원회 : 격월 선정(필요 시 수시 개최)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99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입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선정된 업체는 해당 판매장 담당자가 유선 또는 E-MAIL을 통해 입점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매장입점에 대한 일정(상품입고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4-4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홍보 지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홍보를 추진할 경우 개발비 및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8개 브랜드(전체 예산 9.6억원)

* '15 지원현황 : 18개 상표

지원 대상

- (공동상표 개발·홍보) 공동상표를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조합, 협회, 개별 중소기업 등)
 -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에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지원 내용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을 위해 네이밍 개발·홍보 지원
 -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공동브랜드 홍보)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지원
 -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공동브랜드 해외홍보) 수출역량을 갖춘 우수 브랜드를 선별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브랜드 현지화 홍보지원
 -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브랜드지원사업 참여횟수를 5회로 제한

신청·접수

2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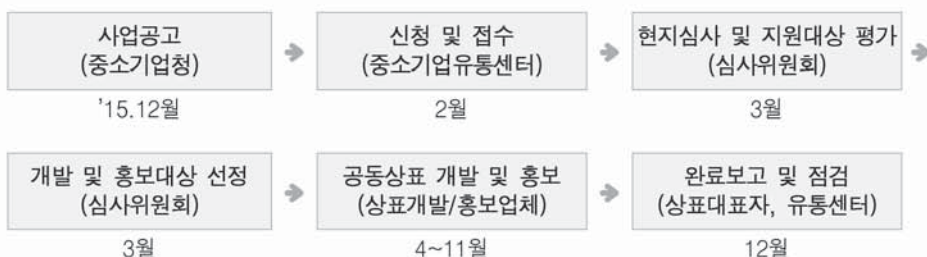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신청 서류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처리 절차

- 지원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3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5

중소기업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 중소기업의 구매상담회·판매전 개최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가 국내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체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판매전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 행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2회(전체 예산 11.4억원/ 구매상담회 14회, 판매전 18회)

* '15년 지원현황 : 구매상담회 22회, 판매전 18회

지원 대상

- 상담회·판매전 참여업체 :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망에 입점 가능한 품목에 한함
- 상담회 개최단체 : 협동조합,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구매상담회 비용을 지원받는 주관단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14회)
 - * 단체별 20백만원 이내 지원(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바이어 초청비 등 소요경비의 70%이내)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지원(18회)
 - * 단체별 10백만원 이내 지원(판매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 등 소요경비의 80% 이내)
- 판로지원종합대전 : '16. 6. 2 ~ 4일 약 200개 부스 운영
 - * 판로유공자 포장, 제품전시회, 구매상담회, 제품 품평회

신청·접수

사업공고 후 상담회·판매전 접수(2월) 및 판로지원종합대전 (2~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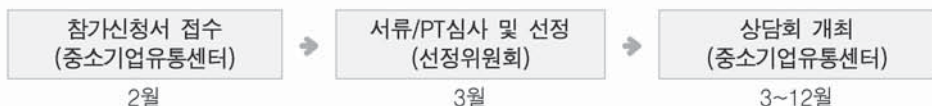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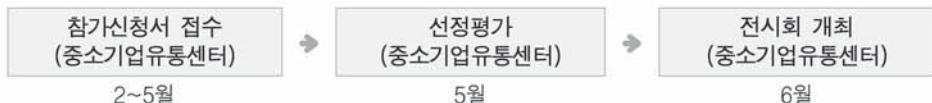
- 구매상담회 : 지원신청서,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특별판매전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판매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판로지원종합대전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가비영수증, 전시품목 목록 및 상품소개서, 판로지원종합대전 참가규정(날인)

처리 절차

- 구매상담회(판매전)



- 판로지원종합대전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1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6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소기업과 국내외 유통채널(MD)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5,000제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및 국내 제조 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 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화) 창업·혁신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등록정보를 유통MD가 상품성, 시장성 검증 후 DB화
- (상품정보 제공) 국내외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접수

수시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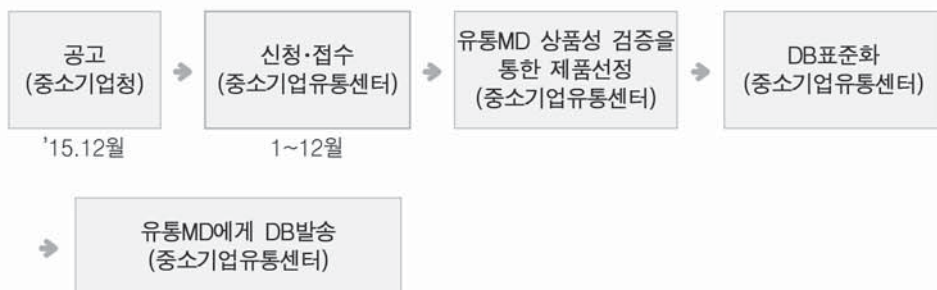
심사·평가 내용

- 상품성, 가격경쟁력, 품질 등을 종합평가하여 혁신제품 선정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413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83/ 4398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7 온라인 시장진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쇼핑물 입점에 필요한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인프라 조성
과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들을 모아 판매기획전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상세페이지·홍보영상 1,100제품, 온라인 판매기획전 51회,
TV홈쇼핑 무료방송 80제품(전체 예산 25.9억원)

* '15년 지원현황 : 판매기획전 19회, 상세페이지·홍보영상 3,162제품, 홈쇼핑방송 60제품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일반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 * 국내 제조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 유통기업(도·소매업)도 가능
-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등 온라인 판매 부적합 제품

지원 내용

-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 종합몰 등 온라인 쇼핑물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무료제작 지원(1,000개 제품)
-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
무료제작 지원(100개 제품)

- (온라인 판매기획전)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기획전 개최(51회)
 - * 판매기획전 참여제품은 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 '혁신제품DB' Pool에서 유통MD가 선별하여 판촉홍보
- (포털사이트 광고)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 광고·홍보
- (TV홈쇼핑) TV홈쇼핑 4개사(CJ, GS, 롯데, 현대)와 협력하여 무료 방송지원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 언론매체 홍보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66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83/4398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 자체가 없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은 제품 이미지 촬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별도로 없어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제품 홍보동영상 외에 회사 홍보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가요?
- A**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통해 판매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를 홍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4-8

유통망 개척지원

|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판매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대형유통망 내 판매기획전을 개최하여 판촉·홍보 및 시장검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오프라인 판매기획전 10회(전체 예산 7.7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및 국내 제조 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판매기획전) 대형유통망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상품기획하고 이를 해당 유통망內 편집매장 방식으로 판매홍보
 - * 전문기관 : 혁신제품 DB를 활용, 계절·테마별 상품기획 제안
 - * 유통망 : 전문기관이 상품기획 제안을 보완하여 판매·홍보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우수제품은 해당 유통망 입점기회 부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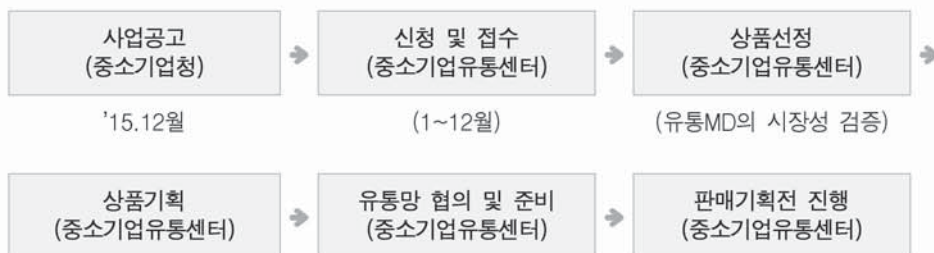
수시 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드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583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83 / 439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9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A/S콜센터와 전국적 지점망을 활용한 상담·처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83업체(전체 예산 83.8억원)

지원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 참여가능 제품군(14개)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제도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지원 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각종 A/S 인식개선 등 핵심직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콜센터로 축적된 정보(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를 D/B화하여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A/S센터 콜센터 서비스 지원품질 향상 및 내실화 운영
 - * 참여기업별 사전프로세스 분석, 기업별 적정 서비스 제공 등
- 졸업기업에 대한 자체 A/S기반 구축지원
 - * A/S전문가 멘토링지원, CS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자립기반 강화
- A/S지원 대상제품군 확대(13개 → 14개, 생활용품군 추가)

신청·접수

수시 (지원가능 범위내)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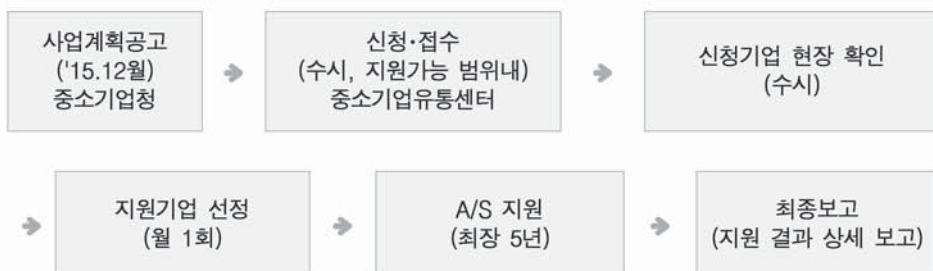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기업 기본 운영실태, 기업 A/S 역량, 참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다로그, 기타 인증 등

* 신청양식은 아임스타즈 시스템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98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82, 9383, 9386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4-10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소모성자재 납품기업(MRO)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납품업지원센터로써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 MRO몰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350개사(전체 예산 6.4억원)

* '14년 지원현황 : 300개사 지원, 6억원 판로개척 지원(간접지원 : 입찰정보제공 32억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중소기업 구매대행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 대행업자

지원 내용

- 실태조사, 마케팅 지원(MRO교육, 홍보지원, 입찰정보 제공 등) 및 판로 지원 (공동MRO몰 시스템, 입찰대행서비스, 물류지원 등)을 통한 입체적 중소기업 납품업체 지원 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실태조사 주요 조사사항 - 소모성자재 납품업 시장환경 및 현황조사 - MRO몰 시스템 운영현황 조사 -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정책 구상 -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	

홍보지원	• 종합지원센터 및 우수중소납품업체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기회 제공 • 주요 홍보사업 -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 주요 언론매체 홍보 - 기타 중소기업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정보지원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 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	300개 업체
전문교육	• MRO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교육내용 - 입찰참여방법, 구매대행 효율화, 물류처리 및 MRO관련 법규, 판로개척 전략, 시장진출 필요역량 등	회당 선착순 35개업체
상담 및 기타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체 애로상담, 법률자문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 등 다양한 상담과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체 지원	
공동MRO물	• 공동 MRO물 시스템내 중소기업체 Pool 등록을 통한 신규 중소기업체 발굴로 다수의 중소기업체에게 고른 판로기회 제공	

신청·접수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 절차



- * 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869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31, 9329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납품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납품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Q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A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수출 지원

제6부

수출 첫걸음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부와 함께 알아보는 수출지원



- Q** 국내시장의 포화 및 FTA체결로 기회가 확대된 시장을 진출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싶은데 지원사업은 없나요?
- A**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방식에 따라 두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어 개별전시회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업종별 단체전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참여하시면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설명 참조)
- Q**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가 이슈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FTA 활용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정보나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 A** FTA 대응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면 FTA 교육 및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FTA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인증획득 등 FTA 활용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FTA대응역량 강화사업 설명 참조)
- Q** 수출 300만달러 정도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데 직접 지원사업은 없나요?
- A**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이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수출역량강화의 수출고도화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조사, 해외시장 특화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각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3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설명 참조)
- Q** 고요을 전기장판 업체입니다, 국내시장의 포화 및 중국저가제품의 진입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A**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거나, 대형 유통기업의 해외지사를 활용한 수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국가를 찾으실 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진출 방식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설명 참조)

Q 의료가기를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가인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 후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이번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A 해외 현지에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현지에서 저렴한 사무실을 제공받아 해외지사 설립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147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시면 해외현지 컨설팅전문가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설명 참조)

Q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요?

A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도와드리며, 소요비용의 40~7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한도는 북미·유럽·중국 2,000만원, 동서남아 등 기타 지역이 1,700만원입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설명 참조)

Q 이번에 SASO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A 신규로 획득하려고 하는 규격인증만 지원하므로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갱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규획득의 경우에도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전에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 참조)

Q X선 제너레이터 개발 기업입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용량(kw)별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A, B, C 각 모델별에 대해 동일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내용 중 A, B, C 모델 각각에 대하여 테스트와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2개 인증만 신청 가능하며, 전자와 다르게 A, B, C 모델이 시리즈 모델로 인증서를 하나로 발급 받으려면 1개 인증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 참조)



제 15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74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79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283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88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92
15-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94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298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00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305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308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14
15-12 수출금융융자	316
15-13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319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전체 예산 230억원)

- 수출기업화 : 700개사, 130억원
- 수출고도화 : 300개사, 1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 ✓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우선선정 (수출기업화 사업에 한정)

- 전년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우수기업” 으로 평가된 기업

지원 내용

- 수출준비활동, 수출마케팅활동, 기타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제공하며,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 수출기업화 세부사업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
수출 준비활동	(온라인 무역교육) 무역실무 기초·심화, 국제무역 전문가,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양성,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비 즈니스 영어	2,100만원 70%
	(홍보·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외국어 디자인 한정)	
	(조사서비스) 해외시장조사,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	
	(대행)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수출 마케팅활동	(오프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자율참가, 무역전문지 광고, 국제 공중파 광고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기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 수출고도화 세부사업

구 분	내 용	정부지원 한도
수출 준비활동	(홍보·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디자인 한정)	3,500만원 70%
	(신규거래선 발굴) 시장조사, 바이어 신용조사,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 수출을 위한 회계·법률자문 등	
수출 마케팅활동	(오프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자율참가, 국제 공중파 광고, 자율 마케팅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기타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내일채움공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글로벌 역량진단지표 개선 : (기존) 초보, 유망, 글로벌 동일지표 적용 → (개선) 수출기업화·수출고도화 전용 글로벌 역량평가 도입
 - * 수출기업화(100만불 미만), 수출고도화(100~500만불), 글로벌 강소(500~5,000만불)
- 수행사 자율로 가격표기하는 방식에서 각 사업별 한도를 명시하여 가격투명성 제고
- 수출유망기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용, 자율마케팅프로그램 신설

신청·접수

'15.12 ~ '16.1월(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글로벌 역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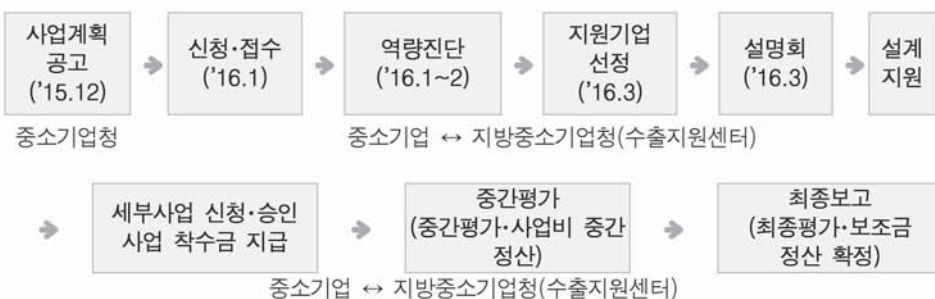
- 수출 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수출기업화는 25개, 수출고도화는 27개 항목으로 구성 (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 : 13809)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6 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 : 16705)
경기북부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9032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우 : 11497)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 : 21632)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2 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 : 24427)
부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5161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 : 48060)
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83-0184 018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 : 44248)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4 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 : 42724)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 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 : 51439)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 : 34111)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537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 : 28119)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 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 : 61928)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 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 : 54966)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우 : 63217)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80 9781	http://exportcenter.go.kr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80)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3980, 8928)

궁금해요! 중기맨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발굴육성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 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15년 글로벌강소기업과 지역강소기업 통합운영)

지원 규모 120개사

* '15년 지원현황 : 지역강소기업 7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지원

지원 대상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 ▷ (기업규모) 매출액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 (글로벌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
- ▷ (기술혁신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우대사항

-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유턴기업 등에 우대

지원 내용

-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 비	R&D	▶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지원	▶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해외 마케팅	▶ 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 방 비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①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IP전략수립 의무지원

②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3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브랜드 개발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소요금액의 50% 이내, 50백만원 한도	
3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4	해외전시회 참가	소요금액의 50% 이내, 20백만원 한도	기업 자체
5	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소요금액의 60% 이내, 50백만원 한도	
6	해외세일즈랩	소요금액의 70% 이내, 60백만원 한도	KOTRA
7	수출 IP전략수립	소요금액의 70% 이내, 50백만원 한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①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우선선정	2천만원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가점(2점) 부여	인증비용의 40~90% 지원
3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등 감안 우선입주	임대료지원 1년차 80%
4	• 온라인 수출지원	우선선정	사업별 상이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6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신한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세일즈랩, 수출품목 IP전략수립 등 신규프로그램 및 광역사도의 참여로 지자체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신청·접수

'16. 2월중 공고 예정

- 신청·접수 :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공고 및 신청·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후 사업신청서 소재지 관할 광역사도에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 공고상에 게재

처리 절차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 확정

시행 계획 공고	I 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II 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중앙에 사업 신청	신청 접수	중앙평가	지원 기업 확정
	'16.2월	~'16.3월	~'16.4월	~'16.4월	'16.5월	'16.5월
중소 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 기업청	

*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위원회 :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44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351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전문기관) : 042-388-0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5-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 FTA·수출컨설팅, 교육,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FTA·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CEO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FTA 체결지역에 현지마케팅(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FTA·수출컨설팅

지원 규모 950개사

지원 대상

- FTA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FTA컨설팅	수출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등

-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부과

* 20억원 이하 : 무료, 20억 초과~50억 이하 : 10%, 50억 초과~500억 이하 : 20%, 500억 초과~1,500억원 이하 : 30%, 1,500억원 초과 : 40%

신청·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2) FTA교육

지원 분야 9,000명(2015년 기준)

구 분		2016년	
대상	내용	인원(명)	수행기관
CEO	FTA활용 전략수립 프로그램	500	중진공
실무자	원산지 특화교육	1,200	관세법인
	지역별·업종별 특화 교육	5300	지방청
	수출모기업·협력업체 합동 교육	600	중진공
	한중FTA 활용	1,000	중진공
	TPP 등 메가FTA 대응	400	관세법인
계		9,000	

교육 내용

- (CEO 교육) 활용 FTA 마인드 제고 및 FTA활용 전략 수립 프로그램 운영
- (원산지 특화 교육) 관세법인과 상시 FTA교육계약을 체결하여 권역별로 주기적, 상시적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역별 맞춤형 교육) 각 지역의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FTA원산지 실무, FTA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
- (수출모기업·협력업체 합동 교육) FTA관련 원산지확인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협력사를 위해 수출 모기업과의 원산지 관리 등 합동교육 실시
- (한중FTA 활용)한·중FTA 활용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실무교육 실시
- (TPP 등 MEGA FTA 대응)참여가 예상되는 TPP·RCEP 등 MEGA FTA에 대한 현황 등 교육 지원으로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 042-481-4470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4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3)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지원 규모 20개사, 업체당 25백만원 한도

- * 기업 부담금 : 전년도 매출액 500억 미만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20%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진행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기업 및 대표자)
-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무역업 등),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우대 지원

- 고용창출 100대기업(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공동브랜드(Co-branding) 사업
 - ▷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미국(FTA체결국) 기업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포장, 브로슈어, 홈페이지, 명함 등에 제휴형 브랜드를 병기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타진
- 글로벌 기술사업화 사업
 -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미국 기업과 기술정보 교류, 합작·투자·제조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타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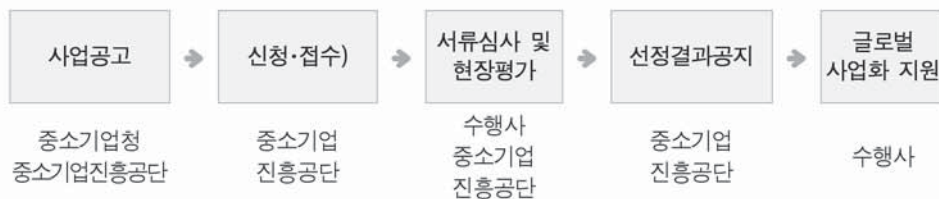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exportcenter.go.kr), 중진공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선정(서류 및 현장실사)

제출 서류

-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지원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2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지원유관 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4년 선정현황 : (상반기) 478개사 선정, (하반기) 415개사 선정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 기술성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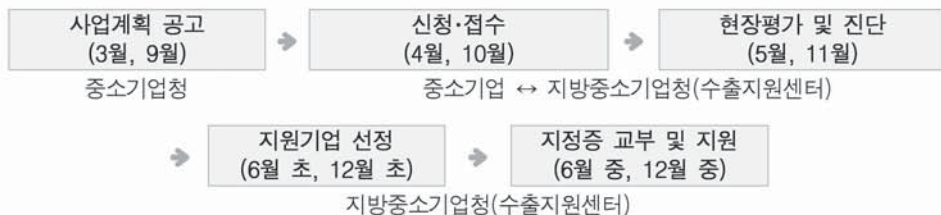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 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을 받으며,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으며, 국방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우선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A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2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1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종 사업참여 및 지정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을 37개에서 40개로 추가하고(붙임1 참조), 평가지표도 개선하였습니다.

[붙임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업종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항량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15-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200개사 내외

* '15년 지원현황 : 전시회 162회, 수출컨소시엄 38회 등 총 18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 2단계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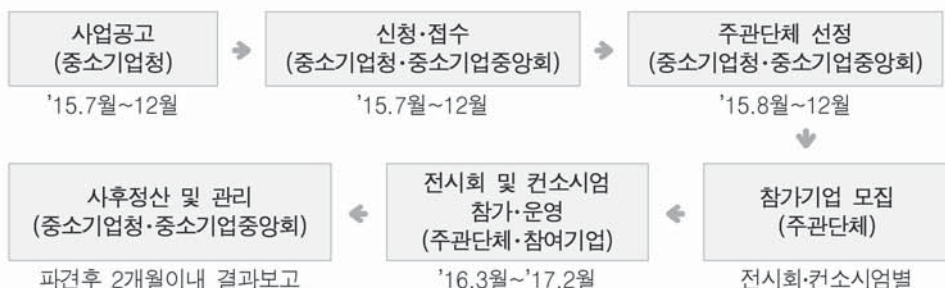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주관단체)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81~4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Q**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A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지원 규모

400개사 내외,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의 50%이내(대기업 공간지원제외)
- 수출상담회 : 장소·차량임차, 통역, 해외마케팅 활동 등의 80%이내
(세부지원내용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동일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

- 수주활동 등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정부 등과의 전시 및 상담회
-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상담회
- 한류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 대기업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활용

지원 규모 600 개사,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해외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지원 내용

- 거점활용지원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기 진출하여 구축한 현지거점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현지 사무, 전시, 물류, 판촉공간 등 지원
 - * '15년 한국전력공사 상설전시장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오픈 운영 중
 -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 * '16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동반진출 계획 선정 후 참여중소기업 모집예정 ('16.2~)
- 해외유통망 입점지원 :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등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해외유통망에 중기제품 입점지원 (임대료, 판촉 및 업체선정, 마케팅비용 및 기타 운영비)
 - * 국내 TV홈쇼핑사가 협력하는 해외 12개국 25개 홈쇼핑 채널에 방송지원('13~)
 - * '15년 롯데백화점 중국(천진점, 청두점) 內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전 운영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주요분야		지원기준
방송 전	제품 방송준비	제품현지화 및 1:1 디자인컨설팅, 홈쇼핑 인서트 동영상 제작	25백만원한도 (총 사업비 60%이내)
홈쇼핑 방송	해외홈쇼핑 방송	방송 편성	선정기업 중 현지방송 적합제품
사후마케팅	온라인 및 카다로그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홈쇼핑사 자체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 제품수출을 위한 현지화비용 지원(현지소비자 및 문화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기능개선, 포장, 설명서 제작 등을 의미)

신청·접수

'16. 1월~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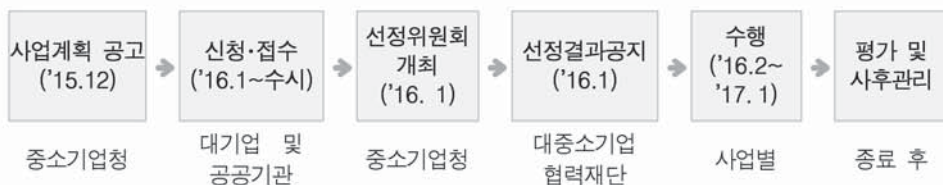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1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3~55
-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대기업과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재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동반성장지수란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투자재원이란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말합니다.

15-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300개사(전체 예산 125억원)

- 해외 전시·판매장 : 3개국 9개소 500개사, 72억원
- 온라인 쇼핑몰 활용 수출지원 : 1,800개사, 53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 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제품(소비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전시·판매장 : 해외 주요 거점에 안테나숍 형태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소기업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 * '15.12기준 : 미국(LA, 뉴저지), 중국(베이징, 정저우), 베트남(호치민)
- 온라인 수출지원 :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쿠팡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 * 판매전략 수립, 상품 페이지 제작, 계정등록 및 판매, 대금회수 등 온라인 수출 전과정 지원 (1개 기업당 300만원한도) 및 중소기업 재직자 등 대상 온라인 쇼핑몰 활용교육(100명 내외)

신청·접수

'16. 1월~ 수시(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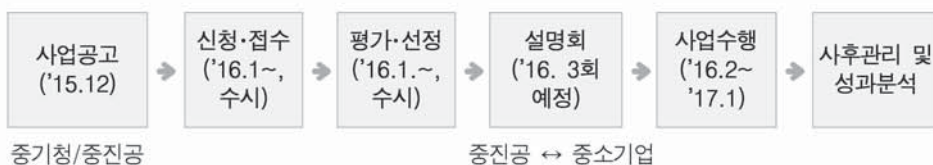
- 전시·판매장(b2c.gobizkorea.com)
- 온라인 수출지원(www.gobizkorea.com)

심사·평가내용

- 제품의 수출경쟁력, 서비스 역량,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상품 품평회)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처리 절차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 055-751-9764
(온라인수출) 055-751-9773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RTL 등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00여 개 사(전체 예산 176.5억 원)

- 일반 인증분야 : 신청기업 2,286개사 중 1,460개 기업 지원, 평균 937만원 지원
- 고부가가치 분야 : 신청기업 430개사 중 159개 기업 지원, 평균 3,813만원 지원
- 중국인증 분야 : 신청기업 376개사 중 97개 기업 지원, 평균 2,70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우선선정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창업 초기기업(2회이상 탈락 후 기술평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중국인증분야의 경우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이 추진됨

지원 내용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 초보기업(매출기준 30억이하 및 중국인증분야) : 70%
 - * 유망기업(매출기준 30억 초과) : 50%
- 업체당 1회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일반 및 고부가치로 교차신청 가능, 중국 인증분야는 별도 접수)
- 창업기업(신청연도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12~15년도 설립기업)이 당해 연도 2회 이상 탈락 후 창업기업 우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전문가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차수에 우대지원

신청·접수

- 일반 및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접 수	2.9~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확 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 약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지방청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 인증획득 후 완료 보고에 따라 출연금 지급

- 중국인증분야

▷ 신청기간 : '15년 3월 12일 ~ 4월 3일(연중 1회 모집)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이용정보 이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시험·인증 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 ▷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 ▷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 (중국인증분야) 중국 상표등록증, 수출계획 및 현황보고서, 중문 카다로그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입증서류

처리 절차

○ 일반 및 고부가가치 인증 분야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방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방청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전문가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청,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주관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 중국인증 분야



문의처

○ 일반해외규격인증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 * 전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 고부가가치 인증분야 및 중국인증분야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 전화 : 02-2164-0172~6, FAX : 02-507-8118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궁금해요! 중기맨



- Q**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 획득을 완료하신 후에 완료 보고를 해주시면 지급 됩니다.
- Q**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인증과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업이 직접 인증획득을 추진 후 인증획득 비용만을 지원하는 반면,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직접 인증획득을 절차를 추진하며 대행료뿐만 아니라 책임회사 등록 대행, 노무 법률자문 등과 같은 부가지원을 One-stop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어설명

CE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NRTL :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품에 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27개 분야에 대해 공인시험소의 인증이 요구됨

(중국)책임회사 등록대행 : 책임회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회사로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및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시 필수사항임

1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70%까지 지원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전문서비스 제공 내역 : 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지원 규모

280개사 (54억원)

- * '15년 지원현황 : 51개국 147개 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276개사 지원(추진 중)

지원 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지원 내용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40~70% 지원
 - ▷ 진출 희망국가별 17~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의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지원

지원 한도

국가 구분	지원 한도 금액
북미, 유럽, 러시아, 중국,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업체당 월 170만원

신청·접수 '16.1월(별도 공고)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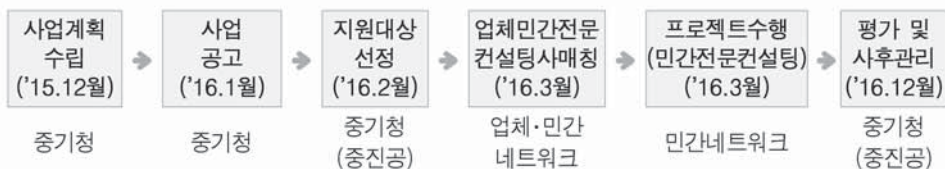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경쟁력, 경영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참여기업 선정 시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개척의지가 확고하며, 컨설팅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 심사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575, 451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5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조언을 한다면?

A 공짜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참여하든 기업도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짜로 진행하다 보면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자세가 되기 쉬우며, 민간네트워크 에게도 적극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간 부담될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민간네트워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한 해외에 거점이 있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

15-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사무공간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76개 기업 입주실(12개국 20개 지역)

-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도매 영위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법정관리·청산절차·회생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우대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사화사업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임차료의 지원(1년차 80%, 2년차 50%)

- 사무공간(12~20m²)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가능)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간은 얼마인가요?

A 수출인큐베이터 최초 입주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하여 입주 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인큐베이터 지역별 월 임대료(1년차)는 얼마인가요?

(단위 : 만원)

BI	광저우	뉴델리	뉴욕	모스 크바	상파울루	상하이	시카고	싱가포르	워싱턴	청두
임차료	16	20	15	22	18	21	12	34	15	7
BI	호치민	도쿄	두바이	LA	멕시코 시티	베이징	시안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알마티
임차료	8	14	15	15	18	32	10	9	10	14

→ 용어설명

수출사랑방 : 수출상담, 시장조사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 내 단기 출장 중소기업을 위해 임시 사무공간, 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편의 제공 (1회 사용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간 300내 사용 가능)

FTA(자유무역협정) 이해

1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 FTA란 둘 이상의 국가가 10년 내에 거의 모든 상품무역·서비스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와 기타 무역의 제한적인 규제를 풀 것을 합의하는 국제 조약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시장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

2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 (자무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협상하여 관세·비관세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 비회원국에는 개별관세를 부과
- (관세동맹, Customs Union) 관세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영역을 하나로 만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부과
- (공동시장, 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국 간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협정
- (단일시장, Single Market) 단일시장이란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화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

3 FTA활용절차 및 요건

- FTA 활용에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제품경쟁력 등의 요소와 함께, FTA에서 규정된 특혜관세의 크기, 원산지기준 충족 용이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무역흐름측면에서 본 FTA 활용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무역흐름측면에서 본 FTA 활용요건

비즈니스 단계	→	FTA 활용요건
기획포착	→	· 자사 생산물품의 협정 대상 여부 확인 · 자사 생산물품의 FTA 세율, 원산지기준 이해
생산	→	· 자사 생산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 기준 미충족시 생산 방법 변경)
수출	→	·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각종 입증서류 완비
검증	→	· 상대국 세관의 검증준비 (특히 사후검증 우려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 ▷ (기획포착단계)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생산물품의 HS Code를 확인
→ HS Code에 따라 FTA별로 양허한 품목인지 확인하고, 규정된 FTA 특혜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 ▷ (생산단계) 자사 생산물품이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를 확인 →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선택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방법 등을 변경
- ▷ (수출단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 → 입증서류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자에게 송부
- ▷ (검증단계) 세관에서 자료 요구시 원산지 입증자료를 송부 → 입증자료 불충분시 세관이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

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미국, 중국 등 총 54개국과 FTA 체결완료(세계경제의 약 73.5%)

구 분	국가
체결완료	칠레(2004. 4)
	싱가포르(2006. 3)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006.9)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2007. 6)
	인도 CEPA (2010. 1)
	EU(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28개국) (2011.7)
	미국(2012. 3)
	페루(2011. 8)
	터키(2013. 5)
	호주(2014.12)
	콜롬비아(2013.2.21 서명/타결, 발효예정)
	캐나다(2015.1)
	중국(2015.12.20 발효)
	베트남(2015.12.20 발효)
	뉴질랜드(2015.12.20 발효)
총 54개국과 FTA 체결 완료	
협상 중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CEPA
	일본
	한국-중국-일본 FTA 에콰도르

15-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고용 또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 발굴·육성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창의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고성장 기업 500社 내외(예산 250억원)

지원 대상

- 최근 4개년간('12~'15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중소기업(단, 지방 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종업원은 최근 4개년 시작 및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업력 4년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원 지원
-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90%~50%(최대 1억원)까지 차등지원 지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90%, (100억~300억 미만) 70%, (300억 이상) 50%

신청·접수

- 사업공고 : '16. 1월중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수출마케팅 계획서 포함),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 선정 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마케팅 통합교육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 16.1월	' 16.1월	' 16.2월	' 16.3월	' 16.3월	' 16.4월	' 16.4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492 ~ 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12

수출금융융자

|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융자 규모

1,250억원

- * 2014년 신청기업 299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323개사, 업체당 평균 3.8억원
-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386개사, 선정지원(이월포함) 413개사, 업체당 평균 3.9억원

지원 대상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물(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 범위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원 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20억원, 해외 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및 글로벌강소기업 등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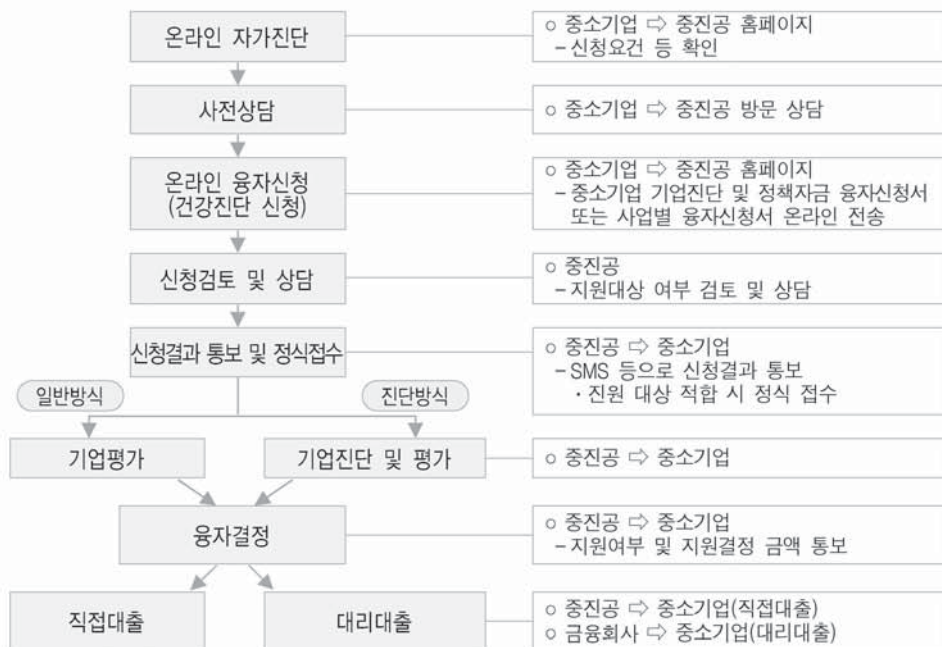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필수)
- 접수시기 : 2016. 1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13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 중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해외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10개사

지원 대상 중국에 既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담직원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자율마케팅을 추진하는 비용 70% 지원
- 희망 시, 중국 기초교육, 민간 전문기관 통한 중장기 전략 컨설팅 등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중국인증 집중지원 사업' 우선 선정
 - * 중국 CCC, CFDA 등 인증 획득 대행서비스 비용 60% 지원
- 전년도 참여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2년차 재지원

구분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1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70%
		중장기 전략 컨설팅	25~40백만원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50백만원*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2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50백만원*	

* 중장기 전략 컨설팅 추진기업은 자율마케팅 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 적용

신청·접수 '15.12 ~ '16.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중국진출역량진단)시 증빙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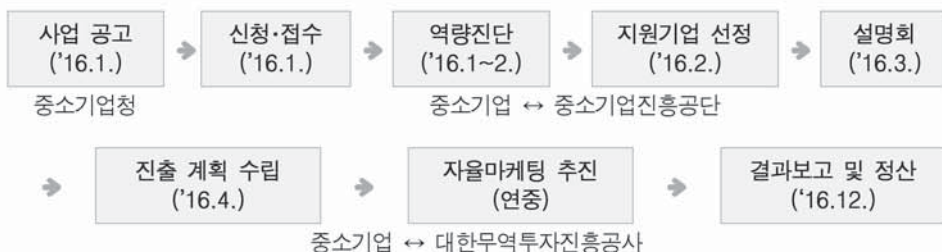
중국진출역량진단

- 수출 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구성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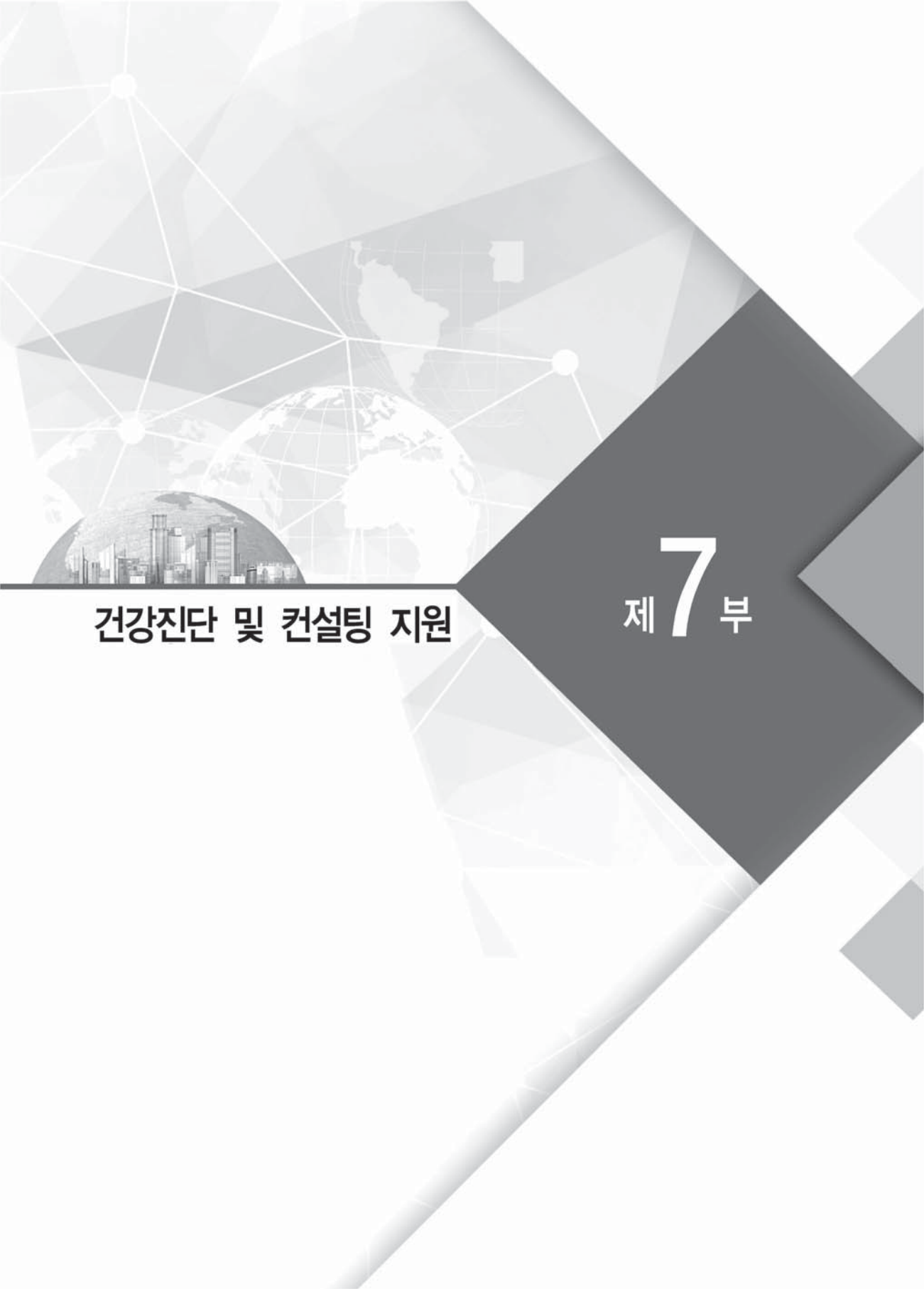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6895)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63)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제 7 부

중소기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쟁업체들이 생겨나 경영에 애로가 많은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A** 경영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조언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 비용의 55%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경기악화로 인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듯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중기청의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문컨설턴트가 무료로 회사의 현재상황을 진단하여 구조개선/회생절차/사업정리와 같이 진로를 처방해 드립니다. 또한 회생컨설팅과 같은 중기청의 관련사업으로 연계지원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Q**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도 녹색경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녹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 A**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은 S,A,B,C,D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녹색정보 사이트(www.greenbiz.go.kr)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영 평가' 또는 '그린비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 이제 1년 된 중소기업인데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은 사내에 전문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 A**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 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16-1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326
16-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333
16-3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338

16-1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사업

|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도우미

진단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성장통의 원인을 분석하여 경영개선 전략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

지원 규모

375개사

지원 대상

- 구조개선진단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 ▷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C등급 중 은행권에서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 경영개선진단
 - ▷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의 선정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보증기업
 - ▷ 기보 조기경보시스템의 관찰대상기업(S3) 또는 중점관리기업(S4)

지원 내용

- 진단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수진기업에 진단보고서 제공), 보증 연계지원(선택)
 -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 중소기업 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30만원/1MD기준) 지원

▷ 진단 일수는 하루 8Man-Hour, 구조개선진단(최대 13MD 기준), 경영개선진단(최대 10MD 기준)

신청·접수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출 서류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신청서, 재무제표(최근 3개년)

처리 절차

처리기간 30일 이내

문의처

- 4개 진단기관의 영업점 등 접수창구(붙임참조)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홈페이지 참조

○ 신용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기업지원부	02-710-4657	pioneer@kodit.co.kr
	특화사업영업본부	02-710-4155	trustjs@kodit.co.kr
	서울서부영업본부	02-2077-6662	kdjung@kodit.co.kr
	마포지점	02-710-4526	lkj75@kodit.co.kr
	영등포지점	02-2165-5604	cchum@kodit.co.kr
	제주지점	064-740-9422	yhyoo@kodit.co.kr
	광화문지점	02-311-4213	jeon1118@kodit.co.kr
	구로지점	02-2107-4222	khkg@kodit.co.kr
	남대문지점	02-3709-7023	pitt7@kodit.co.kr
	서울디지털지점	02-2109-4732	ochangs@kodit.co.kr
	강서지점	02-3660-1422	sjpark@kodit.co.kr
	김포지점	031-980-4923	bcchun@kodit.co.kr
	고양지점	031-909-6132	kgb@kodit.co.kr
	방배지점	02-3489-5212	sichoo@kodit.co.kr
	파주지점	031-956-3212	flood@kodit.co.kr
	서귀포지점	064-763-8063	sjchin@kodit.co.kr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동대문지점	02-2250-5232	hiickr@kodit.co.kr
	광진지점	02-2204-6224	smoonk@kodit.co.kr
	강남지점	02-2141-3221	hjchung@kodit.co.kr
	강북지점	02-3499-7212	hjyoo@kodit.co.kr
	삼성지점	02-2194-2923	jsyim@kodit.co.kr
	의정부지점	031-828-1722	lwcybm@kodit.co.kr
	강동지점	02-2041-9212	eun@kodit.co.kr
	구리지점	031-560-6612	hsyoo@kodit.co.kr
	테헤란로지점	02-3420-4222	lsw108@kodit.co.kr
	하남지점	031-790-9613	nkuk@kodit.co.kr
	송파지점	02-2140-8513	kmass92@kodit.co.kr
	양재지점	02-3460-5422	leoksy@kodit.co.kr
	포천지점	031-543-7694	kcgf3279@kodit.co.kr
부산·울산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부산지점	051-605-3021	sc100@kodit.co.kr
	사상지점	051-310-9622	ink1207@kodit.co.kr
	울산지점	052-226-7822	sunghee@kodit.co.kr
	동래지점	051-580-4213	kdals@kodit.co.kr
	사하지점	051-200-9622	sjc444@kodit.co.kr
	부산중앙지점	051-660-5023	youngho@kodit.co.kr
	녹산지점	051-974-6622	higher15@kodit.co.kr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구·경북	대구경북영업본부	053-430-8917	candy427@kodit.co.kr
	대구지점	053-430-8822	jchang@kodit.co.kr
	대구서지점	053-560-5022	esko@kodit.co.kr
	포항지점	054-271-6412	jhbae@kodit.co.kr
	구미지점	054-450-2523	evision@kodit.co.kr
	대구동지점	053-757-5813	parky77@hanmail.net
	대구북지점	053-350-8823	probasser@korea.com
	성서지점	053-589-6513	brave2me@kodit.co.kr
	경산지점	053-810-0912	kangsji@kodit.co.kr
	안동지점	054-840-8613	khh014@kodit.co.kr
	영주지점	054-639-1512	sbkim@kodit.co.kr
	경주지점	054-749-5511	horays@kodit.co.kr
	칠곡지점	054-975-3296	lhy@kodit.co.kr
광주·전남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광주지점	062-607-9112	lwtak@kodit.co.kr
	여수지점	061-640-2624	steinee@kodit.co.kr
	목포지점	061-280-9122	ijmoon@kodit.co.kr
	광주남지점	062-600-1522	kojh@kodit.co.kr
	순천지점	061-729-1312	sokim@kodit.co.kr
	광산지점	02-710-4589	ahnjjang@kodit.co.kr
	광주북지점	062-520-2022	yhcho@kodit.co.kr
경기	경기영업본부	031-230-1563	kitty@kodit.co.kr
	수원지점	031-230-1522	jqkim@kodit.co.kr
	안양지점	031-389-9712	bigtiger@kodit.co.kr
	성남지점	031-725-5552	pwwoo@kodit.co.kr
	평택지점	031-650-0822	jhk0517@kodit.co.kr
	이천지점	031-630-0112	eport@kodit.co.kr
	용인지점	031-288-1822	johjy@kodit.co.kr
	군포지점	031-450-6413	ewjung@kodit.co.kr
	화성지점	031-350-9323	gogetter@kodit.co.kr
	경안지점	031-799-0213	thebest1@kodit.co.kr
	화성서지점	031-8059-8514	mhbae@kodit.co.kr
	오산지점	031-371-6114	jjhyun@kodit.co.kr
인천	인천영업본부	032-450-1673	wjh@kodit.co.kr
	인천지점	032-880-3022	skp@kodit.co.kr
	반월지점	031-490-0422	sunkist@kodit.co.kr
	인천중앙지점	032-450-1623	kkn@kodit.co.kr
	부평지점	032-500-2722	kwhan@kodit.co.kr
	안산지점	031-412-0523	hongrok@kodit.co.kr
	남동지점	032-810-5223	bang@kodit.co.kr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인천	부천중앙지점	032-650-6523	sch4153@yahoo.co.kr
	시화지점	031-488-3213	chunja75@kodit.co.kr
	인천서지점	032-580-1422	knhtr@kodit.co.kr
	시흥지점	031-489-5913	baedol2@kodit.co.kr
대전·충남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대전지점	042-250-2023	dkkim77@kodit.co.kr
	천안지점	041-550-8022	hicha@kodit.co.kr
	서산지점	041-661-5222	oasis001@kodit.co.kr
	대전중앙지점	042-539-5643	sunjj7@kodit.co.kr
	대덕지점	042-620-5312	victoryi@kodit.co.kr
	아산지점	041-537-7213	starwars@kodit.co.kr
	보령지점	041-936-9161	captkidd@kodit.co.kr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03	hikwon@kodit.co.kr
강원	춘천지점	033-250-2512	jyleem@kodit.co.kr
	강릉지점	033-650-8023	tongsok@kodit.co.kr
	원주지점	033-749-1312	hdj@kodit.co.kr
	속초지점	033-638-0163	jsj@kodit.co.kr
	동해지점	033-531-9093	halul@kodit.co.kr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sunyoung@kodit.co.kr
충북	청주지점	043-261-9332	kennykim@kodit.co.kr
	충주지점	043-840-1522	tkjeong@kodit.co.kr
	증평지점	043-820-2505	hckwon@kodit.co.kr
	제천지점	043-645-9135	okman@kodit.co.kr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smskcb@nate.com
전북	전주지점	063-230-2522	wmrhee@kodit.co.kr
	군산지점	063-460-1522	hexis93@kodit.co.kr
	익산지점	063-830-3322	ononon@kodit.co.kr
	정읍지점	063-531-1615	kimjm@kodit.co.kr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jwansup@kodit.co.kr
경남	창원지점	055-269-0212	dreamkh@kodit.co.kr
	진주지점	055-760-7623	saaaw@kodit.co.kr
	마산지점	055-240-5923	nana389@kodit.co.kr
	김해지점	055-320-2723	jjs1977@kodit.co.kr
	통영지점	055-640-6512	ssbyun@kodit.co.kr
	양산지점	055-371-3113	mschang@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	서울본부	02-3215-5910	yuhh@kibo.or.kr
	종로기평	02-738-7801(810)	rwtsk1@kibo.or.kr
	구로기평	02-6124-6404	meihs@kibo.or.kr
	가산기평	02-818-4310	765@kibo.or.kr
	의정부기평	031-820-0340	393@kibo.or.kr
	강남본부	02-2016-1350	jhkim@kibo.or.kr
	서초기평	02-3476-7265(110)	864@kibo.or.kr
	송파기평	02-3400-7910	ksson@kibo.or.kr
	성남본부	031-750-4810	mchung@kibo.or.kr
부산울산	부산본부	051-606-7681	wonmoon@kibo.or.kr
	동래기평	051-517-6070(201)	jyd@kibo.or.kr
	사상기평	051-320-3420	kjc1410@kibo.or.kr
	사하기평	051-250-7802	549@kibo.or.kr
	울산기평	052-268-8721(301)	kyd@kibo.or.kr
	녹산기평	051-832-0460(101)	354@kibo.or.kr
대구경북	대구본부	053-251-5631	jinseo@kibo.or.kr
	대구서기평	053-652-1861(101)	1534@kibo.or.kr
	대구북기평	053-356-0421(101)	e00636@kibo.or.kr
	구미기평	054-455-7881(101)	332@kibo.or.kr
	포항기평	054-275-3961(201)	716@kibo.or.kr
광주전남	광주본부	062-360-4610	parkume@kibo.or.kr
	제주출장소	064-727-0271(100)	705@kibo.or.kr
	광주서기평	062-941-6833(101)	341@kibo.or.kr
	목포기평	061-284-0394(101)	873@kibo.or.kr
	순천기평	061-729-9333(337)	842@kibo.or.kr
경기	수원본부	031-8006-1560 (560)	1444@kibo.or.kr
	안양기평	031-459-2071(601)	dckwon@kibo.or.kr
	안산기평	031-401-0260(401)	ddol@kibo.or.kr
	시화기평	031-496-5920	542@kibo.or.kr
	평택기평	031-656-7221(101)	bool@kibo.or.kr
	화성기평	031-366-4411(101)	942@kibo.or.kr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인천	인천본부	032-830-5610	lovepark@kibo.or.kr
	인천중앙기평	032-420-3510	373@kibo.or.kr
	부평기평	032-623-6140(101)	james206@kibo.or.kr
	부천기평	032-327-1451(210)	1531@kibo.or.kr
	일산기평	031-931-7210	lsdcjm@kibo.or.kr
	김포기평	031-986-2053(101)	parkjgu@kibo.or.kr
대전충남	대전본부	042-483-7451(630)	jskim@kibo.or.kr
	대전동기평	042-254-6457(101)	cumaeng@kibo.or.kr
	천안기평	041-629-5930	706@kibo.or.kr
	아산기평	041-538-5921	1118@kibo.or.kr
강원	춘천기평	033-241-7161(201)	jee@kibo.or.kr
	원주기평	033-730-8320	ykleee5@kibo.or.kr
	강릉기평	033-642-1021(101)	ilho@kibo.or.kr
충북	청주기평	043-290-9540	783@kibo.or.kr
	충주기평	043-842-1591(101)	302@kibo.or.kr
전북	전주기평	063-270-9810	519@kibo.or.kr
	익산기평	063-443-2151(200)	dookang@kibo.or.kr
경남	창원본부	055-210-4010	1594@kibo.or.kr
	진주기평	055-750-1110	317@kibo.or.kr
	김해기평	055-330-2111	876@kibo.or.kr
	양산기평	055-387-6571(201)	795@kibo.or.kr

16-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국내 전문가 지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진입 및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 1,000개사(전체 예산 115억원)
 - ▷ 경영·기술(900개, 110억원), 원스톱창업지원(100개, 5억원)
 - * 지원기업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15년 지원현황(선정기준) : 진단연계형(503개), 수요자선택형(365개), 원스톱창업지원(224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 전 분야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 환경경영, 신사업·상품기획 등) • 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원스톱 창업 지원	• 제조업 영위 기업 중 - 예비 창업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재창업자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중진공 정책자금)	• 창업공장 설립(변경) 승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기술	업력 7년 미만	65%	최대 20백만원
	업력 7년 이상	30 ~ 50%	최대 3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65%	최대 5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적기지원 및 주관기관 일원화에 따른 선정 절차 일원화 및 신청 접수기간 변경
 - ▷ 진단연계형과 수요자선택형 과제를 경영·기술과제로 통합 운영
 - ▷ 신청 접수기간도 수시(진단연계형) 및 반기접수(수요자선택형)에서 매월접수로 변경

기존('15)		변경('16년)	
과제명	선정방식	과제	선정방식
진단연계형 (수시접수)	신청→진단(처방)→적합성평가→선정	경영·기술 (매월접수)	신청→사전진단평가→수행계획서평가→선정
수요자선택형 (반기접수)	신청→대면평가→현장평가→ 선정		
원스톱 창업지원 (수시접수)	신청→온라인 선정평가		
		좌 등	

신청·접수

○ '16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

-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타당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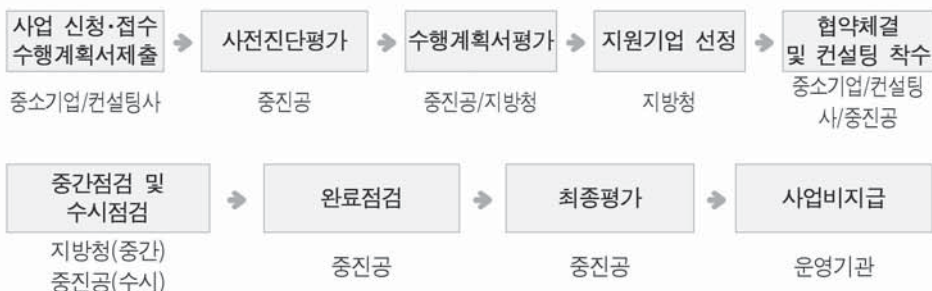
- ▶ 사전진단평가 : 컨설팅 신청기업에 대해 컨설팅 목적 및 타당성, 수행방안, 컨설팅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 수행계획서평가 :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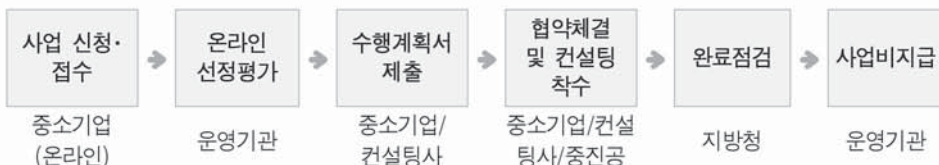
-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 수행계획서(컨설팅사와 공동작성)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경영·기술(신청에서 착수까지 약 1달 소요)



○ 원스톱창업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3, 9846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현재 '15년 수요자선택형 과제를 수행중인데, '16년도 경영·기술 과제에 추가 신청가능한가요?
- A** '15년 과제 진행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년 사업 완료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별표 1> 지원제외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6-3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 드리며,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7억원(전문가 상담 24억원, 현장클리닉 지원 13억원)

지원 대상

- 상담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 소매업(47111~47999),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 수의업(73100)
-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 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분야별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4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 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1~7일)에 애로 해결

지원 조건

- 기업당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30%,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10%
 -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연말 세금 환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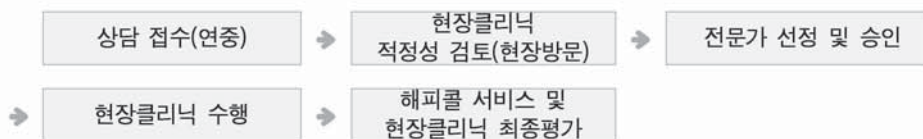
분 야	현장클리닉 세부 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입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 ▷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과 상담후 지원 가능

현장클리닉 제외대상

- ✓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 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대행, 인증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
-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대행,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
-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 소송 관련 대행 업무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절차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현장클리닉 지원

신청·접수

- 인터넷 상담 :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비즈니스지원단(아래 참조)
- 방문 상담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052-283-034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협연구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01, 9014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신청·접수 참조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2-6205-812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8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멋지게 변신하세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벤처와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창업 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A**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달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200대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9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제 17 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7-1 소상공인사관학교	346
17-2 신사업 사업화 교육	350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352
17-4 상권정보시스템	354

17-1

소상공인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 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50명(87억원)

* '15년 지원현황 : 305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 하고자 하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공통·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 점포체험교육

- ▷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80% 이내의 교육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16주)

○ 창업멘토링

- ▷ 점포체험단계부터 성공창업까지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단계별 교육시간 변경

기 존		변 경	
구 분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① 공통·경영교육	90시간	① 공통·경영교육	70시간
② 전문교육	60시간	② 전문교육	80시간
③ 점포체험교육	12주	③ 점포체험교육	16주

신청·접수

○ 신청방법

- ▷ 공단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전용교육장	위 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 광주상록회관 5층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신청기간

- ▷ 1기(2015. 12월 중 ~ 2016. 1월 중), 2기(2016. 5월 초 ~ 6월 초)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수당 225명/2기 운영)
 -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제출 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
 -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필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기타 e-러닝 수강실적 및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1기	'15.12월중 ~'16.1월중	'16.1월말	'16.2월초 ~3월말	'16.4월초 ~7월말
2기	'16.5월초 ~'16.6월초	'16.6월초	'16.6월중 ~7월말	'16.8월초 ~11월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단→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점포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
- 공단 서울전용교육장 : 02-723-0174
- 공단 부산전용교육장 : 051-463-0212

공단 대구전용교육장 : 053-353-7667

공단 광주전용교육장 : 062-367-0136

공단 대전전용교육장 : 042-363-749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장례업 등

17-2 신사업 사업화 교육

| 신사업 분야 확산을 위한 사업화 교육

신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00명('16년 신규, 15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과정당 80Hr 이내로 업종별 창업 및 기술교육
 - ▷ (이론교육) 창업절차, 점포마케팅, 창업 성공·실패사례, 창업시 유의사항, 창업세무·회계, 사업계획, 정책자금 활용 등 교육
 - ▷ (실습교육)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업체 견학, 시장동향조사 등 실습교육을 지원하며, 희망시 동종의 기존 점포에서 인턴체험 지원

신청·접수 '16년 연중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신사업 사업화 교육 → 지역별 교육기관 및 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신사업 사업화 교육에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장례업 등

17-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정보, 실전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여명(예산 10억원)

지원 대상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해외 인큐베이팅 기참자

지원 내용

- 해외창업 교육
 - ▷ 국가별 경제동향, 창업환경, 아이템 분석, 법제도 등 실전 창업교육 지원
- 해외 인큐베이팅
 - ▷ 현지체류 및 창업활동을 통해 창업환경 및 시장조사, 상권분석, 현지 네트워크 확인 등 지원
- 해외창업 정보제공
 - ▷ 대상 국가의 현지 창업관련 법, 주요상권, 경제동향, 소비트렌드 등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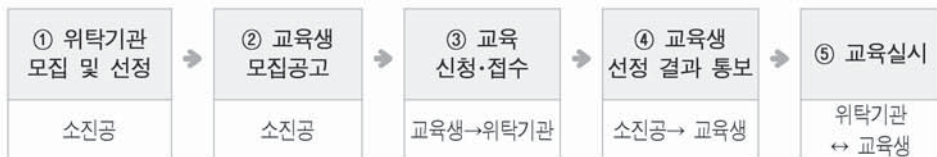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해외창업 교육
 - ▷ 신청접수(16.3월) → 해외창업 교육('16.4~7월)
- 해외 인큐베이팅
 - ▷ 신청접수(16.3월) → 대상자 선정('16.4~7월) → 현지 창업준비 활동('16.4~8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www.semas.or.kr) : 042-363-781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www.smba.go.kr) : 042-481-4491, 449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해외 인큐베이팅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자부담금은 왕복항공료와 현지에서 개인교통비 등으로, 나머지 숙박비, 컨설팅 비용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17-4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예정지의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 시설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서비스
 - ▷ 상권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출점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하여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전망 등을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주의(노랑) - 위험(주황) - 고위험(빨강)
- 점포평가서비스
 - ▷ 창업 예정지의 점포 접근성, 예상매출 등을 분석·평가해 주는 서비스
 - ▷ 창업예정지 주소, 희망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성, 안정성, 활성화, 구매력, 유동지수 등을 분석
- 점포이력서비스
 - ▷ 특정 점포의 과거 개·폐업 변화 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現 위치 점포에서 과거 영업한 업소를 추적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과밀지수
 - ▷ 서울지역 내 치킨·편의점 2개 업종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를 7대도시 10개 업종으로 서비스 지역과 업종을 대폭 확대
- 점포이력서비스
 - ▷ 서울지역 음식점에서 전국 전업종으로 서비스를 확대(9월)

이용 방법

- 인터넷 이용
 -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이용
 - ▷ 안드로이드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 콜센터(1644-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44-530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A 상권정보는 37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0종 DB, 27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 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서비스별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 :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조사·집계구, 도로망을 반영한 36만개 블록(업소수 50개 이상)이 2개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집객시설 :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쇼핑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제 18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357
18-2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359
18-3 산학협력컨설팅 지원	362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364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366
18-6 나들가게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369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372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375
18-9 소공인 특화 지원	378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000명(44억원)

* '15년 지원현황 : 16,300명(48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경영개선교육(3,000명)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을 교육
(수행 :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교육비 무료
- 전문기술교육(10,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70%까지(최대 40만원 한도, 1인당 1회)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소상공인이 민간교육기관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직접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도입(10,000명)
▷ 온라인에 등록된 민간교육기관 목록확인→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희망하는 교육수로 → 교육비 지원신청(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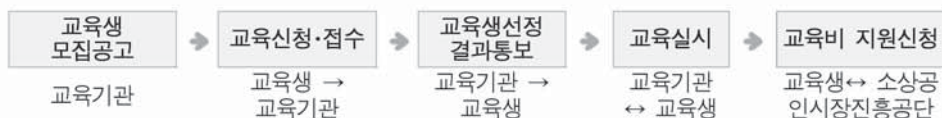
신청·접수

'16년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소상공인 경영교육 → 교육기관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신청문의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1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경영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민간교육 기관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 A** 1인당 연간 1회, 교육비의 7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한도는 40만원입니다.
-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A** 교육비는 교육생이 미리 선납하여야 하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교육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신청메뉴를 선택하시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8-2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경영전략·마케팅전략·비법전수 및 노하우 등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0개 업체 지원(6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일반컨설팅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인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일반컨설팅 수혜 업체 중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 실적 부진 소상공인(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 (일반컨설팅)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경영개선 및 기술지원
 -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 등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지원 강화(위기진단 후 연계지원 : 최대 4백만원)

신청·접수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금 소진시까지)

- 일반컨설팅
 - ▷ 신청접수(16.2월~) → 사전진단 → 컨설팅지원 → 사업성과 확인

○ 역량 jump-up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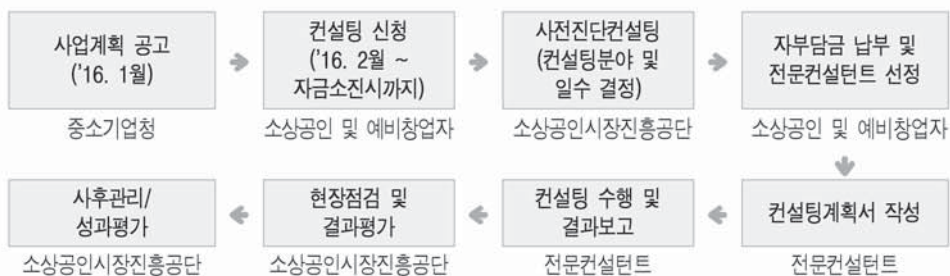
▷ 신청접수(16.3월~) → 위기진단 → 연계지원 → 사업성과 확인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

○ 일반컨설팅



○ 역량 jump-up 프로그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1588-5302,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con.sbiz.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 4495),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일반컨설팅) 사전진단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컨설팅 자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위기진단 후 연계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18-3

산학협력컨설팅 지원

| 대학(생)의 아이디어 활용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전문컨설턴트 포함)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개 기관(375개 업체) 지원(8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전문가(교수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관련학과 대학(원)생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각으로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위탁기관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요건 등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1588-5302,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4495), 홈페이지(www.smba.go.kr)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con.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산학협력컨설팅을 받으려면 업체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산학협력컨설팅은 100% 국비지원으로, 업체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 업체(2억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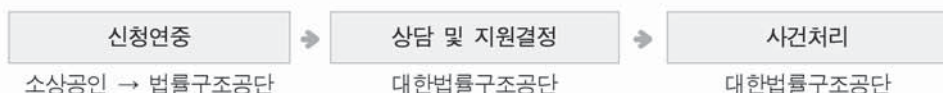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처리 절차



문 의 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2~3),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 4495),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1판 소송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나, 승소금액이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지원제외입니다.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동업종·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개 설립·지원(신규 220개, 기존 180개)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단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사업(1억원 한도 내),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소요비용 원칙)정부(80%), 자부담(2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사업) ①공동브랜드개발 ②공동마케팅(홍보) ③공동장소임차
④공동장비구매 ⑤공동R&D ⑥공동네트워크
- (기타사항)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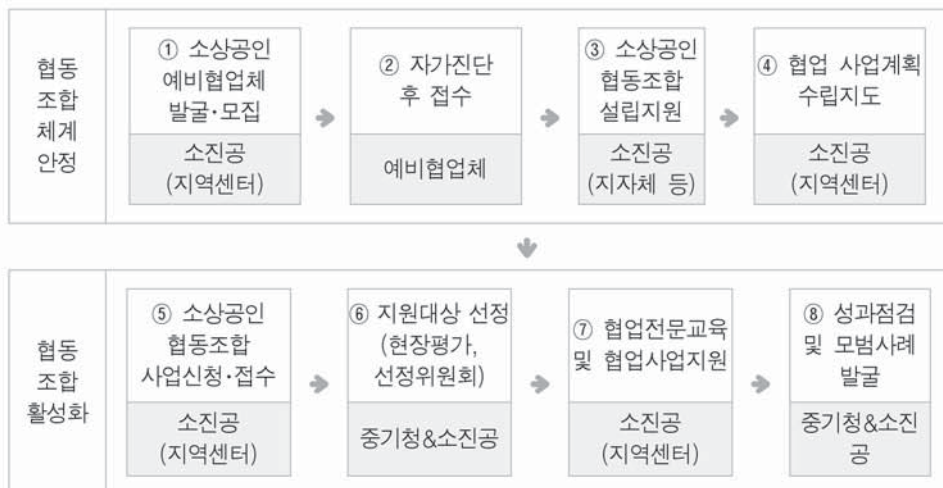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3,7722~7),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4495),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18-6 나들가게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골목슈퍼가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POS프로그램,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공동세일전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3,600여개 나들가게(예산 62억원)

- ▷ 신규 나들가게 모집 : 지원규모 제한없음
-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 약 6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 '15년 지원실적 : 총 3,4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 약 3,0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 '15년 지원실적 : 총 64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 : 6개 내외 지자체
 - * '15년 지원실적 : 6개 지자체 선정

지원 대상

-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점포
 - ① 점포 총면적 165m²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
 -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점포

지원 내용

-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상품진열, 간판청소, 점포리뉴얼, 안전관리(소방·전기) 등 4개 항목 중 최대 3개까지 지원
 - * 지원대상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이용점포

- (공동세일전) 연 2회(설명절, 추석명절 등) 이상 '나들가게 전국 공동세일전' 지원 및 참여기회 제공
 - (부가서비스) 택배서비스, 그린 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등
 - (상품공급사) 8개 나들가게 상품공급사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융자(7천만원, 정책자금 연계)
 -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참여기회 제공
- * 나들가게 모델숍, 나들가게 건강관리, 교육, 지역 특화상품 개발·보급 등(지자체별 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이 '16년부터는 정규행사로 연 2회(설명절, 추석명절 등) 이상 개최되며, 나들가게로 운영 중인 점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신청·접수

'16.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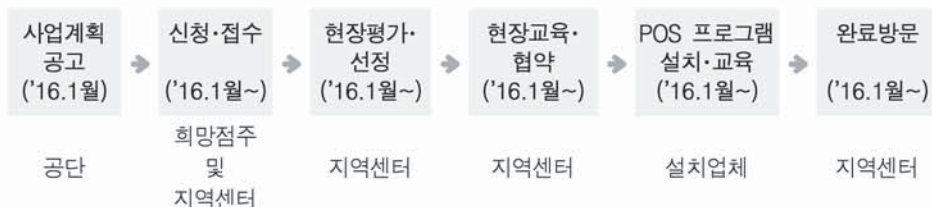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59개) 방문신청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or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나들가게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7752~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궁금해요! 중기맨



Q 나들가게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8개 공식 상품공급사(나들커뮤니케이션, 나들리테일, 아신, 더이음, 나들쇼핑, 코래일유통, 수협중앙회, GT사이버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판매상품의 가격비교를 통해 동일상품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은 어떤 행사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나들가게 상품공급사를 통해 2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100여개 상품을 전국 동시에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행사 전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기간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화형 나들가게의 집중 육성을 위해 평가를 거쳐 일부 지자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최대 8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 강원 영월군, 서울 송파구의 6개 지자체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 나들가게는 지자체에서 펼치는 각종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시스템 체계, 브랜드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멘토링,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개 업체 내외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 * 자격요건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 신청대상
 - 유망소상공인 : 직영점(사업주 본인) 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중소프랜차이즈 : 가맹점 10개 이상~20개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분야	항목	내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40백만원 (지원분야 항목별 선택가능)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웹 홈페이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멘토링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내용을 종합한 지원항목 BOX에서 수요자가 선택하여 지원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20백만원)		①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 (4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신규)	80% (2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사후관리 포함)	신규, 연계 구분없음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연계)	80% (20백만원)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 마케팅 전략수립	
② 시스템 체계 구축 사후관리	-		② 홍보 및 멘토링	-

신청·접수

'16. 2월 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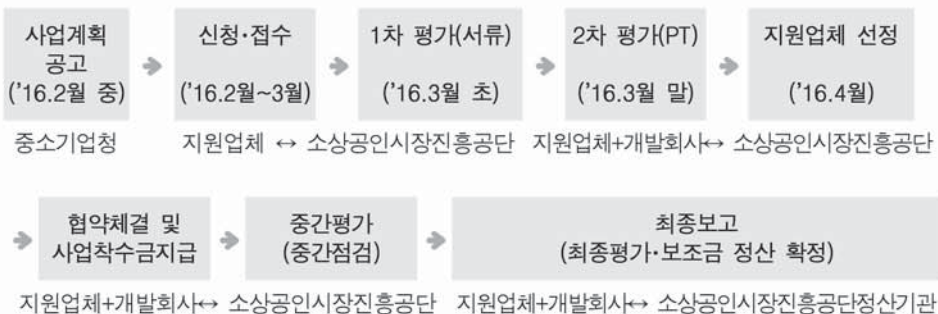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차 서류평가 : 사업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50%선정)
- 2차 PT평가 : 사업에 투입될 개발회사와 매칭하여 개발계획 평가(최종선정)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재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77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II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 중소프랜차이즈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규모별로 평가 및 등급 부여
- 연계지원 자율선택 (연계지원사업 통합운영)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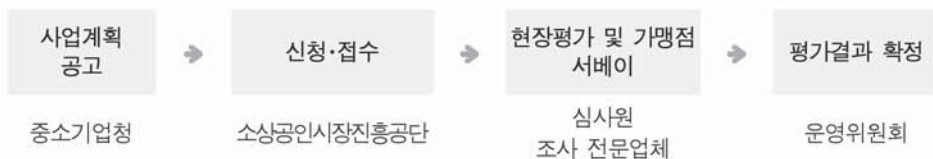
상·하반기 시행('16. 4~6월 / 7~10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약 220만원 자부담)

제출 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5~77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약 22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18-9

소공인 특화 지원

|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집적지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를 구축하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제품기술 가치향상, 마케팅·판로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0개* 내외(34,750백만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인프라를 통한 지원은 제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 「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한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9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지원 내용

-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소공인 성장·발전 촉진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집적지 내 또는 인근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전시회 참여,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의 사업을 지원
 - * 기계금속(서울 문래동), 의류봉제(서울 창신동), 제과제빵(경기도 상대원동) 등 직접지 내 업종별로 25개 센터 운영(자세한 사항은 소공실 홈페이지 참고)
- 소공인간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적지를 중심으로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공용장비실, 공동연구장비 등 공동인프라 구축하여 소공인 활용을 지원
 - * 의류봉제작업장(서울 창신동), 인쇄창고(대전 정동), 귀금속 장비실(부산 범천동) 등
- 소공인 전용으로 제품·기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진단, 계획 수립, 과제 개발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기반 마련을 지원
 - * 지원항목 : 기술진단지원(최 3MD 정부 100%보조) → 사업계획 수립 지원(최대 9MD) → 과제개발비 지원(80% 정부보조)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선정하여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른 홍보, 전시회 참가 등의 판로개척을 패키지 지원

* 지원항목 : 성장전략 수립 → 시장조사 + 브랜드개발 + 홍보 + 판매행사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금 비중	사업공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	25개 운영	100%	연중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	10개 운영	10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25백만원 이내	100개	80%	'15.12.10.~ '16.1.8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50백만원 이내	300개	80%	'16.1월

신청·접수

각 지원사업별로 방문·우편 및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 운영지침에 참고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 2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15년 기준) >

	시도	시군구	분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4
2	서울	중구(쌍림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3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4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02-745-8514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02-919-9623
6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죽신발	서울산업진흥원	02-2115-0909
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42-0802
8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070-4170-5973
9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031-354-3641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50-2893
11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041-750-1653
12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939-4827
1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226-5556
14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062-236-5013
15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228-2348
16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063-219-0413
17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061-793-2030
18	전남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061-430-3756
19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053-661-2362
20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053-358-0992
21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051-636-7510
2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1-890-2128
23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051-631-7221



제 19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19-1 희망리턴패키지	382
19-2 재창업패키지	384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86

19-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억원, 9,0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폐업단계	→	폐업이후 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교육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노동부)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전환대출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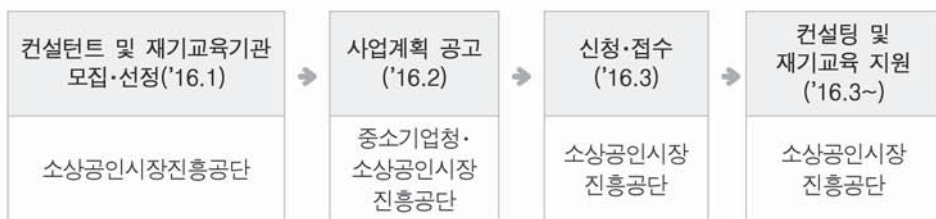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 전환대출 용자 :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용자와 연계 지원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6~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가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19-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00명(52억원)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 재창업 교육
 - ▷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 등으로 구성
- 재창업 멘토링
 - ▷ 교육 이수 후 재창업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의욕 제고

신청·접수 '16년 연중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특화형 업종이란? : 생계형 업종이나 신지식 및 기술을 기미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예시) 계절꽃을 활용한 자연요리, 웰빙발효식품 비즈니스 등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5.4분기 기준)
 - * 부금납입월수 48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90%)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후 2년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0장

전통시장 활성화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89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92
20-3 특성화시장 육성	395
20-4 상권활성화	398
20-5 온누리상품권	401
20-6 전통시장 ICT 육성	404
20-7 청년상인 육성	406
20-8 전통시장-대학 협력	409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412
20-10 시장마케팅 지원	415
20-11 정보기 및 배송서비스	418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84개 시장(808억원)

- * '15년 지원현황 : 303곳, 시장당 15억원(805억원)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우선지원 대상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아케이드사업 건물주 및 토지주 사전동의율 하향(100% → 90%)

신청·접수

'16.1월 중 ('17년 지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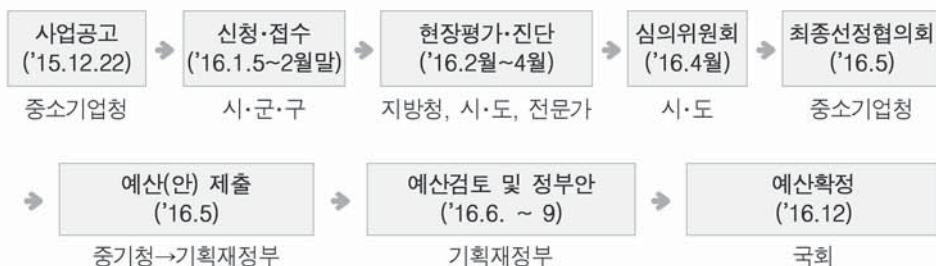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 및 자부담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 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시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35개 시장(1,001억원)

* '15년 지원현황(991억원) : 93곳(주차장 건립지원), 18곳(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부지확보 확보서 징구 등 사전준비 절차 미이행 시장 참여 제한, 부지매입 및 자부담 확보 완료시장 우선 지원

신청·접수

'16.1월 중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지방중기청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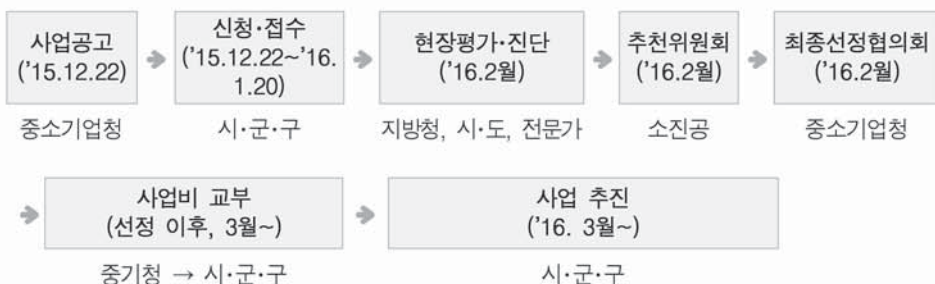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20-3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으로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외국인이 즐겨찾는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1시장 1특색을 살려 대표브랜드를 창출하는 골목형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58곳 내외 지원(96곳 선정, 558.5억원)

* '15년 지원현황 : 선정 112곳 포함 160곳, 509억원 지원

- 글로벌명품시장 : 10곳, 100억원(3년간 시장당 50억원)
- 문화관광형시장 : 78곳, 248.5억원(3년간 시장당 18억원)
- 골목형시장 : 70곳, 210억원(1년간 시장당 6억원)
 -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 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 육성 목표
 -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지원 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 ✓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 → 문화관광형 → 글로벌 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지원 내용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글로벌 명품시장)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공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진열 등

신청·접수

'16. 1월 중

- (신청)기초자치단체 → (추천)광역자치단체 → (접수 및 평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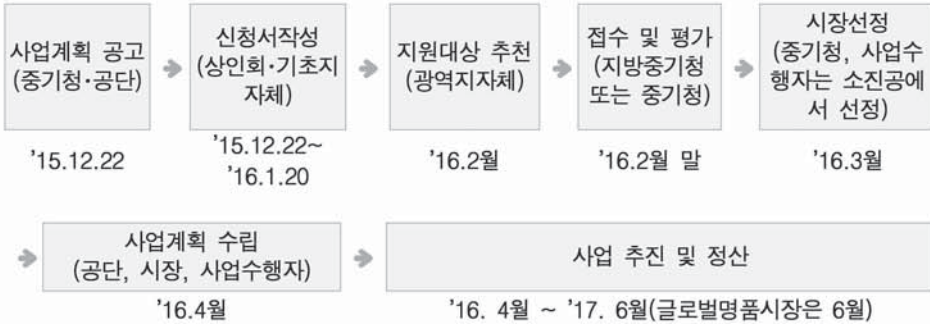
- (공통)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 (골목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 (문화관광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적 환경, 사업 추진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47,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23, 7621(글로벌명품), 7787~8, 7626(문화관광형), 7624, 7783, 7786, 7627(골목형)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4

상권활성화

|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활성화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지원, 연 6억한도)

* '15년 지원현황 : 6곳, 36억원 지원 ('14년 선정, 국비 100%)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구역 법적 요건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유통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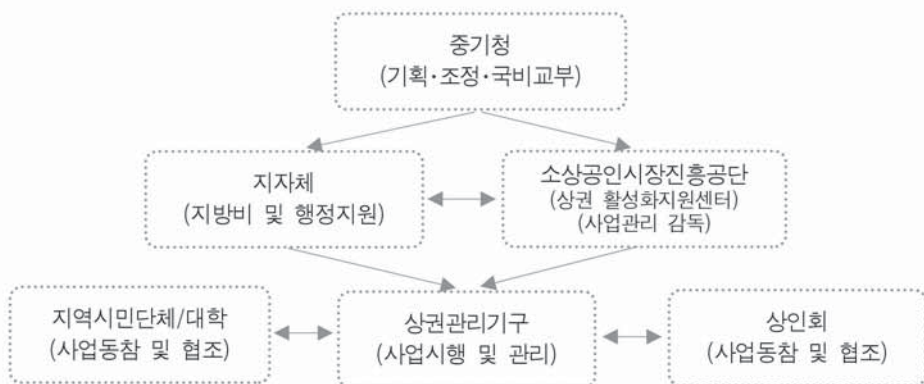
시범사업 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확대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신규구역 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지원구역	내용
경기 성남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경기 의정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기획 진행

사업추진체계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상권활성화구역 법적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부 만족해야 신청가능한가요?
-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5 온누리상품권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이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이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시중 금융기관(12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발행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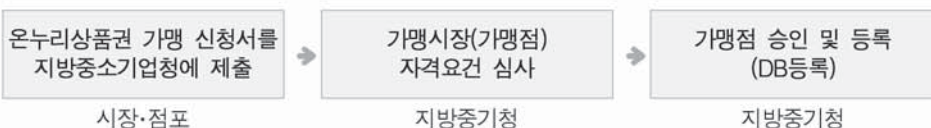
'16년 총 6,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

* '15년 실적 : 약 8,5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판매

구매 및 사용처

- 구매처 : 총 12개 금융기관(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
 -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 전자온누리상품권(팔도명품상품권)의 경우 총 7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 가능(우체국 쇼핑, 이지웰페어, 제주전통시장쇼핑몰, 인터파크, 피쉬세일, KTM몰, e-제너두)에서 사용 가능

가맹 신청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 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특 징

-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안전성 확보

상품권 이미지

일만원권(앞면)



일만원권(뒷면)



오천원권(앞면)



오천원권(뒷면)



십만원권(앞면)



십만원권(뒷면)



오만원권(앞면)



오만원권(뒷면)



십만원권(앞면)



십만원권(뒷면)



오만원권(앞면)



오만원권(뒷면)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89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41, 7642, 7643, 764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상품권 콜센터(☎ 1357 → 4번)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에 16만개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가맹점 검색 및 조회도 가능하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20-6

전통시장 ICT 육성

| 전통시장과 ICT의 융합

전통시장 ICT육성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콘텐츠(상품, 문화 등)와 ICT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총 130개 전통시장 (30억원)

* '15년 실적 : 총 131곳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ICT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지원 내용

- ICT카페 구축 : PC와 프린터, 컴퓨터 책상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ICT체험공간 조성 물품 및 인테리어
- 모바일POS 보급 : 고객 및 매출관리,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발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POS 보급
-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시스템 보급 : 상인 스스로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을 제작, 발송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급
- ICT추진단 운영 : IT전문 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모바일POS,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시스템의 활용과 ICT카페 운영을 지원

신청·접수

'16. 1월 중

- 상인회에서 ICT전통시장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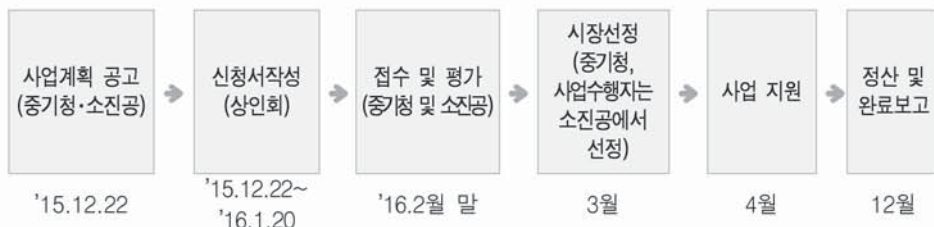
- 카페 구축 부지 및 상인회 사업 추진 의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20-7 청년상인 육성

| 전통시장 빈점포에 청년상인 육성 및 청년상인 밀집점포 조성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청년상인 집적지구인 청년몰 조성을 통해 청년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개 시장 및 17개 시도 (178.5억원)

* '15년 지원현황 : 청년상인 육성 20개시장 215점포, 51억원 지원

- 청년상인 창업지원 : 20곳 200점포 51억원(점포당 2.5천만원 이내, 국비 60~100%)
- 청년몰 조성 : 17개 시도 127.5억원(시도당 7.5억원 이내, 국비 50%·지자체 40%·자부담 1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내 빈점포(시장당 총10점포 이상) 또는 청년몰(시장당 20점포 이상)을 조성해서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같은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 청년상인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 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 ▷ 자치단체 사업비용 매칭시 우대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청년상인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전략업종 선정 → 공모 및 선정자 창업교육 → 체험점포 운영 → 정식입점 → 경영·판로지원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 청년몰 조성

- ▶ 편의시설·협업공간 등 기반 조성 및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지원

* 청년몰 구성 → 청년상인 입점 → 공동마케팅, 점포컨설팅·경영교육 등

신청·접수 '16. 1월 중

-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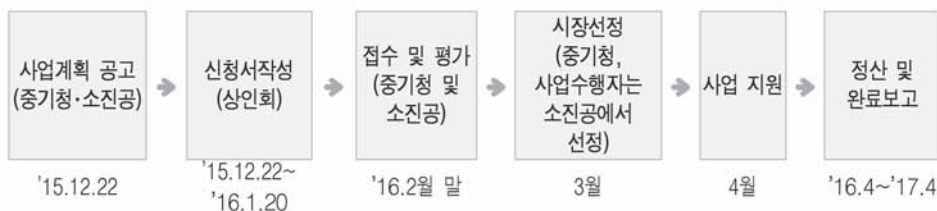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사업추진 실적 및 정부사업 참여현황 등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의지, 추진인프라,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5부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89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1, 7861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청년상인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청년물 조성사업에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A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물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빈점포에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므로, 모든 시장에 균등 배분이라는 정부 정책상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20-8 전통시장 - 대학 협력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기술·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 시장에 접목시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개 전통시장-대학 (29.6억원)

* '15년 지원현황 : 22개 시장-대학 지원(대학당 최대 1.3억원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협업하는 2~4년제 대학교

-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 사업비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관리하며, 없는 대학은 산학협력단 등에서 수행

지원 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 ✓ 특성화사업 참여시장(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대학)

- ✓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학교
 - * 교육부에서 발표한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조

지원 내용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금(대학당 최대 1.3억원)

- (커뮤니티 공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공간 등 소비 및 놀이, 커뮤니티 공간 형성
- (ICT 접목) 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특화상품개발) 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상품 개발,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타 업종으로 파급
- (이미지혁신) 고객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정비를 통한 테마 이미지 연출로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 연출
 -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장 상인회에 귀속하며, 타사업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 성격(공동 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기·배송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불가
 - * 2년차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지원 제외, 70%는 차등 지원

신청·접수

'16. 1월 중

- 한국산학연합회 상공지원팀 방문 및 우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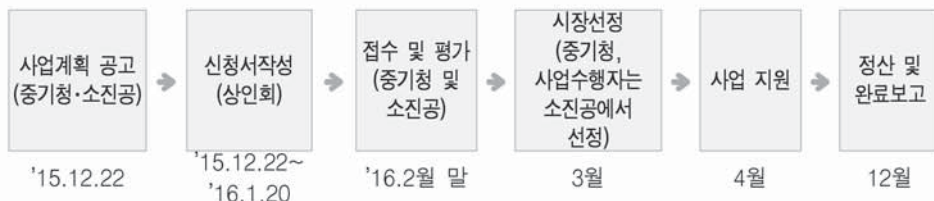
- 현장평가 : 사업추진의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 등
- 대면평가 : 대학의 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 * (대학)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학점 연계시 5점 가점, (시장)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 중 포상 실적이 있는 시장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582, 7673
- 한국산학연합회 소상공인지원팀 : 042-720-333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대학협력사업의 지원 연한과 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당 2년 최대 1.3억원 지원되며, 대학비율에 따른 지역당 비율 할당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서울·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5개 권역)

Q 연차에 상관없이 시장의 지원금액은 동일한가요?

A 2년차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차등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 제외됩니다.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 교육·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안전점검으로 화재예방 유도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및 컨설팅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안전점검 추진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 (87.6억원)

* '15년 지원현황 : 상인교육 3만명, 시장매니저 143곳 145명, 컨설팅 1,378건, 안전점검 773곳

- 상인교육 : 30,000명 목표(32.9억원, 국비100%)
-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 140곳 140명 내외, 2년 지원(연간 18억원, 국비 70~3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장자문, 점포지도 1,100건 목표 (7억원, 국비100%)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안전점검 770곳(29.7억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안전점검은 무등특시장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 등 사업비의 30~100% 지원

○ 상인교육

교육형태	내 용
상인대학	◦ (상인대학, 60곳)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40곳) 디자인경영, VMD, POP, SNS마케팅 등 특화교육
상인대학원	◦ 지도자과정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5곳)
ICT 교육	◦ ICT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활용능력 배양
맞춤형교육	◦ 시장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상인의식개혁, POP, 친절서비스, 외국어 등
청년상인아카데미	◦ 청년창업 및 기업승계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선진시장탐방	◦ 국외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시설개선 및 경영기법 벤치마킹
워크숍	◦ 전국단위 교육을 통한 역량배양, 네트워크 구축

- 상인조직 역량강화(시장매니저)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 채용시 국비 보조
 - * 급여 1,700천원 기준, 시장 규모별(소,중,대) 국비 70~30% 지원(상인회·지자체 30~7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설현대화·경영혁신·상권개발·시장정비사업 자문 및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점포 지도 제공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화재 예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인조직 역량강화(시장매니저)의 사업 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
 - * 고용불안 해소(평균 고용기간 7~10개월) 및 중기적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용이

신청·접수

'16. 1월 중(일부사업은 연중 수시)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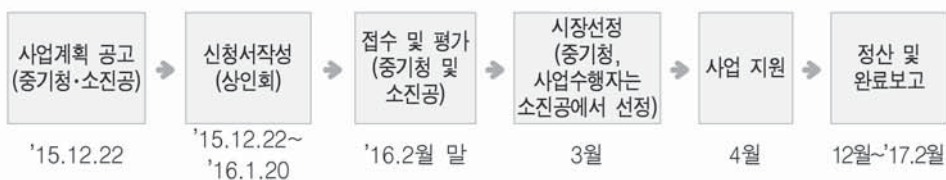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042-481-6870, 6871(안전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622, 7625(상인교육), 7705(시장매니저),
7862(시장활성화컨설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맞춤형교육 등은 몇 명이 신청해야 시장으로 강사 파견이 가능한가요?

A 20명 신청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Q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발생시 국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A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0

시장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및 지역상품전시회·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 지원

홍보, 세일·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상품전시회 및 유공포상·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동마케팅 30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6곳 (39.7억원)

* '15년 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40곳, 그랜드세일 300곳, 블랙프라이데이 200곳, 연말대행사 500곳, 총64.2억원 지원

- 공동마케팅 : 300곳(33.7억원, 시장규모별 차등 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1곳(4.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 지역상품전시회 : 6곳(1.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박람회 등의 마케팅 활동은 국비 70%~100% 지원

- 공동마케팅 : 추석(9월), 연말대규모세일행사(11.17~12.4) 기간 세일, 특가 판매, 경품행사 등 이벤트 실시에 따른 마케팅·홍보비 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유공 포상,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지역 우수 상품·시장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마케팅과 연말 대규모세일행사 통합(300곳 지원)
 - * 산발적인 마케팅 행사를 통합정례화하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 시장규모별 사업비 차등 지원

신청·접수 '16. 1월 중(일부사업은 연중 수시)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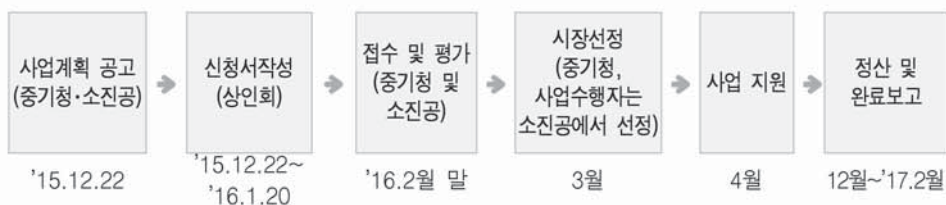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그랜드세일)
042-481-4574(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2, 7706, 7631(그랜드세일),
7704(전국우수시장박람회), 7708(지역상품전시회)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 쿠폰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20-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대형마트 및 SSM에서 실시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보기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6년 총 55개 전통시장 지원(예산 18억원)

* '15년 실적 : 81곳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①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홍보 및 주문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내용 및 금액 : 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

구 분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월 인건비	1,300천원	1,500천원	700천원

▷ 지원비율 : 연차에 따라 국비 90~50% 지원

<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월 인건비 단가 변경 : ('15) 콜센터 1,170천원, 배송인력 1,360천원, 장보기도우미 585천원
→ ('16) 콜센터 1,300천원, 배송인력 1,500천원, 장보기도우미 700천원

신청·접수

(신규) '16. 4 ~ 5월 중, (계속) '15. 12 ~ '16. 1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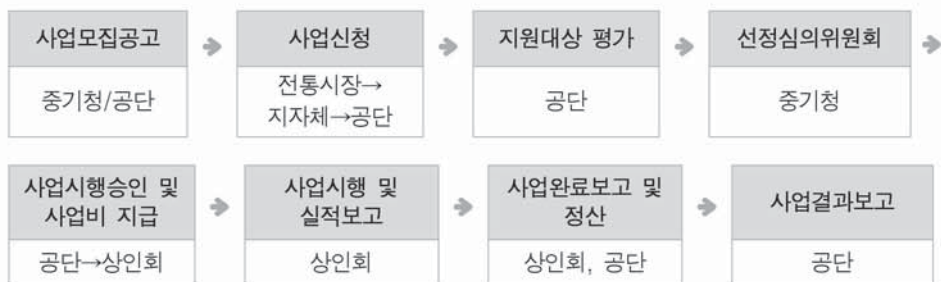
- *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ams.or.kr) 공지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선정 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정후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先 종료 될 수 있습니다.

Q 3년 지원 종료 후, 신규시장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비가 지원되는 3년간 자생력을 확보하여 4년차 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지원 종료후에 신규시장으로 사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2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422
21-2 사업전환자금	424
21-3 소공인특화자금	426
21-4 성장촉진자금	428
21-5 일반경영안정자금	430
21-6 긴급경영안정자금	432
21-7 소상공인 전환대출	434
21-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436

21-1

소상공인창업자금

|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1,350억원(대리대출 1,000억원, 직접대출 350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①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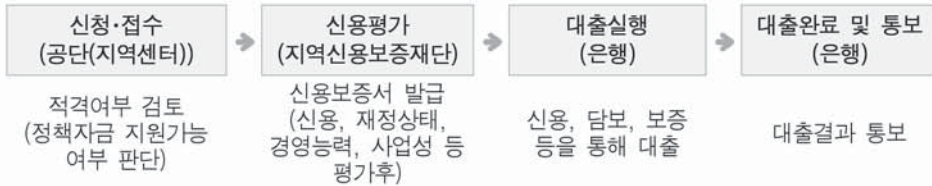
① 창업초기 소상공인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②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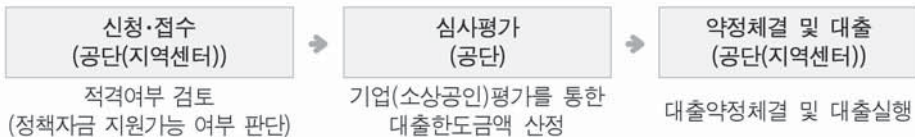
지원 절차

- 소상공인 창업자금(대리대출)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직접대출)



- ▷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 소상공인 사관학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창업자금 등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2 사업전환자금

| 신성장·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생계형 업종에서 벗어나 신성장·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

지원 규모 400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 ①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소상공인
 - ② 최근 1년 이내 사업전환 소상공인 또는 향후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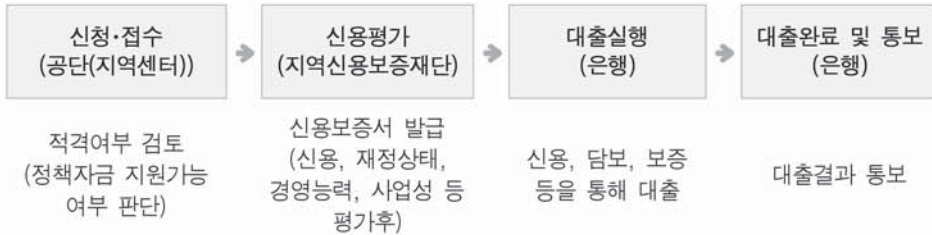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이수자 금리우대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3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1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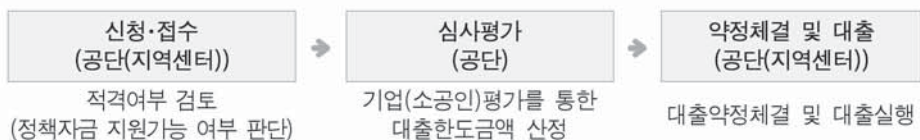
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 ▷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4

성장촉진자금

| 창업초기 위기 극복 및 성장 촉진 자금지원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극복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운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규모

2,00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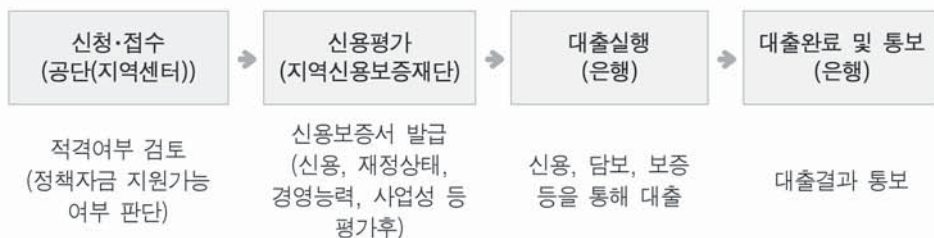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금리 우대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5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20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중 사업개시 후 1년을 초과한 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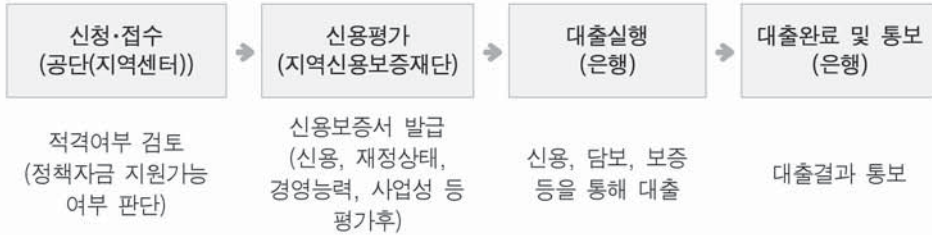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장애인기업은 금리우대(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장애인기업은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6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지원

재해, 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①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 ②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 FTA 체결 후 파급효과에 따라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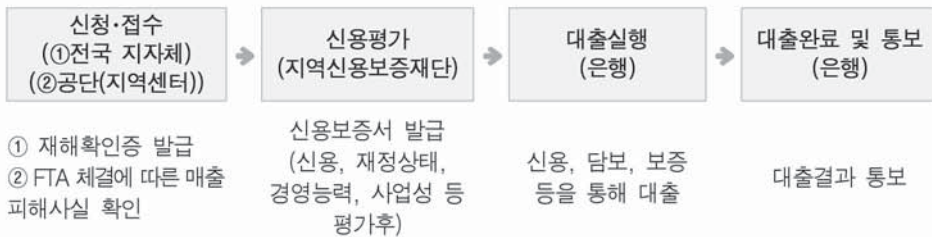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 ▷ 신청·접수 : ①전국 지자체(시·군·구청), ②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 ① 지자체에서 재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 * ②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FTA 매출피해사실 확인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전국 지자체(시·군·구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7

소상공인 전환대출

|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지원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 ①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 ② 제2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임금근로자
-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DTI 기준 초과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취급금융기관 : 하나, 신한, 수협은행

지원 절차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및 전환대출 적격여부 검토를 통해 자금 신청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 대출 취급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1-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경영안정 자금지원

사업운용 또는 시설 확충에 자금이 필요하나, 신용등급·담보가 영세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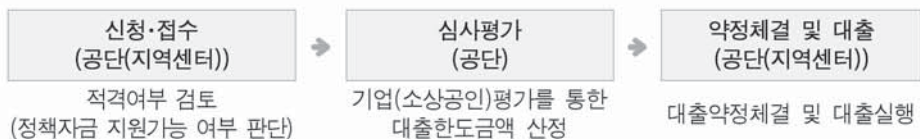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 임차계약 연장 시 대출기간 연장가능(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시)
 - * 매월마다 이자 상환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공단에 임차 보증금 전액 일시 상환하면 공단은 임차보증금에서 대출원리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신청자)에게 지급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 담보평가 (권리조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융자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용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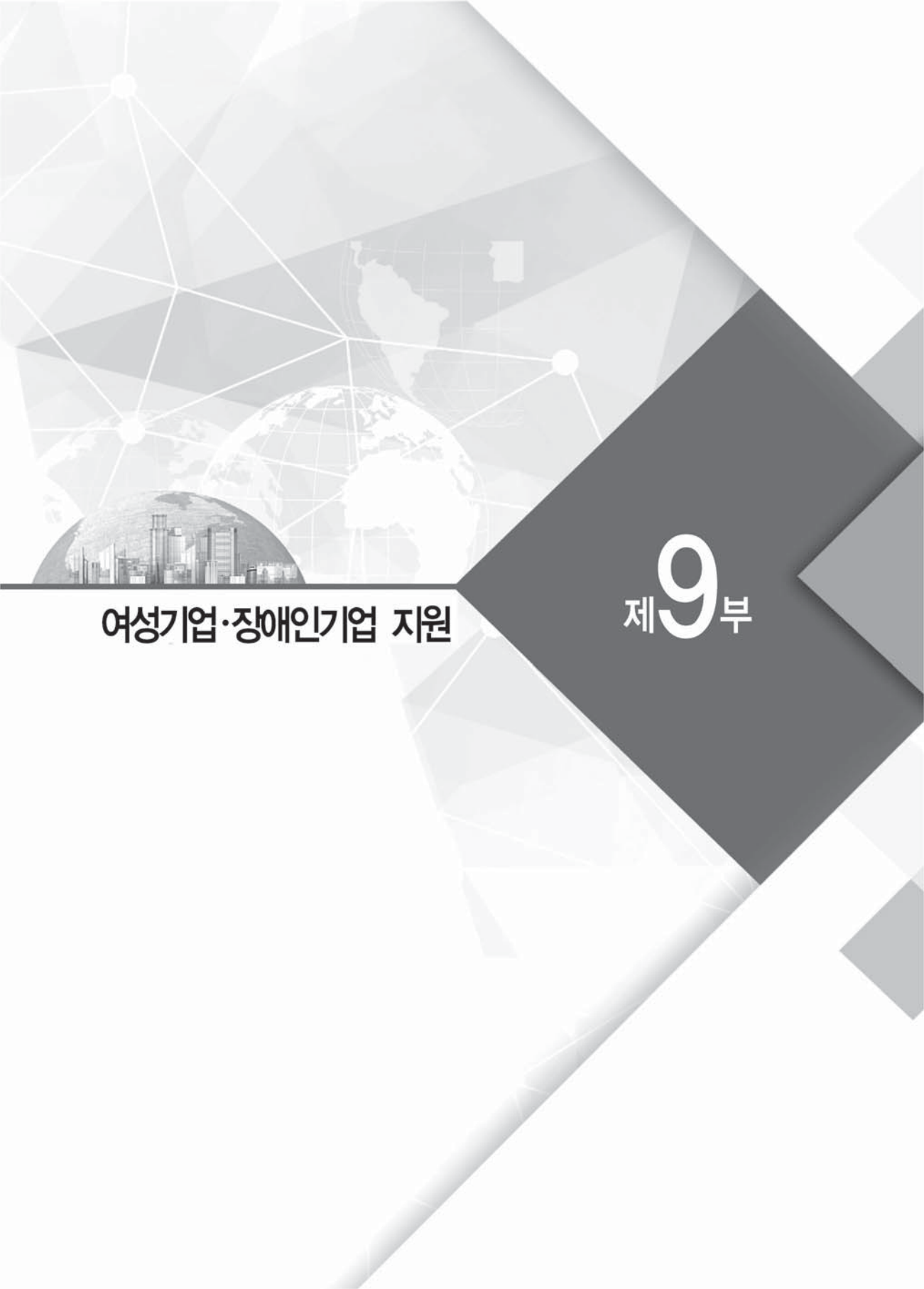
“환산보증금 보호범위”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임대차보증금 + (월임차료 × 100)}”에 대하여 권역별 보호가능 범위를 정한 것
(‘14년 이후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지역 1.8억원)

[별표]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유탐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표준산업분류	업 종
	-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 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86	보건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제9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매과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Q 액세서리나 패션 주얼리 등 공예품 쪽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 공예나 디자인 등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 하는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고, 수료 후에는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정보 제공 등 혜택도 있으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지회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후 10일내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회에 제출하면 해당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Q 취미로 켈트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판매하라는 요청이 많아 하나둘 팔다보니 매장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렴하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쇼핑몰(10평)"내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 매장관리비,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므로 저렴하게 입점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사업설명 참조)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A**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홍보 브로셔,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도 지원해 드리기 이용해보세요.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 참조)



제22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445
22-2 여성CEO MBA 교육	447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49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450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453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456
22-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458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461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464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467

22-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실전창업스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 기반 서비스, 유망분야 창업역량 및 실습교육 등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활동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5회 교육개최, 375여명 교육

* '15년 지원현황 (11월말 기준) : 전국 15개 지역 18회 교육개최, 수강생 455명

지원 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 강좌당 25명, 100시간 내외

* 실습 인원의 한정 등으로 수강인원을 초과할 경우 창업의지 및 계획에 따라 우선선별

지원 내용

- 창업교육 경비의 약 80% 지원, 실습비 수강생 자부담(과정별 차등)
- 실습위주의 창업교육 진행 및 수료 후 분야별 전문가 무료컨설팅 지원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료생과 창업자간의 커뮤니티 연계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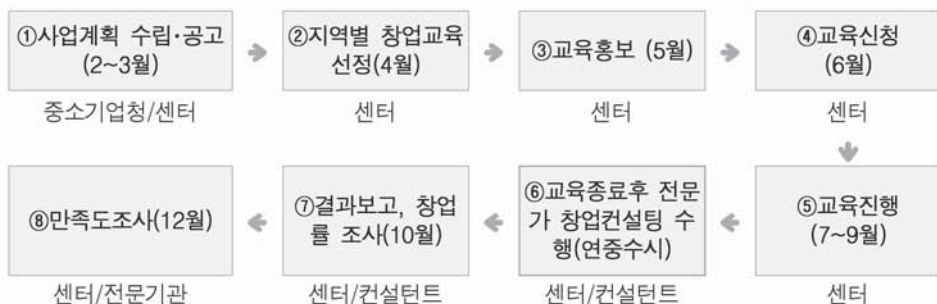
* 사업신청 : www.wbiz.or.kr → 회원가입 → 창업지원 → 실전창업스쿨 → 온라인신청

- 전국 각 지역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1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6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둔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3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2

여성CEO MBA 교육

| 여성CEO MBA 교육

여성 경영가로서 자질 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6개 지역, 여성CEO 900여명

* '15년 지원현황 : 16개 지역 16회 교육 개최, 여성CEO 575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 분야별 경영실무 교육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등)
- 경영자문컨설팅 제공 (법률, 자금, 수출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 (동문 워크숍 및 성공기업방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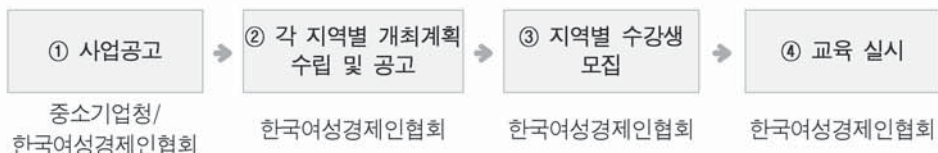
'16. 3~12월(지역별 개최일정 상이)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회원가입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여성CEO MBA 교육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역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 신청

Q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22-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600여명

* '15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677명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 전문가 초청강연,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6개 지역 센터 205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신청·접수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보육실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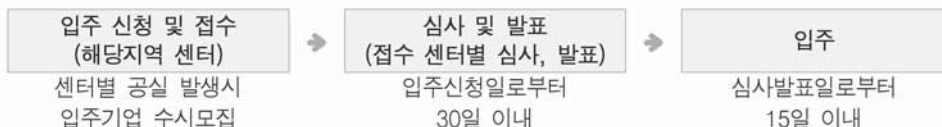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역량(20%), 사업계획서 타당성(10%), 인력(10%), 기술성(10%), 시장 경쟁력 및 재무상태(10%), 상품화가능성(10%), 아이템 진행정도(10%), 시장성(10%), 판매전망(10%), 관련산업 파급효과(10%)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16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6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성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돌길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3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Q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A 동 사업은 전국 16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만원, 월세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해당 입주사 사무실의 전용면적에 센터별 책정된 ㎡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15. 11월 기준)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A 동 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및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2-5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개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5, 특별상 1)

* '15년 12개팀 수상

지원 대상

사업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시상 및 포상(1,000만원 이내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여성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하여 성공경험 전수
- 판로개척, 사업전략 등 수상 창업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획득, 홍보물제작(영상, 브로셔 등) 마케팅, CI, BI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실시

신청·접수

- 신 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서류평가

- ▶ 아이디어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3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2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3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5%),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5%)
- ▶ 실전창업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2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3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2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10%),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10%)
- ▶ 사회문제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30%),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2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3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10%),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5%)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창업개요(인력현황, 비전 및 PT능력, 등 3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파급 효과 등 20%), 시장성(35%), 경쟁력(5%), 성장성(성장전략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등 5%)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02-369-0911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6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돈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3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기준 요건에 맞는 여성기업

* '15년 실적현황 : 신청건수 8,573건, 발급건수 6,869건 ('15년 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여성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법인인 경우 상법상의 회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원 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연중수시

- 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일반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 신청/발급 → 자가진단표체크 → 정보입력 → 저장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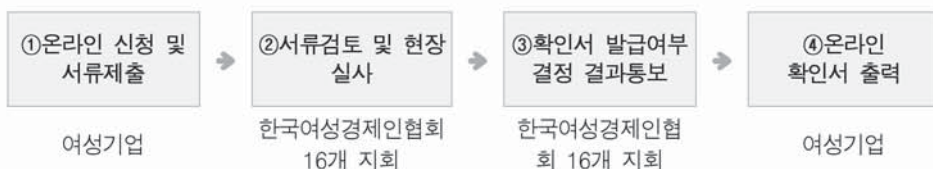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여성대표자와 면담하여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제출 서류

- (공통)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개인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여성기업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A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여성기업 확인 신청→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의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 심사결과 승인 또는 반려 → 승인된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22-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에는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5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 (834업체, 7,456개 제품 등록)

지원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증대
 -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찰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 여성기업 업체에서 제공받고 싶은 입찰공고에 대한 업종을 직접 설정하여 필요한 입찰정보만을 메일로 수신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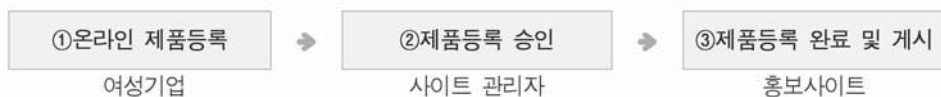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bid.woman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및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관리자 승인 → 입찰공고 업종설정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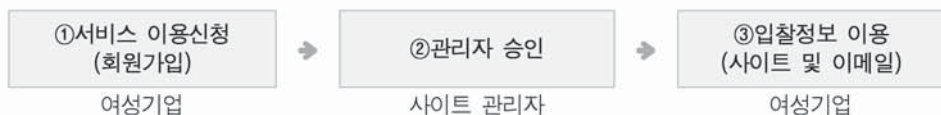
-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아시나요?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19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있습니다.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14-38호)「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 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22-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수출여성기업육성-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유망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수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115개사

- * '15년 지원현황 : 무역실무교육(67명), 박람회 및 바이어 매칭(37개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21개사) 지원('15. 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수출유망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우선선정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무역실무교육(수출초기 여성기업 대상)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매칭
 - ▷ 박람회는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에 대한 일부 지원(70~80%). 단, 체재비 및 운송비 등 자부담
 - ▷ 바이어매칭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한도 변경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수출기업	70~80%	① 수출초보기업 (2년 미만의 창업기업)	90%
		② 수출유망기업	70~80%

신청·접수

연초 각 단계별 사업공고를 통해 참가 여성기업 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www.wbiz.or.kr)

제출 서류

○ 기본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각1부
- ▷ 제품 카탈로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보유기업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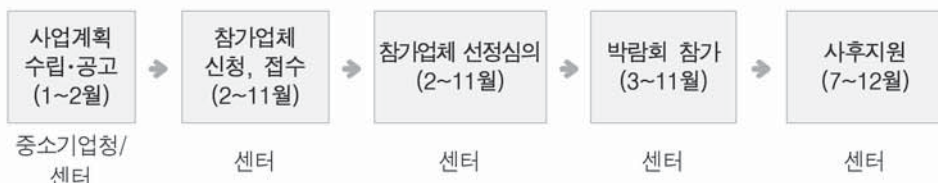
- ▷ 재무제표 (B/S, I/S) 사본 1부(최근 2개년)
-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 ▷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 수출활동계획서(20%), 상품성(20%), 정책호응도(10%), 매출액(10%), 수출액(20%), 마케팅동(15%), 기타 우대사항(5%)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3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창업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명 내외

* '15년 지원현황 : 13명 선정지원, 지원금액 382백만원, 1인당 평균 2,938만원 지원('15. 11 월말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
- 기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 ✓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 우대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요건 완화

기 존		변 경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최대 4년 (최초 2년, 연장 1회)	지원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연장 2회)
대출이자	3%	대출이자	2%
선수금	월세 500만원 전세 300만원	선수금	폐지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신청·접수

'16.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창업지원 → 여성 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및 온라인 신청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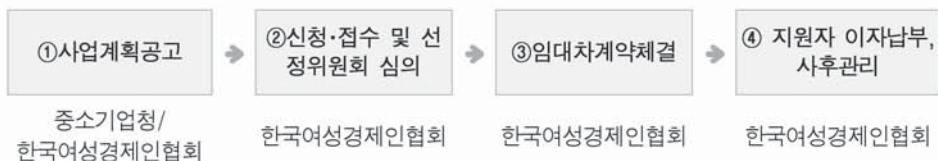
-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행가능성, 시장 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www.wbiz.or.kr)

-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서 등 (우편발송)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부양가족이 1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부양가족은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를 포함합니다.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인정이 되고,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나 중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22-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 및 취업 기반 제공

시장진출을 앞둔 우수한 여성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상품테스트 공간 및 실전 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국내 및 세계 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신진디자이너들의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예산(5억원), 연간 75개 브랜드 (팀 또는 개인 디자이너)

지원 대상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패션관련 여성 신진디자이너(창업 만 5년 이하의 여성패션디자이너 포함)

- 참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에 한하여 입점 가능
- 참여 신청 현재 기성 패션브랜드 기업에서 근무 중인 디자이너는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개설 5년 이상 브랜드 또는 신청일 현재 패션브랜드에서 근무중인 디자이너

지원 내용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입점 지원

- 참여 디자이너의 상품 전시·판매 공간 제공
- 매장 판매사원 지원 및 참여 디자이너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사업 활성화 및 참여 디자이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매장 인테리어 및 상품 진열 집기 지원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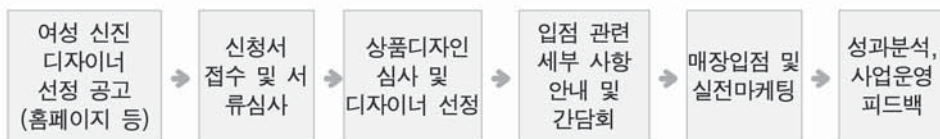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 독창성(25), 상품성(25), CONCEPT(25), 실용성(25)
- ▷ 선정위원 평가 평균 60점 미만 시 참여 불가
- ▷ 60점 이상 득점자가 많을 경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지원자 우선 선정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는 수시접수 가능하나 선정 절차는 반기별 1회 진행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개척팀 : 02-6678-9349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궁금해요! 중기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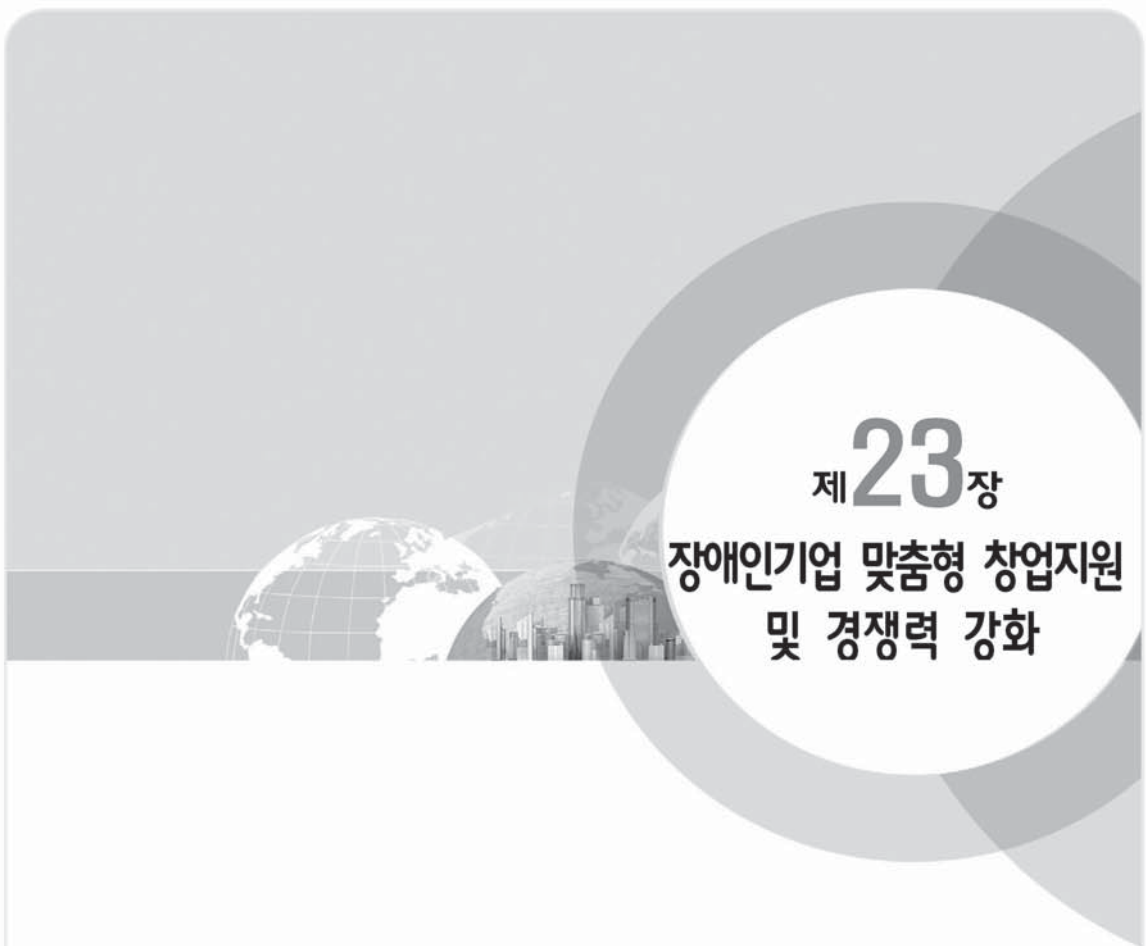


Q

디자이너 창업관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년에 6개월 참여가능하며 차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23 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470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473
23-3 장애인기업 성장지원	476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478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리스크 경감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재기교육, 창업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

- 교육 횟수 : 70회, 교육인원 : 1,010명
- 창업기초교육 26회, 600명
- 업종특화교육 26회, 130명
-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13회, 130명
- 창업실패자 재기교육 2회, 60명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장애인기업
 -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 ▷ 기창업자 →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 ▷ 창업실패자 → 창업실패자 재기교육

지원 내용

- 창업 역량 진단을 위한 창업상담실 운영
- 기초 소양교육 중심의 창업기초교육 지원
- 창업자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교육이수자 우대사항
 - ▷ 센터 창업지원사업(장애인 점포지원사업 및 센터 보육실) 신청 시 우대
 - ▷ 교육 수료(12H 이상) 후 장애인기업 활동자금 신청자격 부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업종특화교육 수료자 대상 점포지원, 창업보육실 입주 가점부여
- 창업실패자 재기교육 신설(장애인 창업실패자, 점포지원사업 포기자 등)

신청·접수

- 연중 수시(교육과정별 상이)
 - ▷ 창업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
 - ▷ 전국 각 지연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문의처 참조)

신청 서류

- 복지카드 사본, 교육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창업자 역량강화교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처리 절차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 02-2181-6521
- 창업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	02)2181-6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부산	051)329-8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609호
대구	053)600-8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인천	032)817-13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01호
광주	062)511-833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 (동천동) 501~503호
대전	042)330-0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울산	052)294-723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환나우빌1단지) 401
경기	032)322-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강원	033)747-6823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01~503호
충북	061)285-78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번지 경성하늘 201호
충남	041)331-05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39
전북	063)237-53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전남	063)237-53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5번지 에드가2차 201호
경북	054)842-3773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44-5 정우빌딩 5층
경남	055)763-355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2층
제주	064)749-8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5 (노형동)

궁금해요! 중기맨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2011년~2015년도에 시행한 창업기초교육 및 업종특화교육, 창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을 사업자 등록 후 계속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일 기준 1~2년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1년 : 창업기초교육,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전캠프, 재기교육

※ 유효기간 2년 : 업종특화교육

Q 타 기관에서 창업기초교육을 받았는데 타 기관 수료증도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자금 신청 시 인정이 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교육을 이수하여도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교육과정별로 교육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창업 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실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을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에 입주시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 전국 16개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15년 지원현황 : 전국 16개센터, 132개 창업보육실 운영
 - ▷ 센터 소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지원 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점, 갬블링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 공해, 소음 등이 유발되는 제조업(소규모 사무실에서 제조가 적합한 경우 가능)

우선선정

- 중증장애인,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협력, 특허 및 실용신안 2건 이상,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의 경우 가점 부여
- 창업자의 사업적 자질과 역량이 우수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평가 우수자

지원 내용

- 장애인특화창업보육실 제공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판로지원, 경영애로 상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통합지원

신청·접수

- 연중(공실 발생 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방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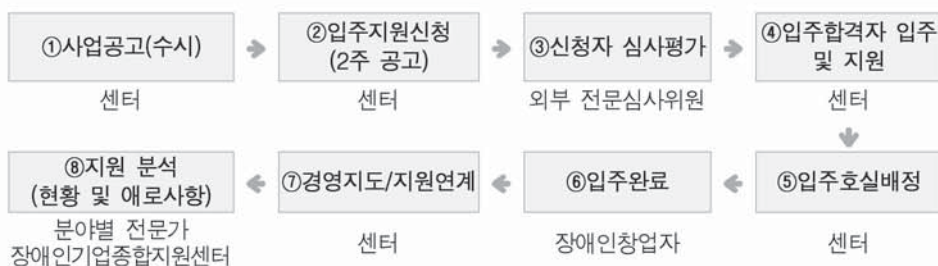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관련 분야 외부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시장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
 -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신청 서류

- 입주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알림마당에 게재된 입주모집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02) 2181-65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	02)2181-6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부산	051)329-8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609호
대구	053)600-8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인천	032)817-13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개개로 250 (동춘동) 701호
광주	062)511-833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 (동천동) 501~503호
대전	042)330-0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울산	052)294-723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환나우빌1단지) 401
경기	032)322-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강원	033)747-6823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01~503호
충북	061)285-78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번지 경성하늘 201호
충남	041)331-05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39
전북	063)237-53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전남	063)237-53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5번지 에드가2차 201호
경북	054)842-3773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44-5 정우빌딩 5층
경남	055)763-355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2층
제주	064)749-8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궁금해요! 중기맨



Q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3.3㎡ 기준 보증금 10만원 관리비 1만원/월이며, 그 외 경영애로상담을 비롯한 지원사업 참여와 공용사무기기 및 책상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3

장애인가업 성장지원

|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화, 판로, 홍보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가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상품화(사업화), PR/홍보, 판로/입찰, 경쟁력강화 등 지원

▷ '15년 지원현황 :

- * 지식재산권 : 73개사, 109건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국내 58개사, 해외 18개사 지원
- * 시제품 제작 : 1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00만원

지원 대상

장애인가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가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천원)
장애인가업 성장지원	• 상품화(시제품)지원 • 홍보(바로알리기)지원 • 판로(입찰, 전시회)지원 • 기술력(지식재산권)강화지원	200~24,000 (1개 기업당)

신청·접수

'15년 3월 중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www.deb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업 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A 위 지원사업은 1개 기업 당 최대 2,400만원 한도내에서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Q 주로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A 지원 받을 기업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기업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검증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점포 기회 제공

창업역량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장애인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명 내외

▷ '11~15년 지원현황 : 전국 90개 점포 구축

지원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비영리사업
-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 비점포형사업
- ✓ 타 기관 등에서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우선선정

- 신청업종 관련자격증 및 창업인턴십 실습과정 이수자 가점부여

지원 내용

- 점포 전세보증금(업체당 8천만원 한도) 및 시설비(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점포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해서 지원
 - ▷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은 창업자 본인이 부담
 - ▷ 최초 2~3년 계약 후 최장 5년 간 지원

신청·접수

- 모집기간 : 상·하반기 연 2회(3월, 7월) 각 15명 내외
- 신청 : www.debc.or.kr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모집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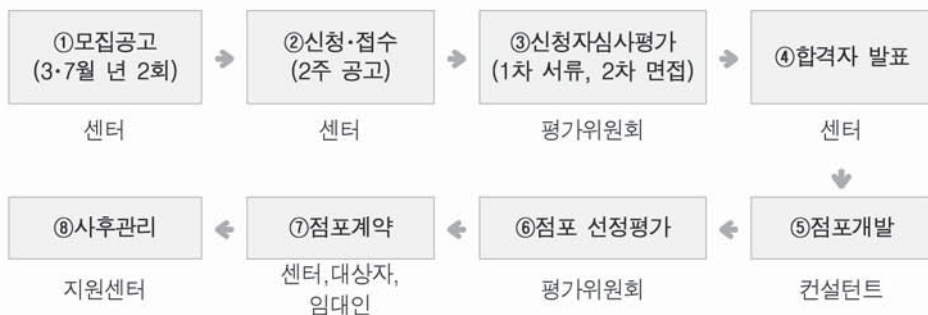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및 절차

-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자금계획 등 평가
 - ▷ 1차 서류심사 → 2차 본심사(개인별 면접심사)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게재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 02-2181-652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창업점포는 모든 점포가 지원가능 한가요?

A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70%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감정가 기준 부동산의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3억원 이상 잔존해야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을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임차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도움이 되는 제도

제 10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제24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24-1 이노비즈 제도	484
24-2 메인비즈 제도	487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90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492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494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497

24-1

이노비즈 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신청 대상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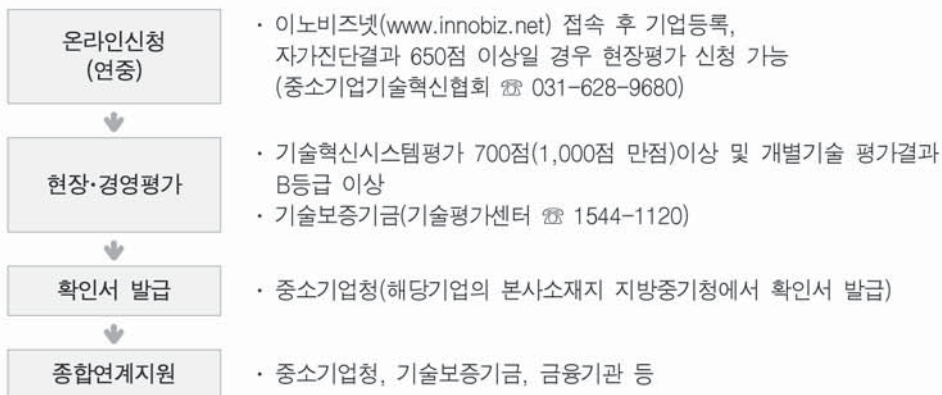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기업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인쇄) 제출

선정 절차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0.2%) 및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 협약 금융기관 (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최대50억원), R&D평가 특례보증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를 우대(1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대 최대 1.5배 우대
	금리우대	· 농협 이노비즈 채움금융(1.65%) · 신한은행 이노비즈 플러스 금융(1%)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업력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합병 특례	·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적용
정책	R&D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판로·수출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우대 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특허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우선심사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8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이노비즈 신청 시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 평가 시에 미보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2

메인비즈 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메인비즈(Main-Biz)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신청 대상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항 및 ②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경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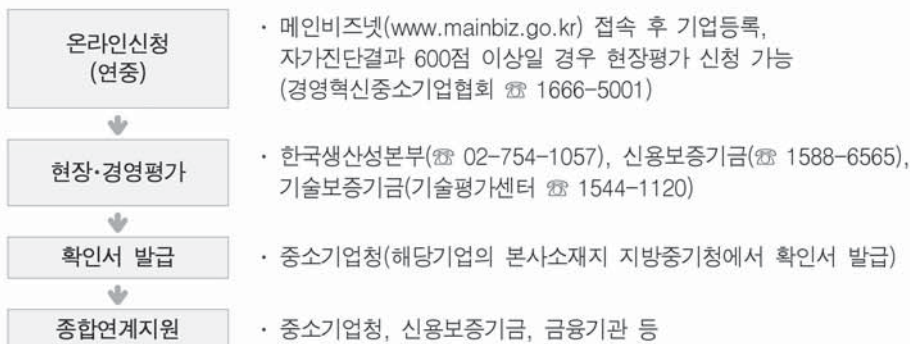
신청·접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 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물, 재무사항 등 입력

선정 절차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차감(0.1%)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협약 금융기관(6개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금리우대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 농협 대출금리 우대(1%) ·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0.6%)
정책	R&D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판로·수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등 우대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벤처



Q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24-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 녹색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기업에 드리는 혜택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금융지원
 -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 R&D 및 사업화 연계 우대지원
 - ▷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 판로 및 해외진출지원
 - ▷ 공공기관 납품시 우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 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수출계약/금융계약 손실보상, 방송광고료 70% 면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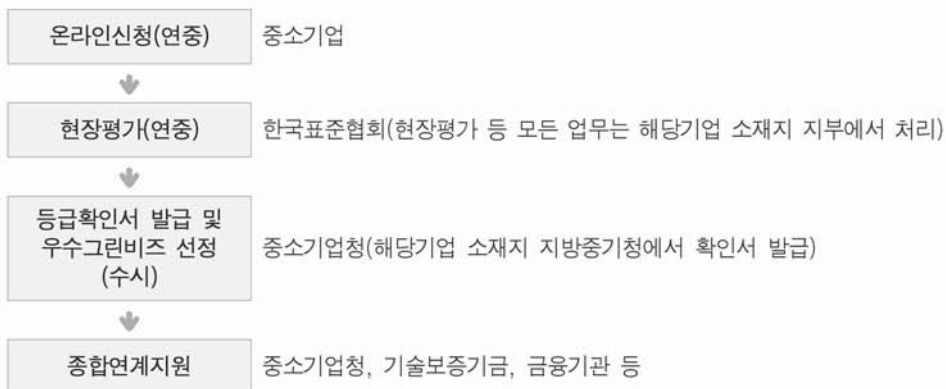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 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go.kr) 참조
- 녹색경영 평가 신청서 1부
 - 녹색경영 평가 기업현황서 1부
 - 사업자등록 사본 및 약도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2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02-2624-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gree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4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정의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유효 기간

-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특허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청·접수

-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hp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3개년 감사보고서, ③ 주주명부, ④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⑤ 지분관계도 (법인),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략팀 : 02-3275-2226
- 전용 정보사이트 : www.hpe.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청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선정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예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연중상시

- * 세부일정은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과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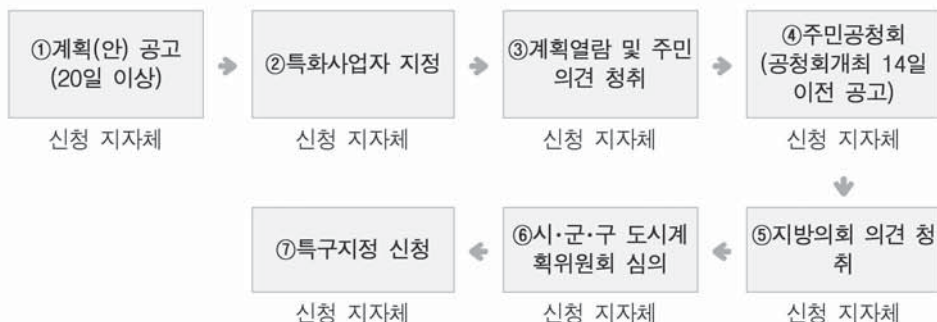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 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후관리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대표) : ☎ 042-481-1601
- 지역별 특구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업무(지역)	연락처
중소기업정책국 지역특구과	지역특구법 운영 및 규제특례 발굴	042-481-1602
	수도권·제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08
	대구·경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14
	충북·전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07
	부산·경남·울산지역 특구운영	042-481-1610
	전남·광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16
	대전·세종·충남·강원지역 특구운영	042-481-1612

24-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규제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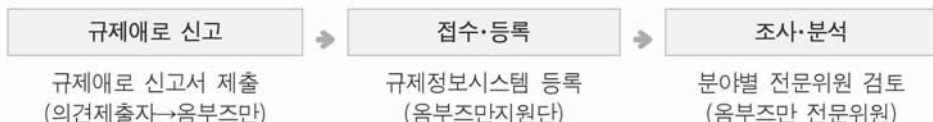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osmb.go.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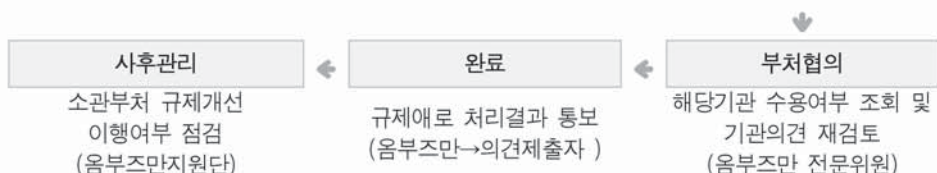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 규제 원탁협의)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 원클릭 바로알림)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업종·업체·지역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 규제지도 나침반)에서 지역별 규제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 옴부즈만지원단(대표) : 전화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전문분야	연락처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환경, 인력	02-730-2471
	입지	02-730-2408
	보건, 안전	02-730-2474
	기술, 상생	02-730-2461
	창업, 판로, 수출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10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500
2. 중소기업 조세지원	503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독립법인이 아닌 '법인 내 사업단' 형태 제외)
- *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2016년 주로 달라진 점

-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에서 3년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제조업종을 세분화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상한기준 폐지
-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 초과 시에도 유예허용(3년). 유예 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4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업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지원 내용

-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 창업일(벤처기업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 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內사업장	수도권 外사업장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기업을 중기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구분

- * (제조업) 100명,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 제외

3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 엔젤투자 세제지원

-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공제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7년간 허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 * 기본공제율 3% + 추가공제율 4~6%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 세액공제

○ 기타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6%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투자	7% (기술유출방지설비 10%)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6%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0%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의 근로소득세	7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2백만원

7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 15년 미만 : 200억원, 15년이상:300억원, 20년이상:50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 초과 20%) 저율로 과세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363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

